【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

결 산
검 토 보 고 서

【 세 입 세 출 결 산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 기 금 결 산 】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4.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결산 개요 ·····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 1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5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5

나. 일반회계 ····· 7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4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5

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16

3. 기금결산 ····· 17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 17

나. 고용보험기금 ····· 2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24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 27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29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 32

Ⅱ. 결산 검토의견 ····· 34

1. 세출 결산 ····· 34

가. 국제협력관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 34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구별 편성 및 집행 필요> ····· 35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 38

<ODA 사업관리 강화 및 출연금 교부관리 개선 필요> ····· 39
<우회적인 ODA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3
(3)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 48
<일반수용비의 과다편성과 무분별한 사용 지양 필요> ····· 49
<법령을 위반한 예산집행 및 부적정한 예산과목 편성 관행 시정 필요> ····· 54

나. 고용정책실

(1)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일반회계, 1032-302) ·· 58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 ····· 59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 63
<일용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업 참여 독려 필요> ····· 66
<지원단가의 면밀한 책정 필요> ····· 69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41-316) ····· 71
<사업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75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78
<과업량에 부합하는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필요> ····· 78
<정보시스템 구축 시 관련 절차 준수 필요> ····· 83
(5) 고용보험기금 총괄 ····· 89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달성 방안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 92
(6) 고용창출장려금(고용보험기금, 1046-350) ····· 101
<고용촉진장려금의 타 장려금과의 차별화 및 집행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02

다.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 11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및 지역청년 참여율 제고 필요> 111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일반회계, 1037-311) ····· 116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117
<공동판매장 서울,경기지역 편중 해소 및 판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23
(3) 한국잡월드운영지원(일반회계, 1049-301) ····· 126
<사고이월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 필요> ····· 127
(4)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051-304) ····· 131
<K-Move스쿨 취업률 제고 및 사후관리 내실화 필요> ····· 133
(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 139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실적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율 높일 필요> ····· 140
<청년도전지원사업 : 연내 사업수행 완료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144
(6) 중장년층취업지원(일반회계, 1340-300) ····· 148
<컨설팅 실적 허위 보고 수행기관 제재 미약> ····· 151
<재취업지원제도 도입 지원사업: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용 필요> ···· 154
(7)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보험기금, 1345-351) ····· 159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사업 성격에 맞게 비목 변경 필요 등> ···· 160
(8)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2-311) ····· 164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실적 개선 필요> ····· 165

라. 직업능력정책국

(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일반회계, 1133-300) ····· 170
<특정 심사평가위원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 필요> ····· 171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 176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률 향상 방안 모색 필요> ····· 177
<특성화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모집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180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6-309) ··· 184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 주의> ····· 185
(4) 내일배움카드(고보) (고용보험기금, 1151-352) ····· 18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적정 훈련인원 편성 및
훈련방식 다각화 모색 필요> ····· 189
(5)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용보험기금, 1152-350) ····· 197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97

마. 노동정책실

(1)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일반회계, 2031-300) ····· 202
<ISP 수립이 완료되기 전 시스템 구축 부적정> ····· 203
<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비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필요> ····· 207
(2)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회계, 2036-311) ····· 213
<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통합 편성·집행 필요> ···· 214
<임차보증금의 중요재산 관리 필요> ····· 217
(3)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 221
<권리구제지원팀 업무 범위 조정 필요 등> ····· 222
(4) 고용상 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 230
<보조사업의 내용을 고려한 예산 편성 기준 마련 필요 등> ····· 231
(5)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 236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237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국회 보고 누락 부적절> ····· 250
(6) 근로복지진흥기금 총괄 ····· 253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254

<법률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발굴 필요> ····· 260
<사업 목적 외 지출 주의 필요 등> ····· 265
(7) 퇴직연금사업운영(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 26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률 제고 필요> ····· 269

바. 산업안전본부

(1)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 277
<유류비 과다 계상과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 저조 문제> ····· 278
<집행잔액으로 예산과 다른 자산 구입의 문제> ····· 282
(2)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 285
<소음성 난청의 재해조사 기간 단축 필요> ····· 289
<산재사건 장기심사 기준 마련 등 산재 심사의 신속성 강화 필요> ···· 294
(3) 산재병원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4-350) ····· 298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필요> ····· 299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350) ··· 305
<융자 사유 확대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필요> ····· 306
(5)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310
<준비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 ····· 311
(6)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 321
<사업의 정확한 계획액 산출을 위한 노력 필요> ····· 322
(7)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2) ····· 33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위탁사업비 현실화 필요> ····· 333
(8)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0) ····· 345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관리 강화> ····· 346

Ⅰ. 결산 개요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특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5개 기금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불임금 대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총 1조 2,321억 5,800만원(4.2%)이 증가한 30조 4,363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1,976억 3,700만원(11.7%)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액(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액 (B)	총수입 결산액(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538,360	250,447	344,649	94,202	△193,711
기 금	26,700,349	28,953,741	30,091,697	1,137,956	3,391,348
합계(총수입)	27,238,709	29,204,188	30,436,346	1,232,158	3,197,637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2조 1,091억 4,300만원(5.9%)이 감소한 33조 6,595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6,545억원(4.7%)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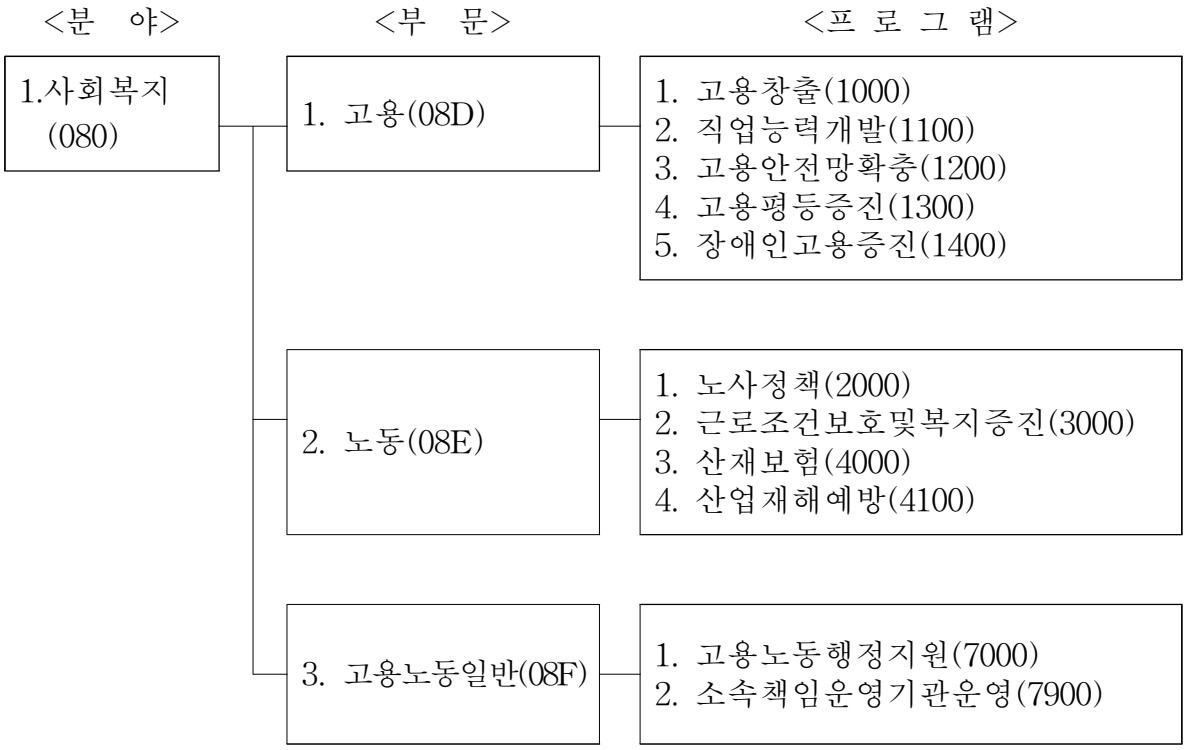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액 (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액(B)	결산액 (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7,669,940	6,674,114	5,787,760	△886,354	△1,882,180
기 금	27,644,073	29,094,542	27,871,753	△1,222,789	227,680
합계(총지출)	35,314,013	35,768,656	33,659,513	△2,109,143	△1,654,500

고용노동부 예산은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 부문에 해당되며, 고용창출(1000)프로그램 등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분야, 3부문, 11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3,000억원이 전출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200억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이자 1,720억원을 상환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2조 300억원, 예탁이자수입으로 836억원을 받았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 5,501억원을 예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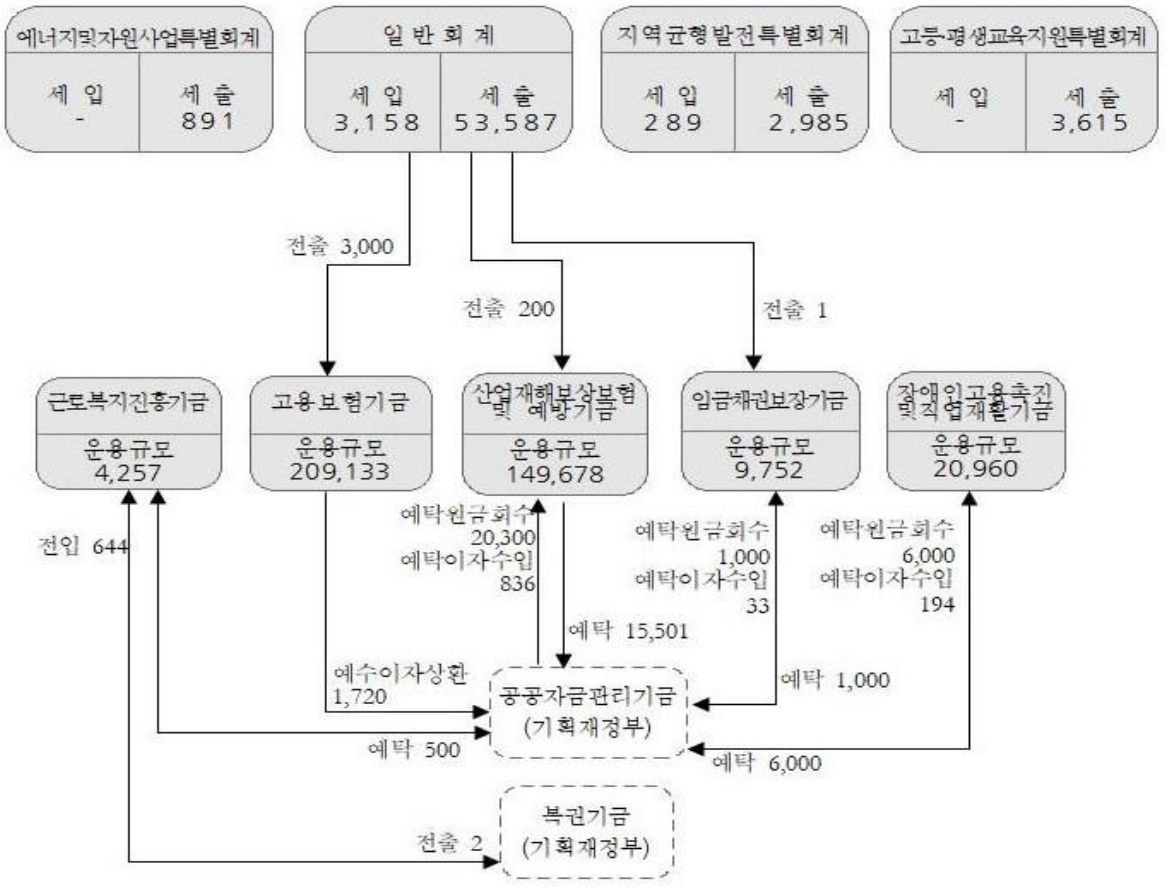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수입 33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수입 194억원을 받고 6,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44억원을 전입받았고, 집행잔액 등 2억원을 반환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2,50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49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3,446억원임.

미수납액은 1,678억원, 불납결손액은 25억원이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66.9%로 전년 대비 11.6%p 하락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504	5,149	3,446	25	1,678	66.9
	(1,411)	(6,859)	(5,384)	(18)	(1,457)	(78.5)
일반회계	2,339	4,699	3,158	25	1,517	67.2
	(1,311)	(6,448)	(5,015)	(18)	(1,414)	(77.8)
특별회계	165	450	289	0	161	64.2
	(100)	(411)	(368)	(0)	(42)	(89.6)

주: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2) 세출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조 9,942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9,968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3%인 6조 1,0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804억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원으로 전년보다 145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8,719억원으로 전년보다 7,313억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69,942	26	-	69,968	61,078	171	8,719	87.3
	(105,546)	(19)	(380)	(105,945)	(89,882)	(26)	(16,032)	(84.8)
일반회계	62,394	26	-	62,420	53,587	171	8,662	85.9
	(102,080)	(19)	(380)	(102,478)	(86,456)	(26)	(15,991)	(84.4)
에특회계	891	0	-	891	891	-	-	100.0
	(910)	(0)	(0)	(910)	(909)	(0)	(0)	(99.9)
지특회계	3,002	0	-	3,002	2,985	-	17	97.8
	(2,557)	(0)	(0)	(2,557)	(2,517)	(0)	(40)	(98.4)
고특회계	3,654	0	-	3,654	3,614	-	39	98.4
	-	-	-	-	-	-	-	-

*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 총계 기준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39억 4,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99억 2,700만원임. 이 중 67.2%인 3,157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4억 9,100만원, 미수납액은 1,516억 8,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33,946	469,927	315,754	2,491	151,682	67.2
	(131,061)	(644,753)	(501,529)	(1,832)	(141,392)	(77.8)
○ 재산수입	1,217	8,403	7,864	0	539	93.6
	(776)	(3,686)	(3,165)	(0)	(521)	(85.9)
- 관유물 대여료	0	2	0	0	2	0.0
	(0)	(2)	(0)	(0)	(2)	(0.0)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217	8,401	7,864	0	537	93.6
	(776)	(3,684)	(3,165)	(0)	(520)	(85.9)
○ 경상이전수입	232,580	461,487	307,857	2,490	151,141	77.7
	(130,272)	(640,968)	(498,265)	(1,832)	(140,870)	(77.7)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4,666	133,813	51,008	1,929	80,877	38.1
	(42,998)	(124,496)	(59,448)	(1,588)	(63,460)	(47.8)
- 변상금및위약금	10	128	71	0	57	55.5
	(10)	(205)	(37)	(0)	(168)	(18.0)
- 가산금	264	7,184	241	311	6,632	3.4
	(264)	(6,181)	(221)	(121)	(5,839)	(3.6)
- 기타경상이전수입	187,640	320,362	256,537	250	63,575	80.1
	(87,000)	(510,085)	(438,559)	(124)	(71,403)	(86.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9	30	30	0	0	100.0
	(13)	(89)	(88)	(0)	(1)	(98.9)
○ 관유물매각대	0	4	4	0	0	100.0
	(0)	(10)	(10)	(0)	(0)	(100.0)

주: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4,699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8억 2,600만원(27.1%) 감소하였고, 2023회계연도 수납액은 3,157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7억 7,500만원(37.0%)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67.2%로 전년 대비 10.6%p 하락하였음.

미수납액 1,516억 8,200만원은 전년 대비 102억 9,000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636억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03억원 등임.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미수납액
2019년	85,961	213,122	141,207	164.3	66.3	71,368
2020년	85,961	265,714	129,371	150.5	48.7	133,359
2021년	85,961	470,681	339,545	395.0	72.1	128,572
2022년	131,061	644,753	501,529	382.7	77.8	141,392
2023년	233,946	469,927	315,754	135.0	67.2	151,682

(2) 세출결산

(가) 총 괄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보다 3조 9,686억원(38.9%) 감소한 6조 2,39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2,420억원임.[1)]

지출액은 5조 3,58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를 지출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에 34.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에 30.9%를 각각 집행함.

[2023회계연도 주요지출 내역]

주요 지출 항목	지출액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30.9%)	1조 6,567억원
-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14.6%)	7,826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34.1%)	1조 8,250억원
- 중장년층취업지원 등 고용평등증진(0.8%)	402억원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등 노사정책(0.9%)	493억원
-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1.2%)	626억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등 고용노동행정지원(10.6%)	5,902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0.2%)	227억원
- 고용보험기금 전출 등 회계기금간거래(6.0%)	3,201억원

1)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원으로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8,662억원으로 전년대비 7,329억원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62,394	26	0	0	0	62,420	53,587	171	8,662	85.8
	(102,080)	(19)	(380)	(0)	(0)	(102,478)	(86,456)	(26)	(15,991)	(84.4)
고용창출	19,520	1	0	0	0	19,521	16,567	93	2,860	94.9
	(22,066)	(0)	(380)	(0)	(0)	(22,446)	(18,840)	(1)	(3,605)	(83.9)
직업능력 개발	8,421	2	0	0	0	8,423	7,826	64	533	92.9
	(10,353)	(8)	(0)	(0)	(0)	(10,360)	(9,228)	(2)	(1,130)	(89.1)
고용안전 망확충	23,426	2	0	0	0	23,427	18,250	0	5,177	77.9
	(48,768)	(0)	(0)	(0)	(0)	(48,769)	(37,619)	(2)	(11,148)	(77.1)
고용평등 증 진	403	0	0	0	0	403	402	0	0	99.8
	(660)	(1)	(0)	(0)	(0)	(661)	(656)	(0)	(4)	(99.2)
노사정책	531	0	0	0	0	531	493	1	3	92.8
	(576)	(0)	(0)	(0)	(0)	(576)	(570)	(0)	(0)	(99.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632	1	0	0	0	633	626	1	6	98.9
	(588)	(1)	(0)	(0)	(0)	(589)	(566)	(1)	(22)	(96.1)
고용노동 행정지원	5,932	20	0	0	0	5,952	5,902	11	39	99.2
	(5,778)	(8)	(0)	(0)	(0)	(5,786)	(5,685)	(20)	(81)	(98.3)
소속책임 운영기관 운영	283	0	0	0	0	283	277	0	5	97.9
	(108)	(0)	(0)	(0)	(0)	(108)	(108)	(0)	(0)	(100.0)
전출금등	3,201	0	0	0	0	3,201	3,201	0	0	100.0
	(13,183)	(0)	(0)	(0)	(0)	(13,183)	(13,183)	(0)	(0)	(100.0)

주: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나) 이용 내역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없음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137억 9,100만원임.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각 지방관서와 본부 여비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47억 2,400만원,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마련 등을 위해 25억 3,0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합 계	12,234		
고용창출	4,730	○ (고용센터인력지원) 공무직 근로자 고용부담금 납입 예산 부족	2,200
		○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마련 등	2,530
노사정책	394	○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임금격차해소·임금체계 개편 및 한국형 오넷 및 노동조합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	394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2,261	○ (근로조건개선지원,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관 등 지방관서 여비 부족액 전용	2,261
산업재해예방	130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망사고발생 현황 홈페이지 구축 관련 예산 전용	130
고용노동 행정지원 등	4,720	○ (기본경비 및 인건비) 각 지방관서와 본부 여비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부족액 전용	4,720

(라)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170억 9,900만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직업안정기관운영 84억 600만원, 내일배움카드 63억 6,4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합 계	17,099		
고용창출	9,344	직업안정기관운영	8,40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938
직업능력개발	6,364	내일배움카드(일반)	6,364
고용안전망확충	40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0
고용평등증진	15	중장년층취업지원	15
노사정책	80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8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100	근로조건개선지원	30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12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30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등	20
산업재해예방	26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26
고용노동행정지원	1,130	정책연구개발	19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72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4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4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311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1

(마) 불용액 내역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8,661억 7,900만원임. 주요 불용내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3,000억 600만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151억 7,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866,179		
고용창출	286,036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집행잔액	169,649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잔액	98,667
직업능력개발	53,324	내일배움카드 집행잔액	52,646
고용안전망확충	517,691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잔액	300,00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잔액	215,173
고용평등증진	161	중장년층취업지원 등 집행잔액	138
노사정책	3,712	합리적노사관계지원 등 집행잔액	3,71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602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 집행잔액	602
산업재해예방	197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등 집행잔액	197
고용노동일반	4,456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집행잔액 등	1,048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억 7,900만원임. 이 중 4,0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6.9%이며, 미수납액은 5억 3,900만원임. 미수납액(5억 3,900만원)은 진폐위로금 등 부당이득 회수 시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에 기인함.

[2023회계연도 에특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579	40	0	539	6.9
기타재산이자수입	-	8	8	0	0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	571	32	0	539	5.6

(2) 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1억 3,200만원으로, 이 중 891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에특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 산 현 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 · 전용액					
합 계	89,132			0	89,132	89,127		5	100.0
진폐위로금지급	86,415	-	-	△322	86,093	86,090	-	3	100.0
건강진단	1,510	-	-	444	1,954	1,954	-	-	100.0
건강진단지원금	1,207	-	-	△122	1,085	1,083	-	2	99.8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44억 1,300만원임. 이 중 288억 5,5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65%임.

[2023회계연도 지특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합 계	16,501	44,413	28,855	-	15,559	65.0
지역지원계정	15,939	38,920	23,362	-	15,559	6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62	5,493	5,493	-	-	100.0

(2) 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02억 4,800만원으로, 이 중 2,985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특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300,248	300,248	298,511	-	1,737	99.4
지역지원계정	276,577	276,577	274,840	-	1,737	9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671	23,671	23,671	-	-	100.0

마.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 세출결산

2023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54억 2,900만원으로, 이 중 3,614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39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주요 지출내역은 한국폴리텍대학출연 사업으로 3,122억 2,6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사업으로 532억 200만원을 사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특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365,429	365,429	361,492	-	3,937	98.9
한국폴리텍대학출연	312,226	312,226	308,291	-	3,935	98.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53,203	53,203	53,202	-	1	100.0

3. 기금결산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 수입결산 총괄

2023년 기금 수입계획현액은 고용보험기금 21조 6,8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9조 562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조 9,005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121억원 등 총 43조 9,657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 5,858억원(3.5%)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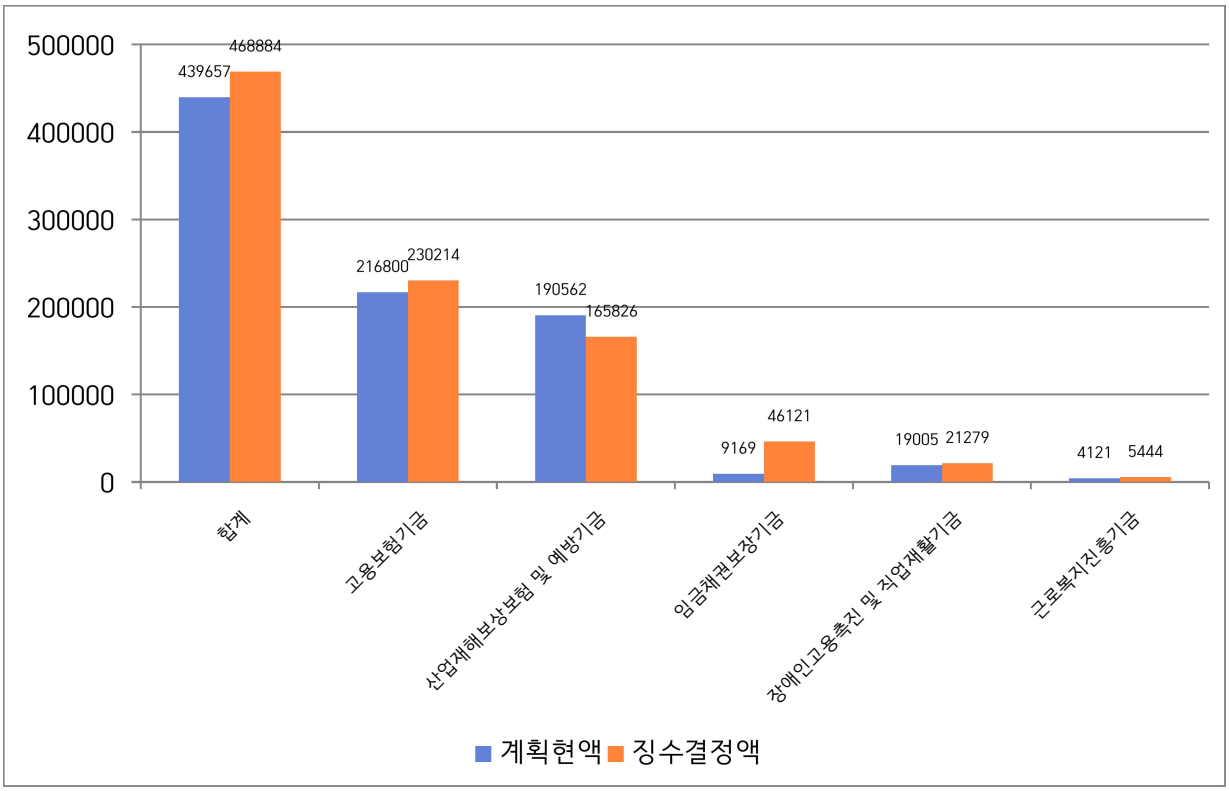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39,657	439,657	468,884	393,780	3,844	71,260	83.9
	(438,270)	(455,515)	(502,274)	(437,749)	(3,043)	(61,482)	(87.2)
고용보험기금	216,800	216,800	230,214	209,133	725	20,356	90.8
	(227,049)	(227,049)	(228,290)	(208,362)	(807)	(19,122)	(91.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90,562	190,562	165,826	149,678	1,066	15,083	90.3
	(181,407)	(181,450)	(155,876)	(139,810)	(1,275)	(14,791)	(89.7)
임금채권보장기금	9,169	9,169	46,121	9,752	1,952	34,417	21.1
	(9,646)	(9,646)	(40,104)	(7,754)	(1,571)	(30,779)	(19.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9,005	19,005	21,279	20,960	30	289	98.5
	(18,746)	(18,759)	(19,557)	(19,257)	(6)	(294)	(98.5)
근로복지진흥기금	4,121	4,121	5,444	4,257	71	1,115	78.2
	(5,104)	(5,098)	(5,055)	(4,220)	(42)	(793)	(83.5)

주: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20조 9,13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4조 9,678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752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96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257억원 등 총 39조 3,780억원이고, 수납률은 83.9%임.

[기금별 계획현액 및 징수결정액 비교]

(단위: 억원)



각 기금별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고용보험기금은 6.1%, 임금채권보장기금은 315.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4.3%가,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2.1%가 많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3% 적음.

한편, 기금별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고용보험

기금은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9.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0.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1.3%, 근로복지진흥기금은 26.2%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미수납액(3조 4,417억원)이 수납액(9,752억원)의 352.9%로 나타나 미수납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출결산 총괄(사업비)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28조 2,765억원, 계획현액은 29조 948억원으로 8,183억원(계획액 대비 2.9%) 증가함.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8조 2,765억원 보다 1.4%(4,047억원)가 적은 27조 8,718억원(계획현액 대비 95.8%)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282,765	290,948	278,718	2	12,251	95.8
	(294,727)	(296,878)	(276,441)	(25)	(20,412)	(93.1)
고용보험기금	169,107	175,098	168,871	1	6,226	96.4
	(188,405)	(189,888)	(175,466)	(2)	(14,420)	(92.4)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96,406	96,414	90,753	1	5,659	94.1
	(88,844)	(88,915)	(84,126)	(0)	(4,789)	(94.6)
임금채권 보장기금	6,357	8,026	7,923	0	103	98.7
	(7,008)	(7,043)	(6,003)	(0)	(1,039)	(85.2)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8,478	8,748	8,660	0	88	99.0
	(7,663)	(7,763)	(7,722)	(0)	(41)	(99.5)
근로복지 진흥기금	2,417	2,662	2,511	0	175	94.3
	(2,288)	(3,448)	(2,791)	(0)	(657)	(80.9)

주: 1.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2. 사업비 지출 결산[여유자금운용, 기금·계정간 거래 미포함]

나. 고용보험기금

(1) 수입결산

2023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3조 214억원 대비 90.8%인 20조 9,133억원이 수납되었고, 2조 356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25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16,800	230,214	209,133	725	20,356	90.8
○사회보장기여금	170,431	196,189	178,157	608	17,424	90.8
- 고용주 부담금	103,467	119,336	108,533	356	10,446	90.9
- 피고용자 분담금	66,964	76,853	69,624	252	6,978	90.6
○재산수입	3,113	1,352	1,343	0	9	99.3
- 건물대여료	1	1	1	0	0	100.0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등	3,112	1,351	1,342	0	9	99.3
○경상이전수입	2,245	4,955	1,919	113	2,922	38.8
- 과징금	0	1	0	0	1	8.7
- 가산금	33	92	36	6	50	38.8
- 기타경상이전수입	2,212	4,862	1,884	107	2,871	38.7
○잡수입	1	1	0	0	0	30.1
○융자원금회수	1,043	993	989	4	0	99.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6,968	23,724	23,724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000	1,064	1,064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5,968	22,660	22,660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00	3,000	3,000	0	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3,000	3,000	3,000	0	0	100.0

(2)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21조 6,80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21조 6,802억원 중 96.4%인 20조 9,133억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0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4조 262억원이 지출되었음.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①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창출', ②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등의 '직업능력개발', ③실업급여 등의 '고용안전망확충', ④일·가정양립지원 등의 '고용평등증진', ⑤'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고용안전망확충'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6조 8,871억원 중 00.0%인 11조 8,242억원을 집행함. 그 외 '고용창출'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3.6%인 6,096억원, '고용평등증진'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6%인 2조 7,015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3년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21조 6,800억원)의 약 2.7% 규모의 금액인 5,989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① '고용안전망확충'에서 실업급여 2,465억원, ② '고용평등증진'에서 일·가정양립지원 1,801억원, ③ '직업능력개발'에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984억원 등 총 5,990억원을 증액하고, '고

용창출’에서 고용창출장려금 1억원을 감액하였음.

[2023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16,800	2	0	216,802	209.133	1	6,308
【 사 업 비 】	169,107	2	5,989	175,098	168,871	1	6,226
○ 고용창출	8,983	0	155	9,138	6,096	0	3,042
- 고용유지지원금	1,974	0	0	1,974	1,270	0	704
- 고용창출장려금	3,689	0	△1	3,688	1,740	0	1,948
-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105	0	0	105	105	0	0
- 직업정보지원	53	0	0	53	53	0	0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15	0	0	315	315	0	0
- 고용서비스지원	71	0	0	71	71	0	0
- 지역고용촉진지원	46	0	155	201	201	0	0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4	0	1	5	5	0	0
- 청년내일채움공제	2,107	0	0	2,107	1,728	0	379
- 고용보험징수관리	620	0	0	620	610	0	10
○ 직업능력개발	17,543	1	1,404	18,948	16,375	0	2,573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8,873	1	0	8,873	6,554	0	2,319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030	0	984	4,014	3,984	0	30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445	0	0	1,445	1,443	0	2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3,128	0	0	3,128	3,082	0	46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531	0	0	531	523	0	8
- 능력개발융자지원(융자)	535	0	420	955	789	0	166
○ 고용안전망확충	116,163	0	2,540	118,703	118,242	0	461
- 실업급여	115,706	0	2,465	118,171	117,755	0	416
- 자영업자실업급여	112	0	75	188	168	0	20
- 실업크레딧지원	345	0	0	345	320	0	25
○ 고용평등증진	25,263	0	1,890	27,153	27,015	0	138
- 일 · 가정양립지원	24,114	0	1,801	25,915	25,822	0	93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869	0	88	958	914	0	44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280	0	0	280	279	0	1
○ 고용노동행정지원	1,154	1	0	1,156	1,142	1	13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47,693	0	△5,989	41,704	40,262	0	82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결산

2023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6조 5,826억원 대비 90.3%인 14조 9,678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5,083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06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190,561	165,826	149,678	1,066	15,083	90.3
○사회보장기여금	87,094	103,558	91,054	828	11,676	87.9
- 고용주부담금	85,243	102,230	89,886	827	11,517	87.9
- 피고용자분담금	1,851	1,328	1,168	1	159	88.0
○재산수입	6,644	7,894	7,894	0	0	100.0
- 관유물대여료	8	8	8	0	0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36	7,886	7,886	0	0	100.0
○경상이전수입	1,132	4,788	1,144	238	3,406	23.9
- 가산금	60	182	66	14	102	36.3
- 기타경상이전수입	1,072	4,605	1,077	224	3,304	23.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5	108	108	0	0	100.0
○융자원금회수	1,616	1,539	1,539	0	0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306	26,603	26,603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39	385	385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2,066	26,218	26,218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1,646	21,336	21,336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200	200	200	0	0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20,300	20,300	20,300	0	0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1,146	836	836	0	0	100.0

(2)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9조 6,414억원 중 94.1%인 9조 753억원이 지출되었고, 5,659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예탁금 1조 5,501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4조 3,424억원이 지출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은 ①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등의 '산재보험', ②안전보건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③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9조 753억원 중 82.7%인 7조 5,0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 '산업재해예방'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2.6%인 1조 1,410억원을,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4.7%인 4,268억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0,562	0	0	190,562	149,678	1	5,659
【 사 업 비 】	96,406	0	0	96,414	90,753	1	5,659
○산재보험	80,151	0	0	80,151	75,074	0	5,076
- 산재보험급여	77,923	0	0	77,923	72,849	0	5,074
- 산재근로자재활복지	871	0	0	871	870	0	1
- 산재근로자요양관리	92	0	0	92	92	0	0
- 산재의료사업지원	324	0	0	324	324	0	0
- 산재보험시설	177	0	0	177	177	0	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50	0	0	150	150	0	0
- 산재보험료징수관리	455	0	0	455	455	0	0
-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57	0	0	157	156	0	1
○산업재해예방	11,987	0	0	11,987	11,410	1	576
- 안전보건재정지원	8,633	0	0	8,633	8,146	0	487
- 안전보건기술지원	2,659	0	0	2,659	2,576	1	81
- 안전보건문화확산	539	0	0	539	534	0	5
- 안전보건기반조성	157	0	0	157	155	0	2
○고용노동행정지원	4,268	0	8	4,276	4,268	0	7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15,501	0	0	15,501	15,501	0	0
【 여유자금운용 】	78,655	0	△8	78,648	43,424	0	0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결산

202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4조 6,121억원 대비 21.1%인 9,752억원이 수납되었고, 3조 4,41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952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169	46,121	9,752	1,952	34,417	21.1
○ 재산수입	478	352	323	0	29	91.8
- 기타민간이자수입	15	19	11	0	8	57.8
- 기타재산이자수입	252	52	31	0	21	59.3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11	281	281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5,873	41,523	5,607	1,952	33,964	13.5
- 가산금	1	3	1	1	2	36.3
- 법정부담금	4,053	4,570	4,082	25	462	89.3
- 기타경상이전수입	1,819	36,950	1,524	1,926	33,500	4.1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59	632	208	0	424	32.9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9	632	208	0	424	32.9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38	2,580	2,580	0	0	100.0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49	50	50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589	2,530	2,530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1	1,034	1,034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	1	1	0	0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1,000	1,000	1,000	0	0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20	33	33	0	0	100.0

(2)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8,026억원 중 98.7%인 7,923억원이 지출되었고, 10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예탁금 1,000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829억원이 지출되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은 ①체당금 지급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및 ②'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7,923억원 중 97.6%인 7,7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2.4%인 193억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9,169	0	0	9,169	9,752	103
【사 업 비】	6,357	0	1,670	8,026	7,923	103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180	0	1,654	7,833	7,730	103
- 대지급금 지급	5,592	0	1,278	6,869	6,869	0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104	0	29	133	133	0
- 체불청산 지원 융자	484	0	347	831	728	103
○고용노동행정지원	177	0	16	193	193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1,000	0	0	1,000	1,000	0
【여유자금운용】	1,812	0	-1,670	143	829	0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결산

2023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279억원 대비 98.5%인 2조 960억원이 수납되었고, 289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9,005	21,279	20,960	30	289	98.5
○ 재산수입 등	172	275	275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7,589	8,803	8,484	30	289	96.3
- 가산금	10	13	10	0	3	76.9
- 법정부담금	7,471	8,524	8,296	25	203	97.3
- 기타경상이전수입	108	266	179	5	83	67.3
○ 융자원금회수	31	34	34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93	5,972	5,972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20	6,194	6,194	0	0	100.0

(2)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8,748억원 중 99%인 8,660억원이 지출되었고, 8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으로 6,300억원,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6,000억원이 지출되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①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지원 등의 '장애인고용지원', ②표준사업장, 보조공학기기 등의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③장애인직업능력개발 등의 '장애인직업능력제고', ④'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지원', ⑤'장애인고용증진융자', ⑥'장애인고용정보화' 등의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가장 그 비율이 큰 사업은 '장애인고용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8,660억원 중 71.7%인 6,213억원을 집행함. 그 외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0.2%인 884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 8,478억원의 약 3.2% 규모의 금액인 270억원을 장애인고용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음.

[2023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19,005	0	0	19,005	20,960	88
【사업비】	8,478	0	270	8,748	8,660	88
○장애인고용증진	7,665	0	270	7,935	7,846	88
- 장애인고용지원	5,982	0	270	6,252	6,213	39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641	0	0	641	608	33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896	0	0	896	884	12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94	0	0	94	93	1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3	0	0	3	1	2
- 장애인고용정보화	48	0	0	48	47	1
○고용노동행정지원	813	0	0	813	813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등	6,000	0	0	6,000	6,000	0
【여유자금운용】	4,527	0	△270	4,257	6,300	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결산

2023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444억원 대비 78.2%인 4,257억원이 수납되었고, 1,1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1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억 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121	5,444	4,257	71	1,115	78.2
○재산수입	60	85	76	0	9	89.0
○경상이전수입	96	1,271	101	69	1,100	7.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1	142	142	0	0	100.0
○융자원금회수	1,546	1,523	1,519	1	3	99.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36	1,572	1,572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91	851	849	0	2	99.7

(2)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2,662억원 중 94.3%인 2,511억원이 지출되었고, 175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1,043억원이 지출되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은 ①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과 ②'고용노동행정지원 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2,662억원 중 88.7%인 2,36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등'은 11.3%인 150억원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 원)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 등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121	0	4,121	4,257	0	210
【사 업 비】	2,417	245	2,662	2,511	0	175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2,212	245	2,457	2,361	0	119
- 근로자복지지원	377	45	422	375	0	70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1,500	200	1,700	1,650	0	50
- 신용보증대위변제	336	0	336	335	0	0
○고용노동행정지원 등	205	0	205	150	0	55
【기금, 계정간거래】	739	0	739	704	0	35
【여유자금운용】	964	-245	719	1,043	0	0

Ⅱ. 결산 검토의견

1. 세출 결산

가. 국제협력관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2004년 ~, 직접)은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과 FTA 고용노동분야 협상 및 협정 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7억 9,300만원 중 7억 8,800만원(99.4%)이 집행되고, 임차료 등 집행잔액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고용노동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93	793	-	-	-	793	788	5	38	793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강화	125	125	-	-	-	125	125	-	-	125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578	578	-	-	-	578	573	-	5	668

* 자료: 고용노동부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구별 편성 및 집행 필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은 FTA 고용노동분야 협상 및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자·다자 통상협상에 참석하거나[2]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협상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외여비 1억 7,300만원, 한-OECD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국제분담금 7,000만원,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연구비 1억 2,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음.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을 위한 연구 현황]

연구명	수행기관	계약방식	계약금액	공개여부	활용
국제노동기준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법제(헌법 및 일반법)간 비교 연구	(사)국제노동법연구원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90,000,000원	비공개[3]	정책 참조
ILO 미비준 협약 및 의정서 검토 및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경쟁 입찰	30,000,000원	공개	정책 참조

*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발췌, 정리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정책연구 외의

2)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칠레 FTA 제7차 개선 협상 등

3)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함.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4]임.

그러나 “국제노동기준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법제(헌법 및 일반법) 간 비교 연구”의 경우 ILO 강제노동금지 관련 협약 쟁점, 노조법과 ILO 협약, 건설현장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하여 ILO 협약 해석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ILO 협약과 우리나라 법제 간 규정 및 해석 검토 시 참조되었고, “ILO 미비준 협약 및 의정서 검토 및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의 경우 국내법이나 제도의 개정 또는 신규 ILO 협약 비준에 따라 추가 비준이 가능해진 협약 및 의정서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국제노동기준 준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어 ILO 협약 및 의정서 등의 신규 협약 비준 검토 시 우리나라 법, 제도와의 정합성 등 관련 내용 검토에 활용되는 등 모두 일반연구가 아닌 정책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제노동기준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법제(헌법 및 일반법)간 비교 연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점은 해당 연구가 정책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연구가 정책연구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임.

정책연구비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제

4)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6.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며, 연구결과를 원칙적으로 발간하고 공개하여야 함.

반면, 일반연구비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정책연구비 성격의 연구용역을 일반연구비로 수행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정책연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5)]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연구의 성격에 부합되는 예산과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목적에 맞는 연구가 수행·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다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정책연구의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2)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2012년 ~, 직접·출연)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정책발전경험을 공유·전수하고 공공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와 ASEAN 및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9억 6,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9,961	9,961	-	-	-	9,961	9,961 [5,515]	-	-	10,175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7,615	7,615	-	-	-	7,615	7,615 [3,169]	-	-	5,671
▪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110	110	-	-	-	110	110 [110]	-	-	293
▪ 한-ILO 협력사업	2,236	2,236	-	-	-	2,236	2,236 [2,236]	-	-	4,211

* 자료: 고용노동부

<ODA 사업관리 강화 및 출연금 교부관리 개선 필요>

동 세부사업 중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내역사업(예산액 76억 1,500만원)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산업안전·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분야의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 고용노동분야 법·제도 등 정책 자문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33억 7,5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억원, 한국고용정보원에 30억 7,0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 1억 5,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음.

출연기관별로 동 내역사업의 2023회계연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25억 7,300만원 포함) 59억 4,800만원 원 중 36.8%인 21억 8,900만원만 집행하고, 37억 4,500만원은 이월, 1,4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2억원 포함) 8억원 중 4억 1,000만원(51.25%)을 집행하고, 3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③한국고용정보원은 예산현액 30억원 7,000만원 전액 불용하였고, ④근로복지공단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내역사업 출연기관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고용노동부		출연기관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율 [C/(A+B)]
한국산업인력공단	3,375	3,375	2,573	5,948	2,189	3,745	14	3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00	600	200	800	410	390	0	51.25
한국고용정보원	3,070	3,070	0	3,070	0	0	3,070	0
근로복지공단	150	150	0	150	150	0	0	100

* 자료: 고용노동부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출연예산 30억 7,0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공식 선언에 따른 사업중단 요청에 따라 외교부의 사업중단 승인과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에 따른 것임.

다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집행률이 36.8%에 불과한바, 출연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이하 “SQ-net”) 구축 사업[6] 예산현액 23억 1,300만원 중 94.6%(21억 8,800만원)가 다음연도(2024년)로 이월되었고, ②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TVET 역량강화 사업[7] 예산현액 19억 9,000만원 중 78.2%(15억

6) 우리나라의 자격정보시스템(Q-net)을 벤치마킹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7) 스리랑카 국립직업훈련원의 교육훈련 직종개발, 훈련교사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5,700만원)가 다음연도(2024년)로 이월되었으며, ③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사업 예산 9억원 중 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출연사업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율 [C/(A+B)]
베트남 SQ-net 구축	1,073	1,073	1,240	2,313	125	2,188	-	5.4%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TVET 역량강화 사업	941	941	1,049	1,990	433	1,557	-	21.8%
합계	**2,014**	**2,014**	**2,289**	**4,303**	**558**	**3,745**	**-**	**13%**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출연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베트남 SQ-net 구축 사업의 경우, 베트남 정부에서 자체 사업승인 전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절차(Binding Condition 등)가 수원기관인 DVET의 ODA 경험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②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 스리랑카의 경제위기 장기화 및 정치불안('22.7.10 대통령 퇴진 등)으로 지연된 1차년도('22) 과업과 2차년도('23) 과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일부 과업 지연 및 훈련

8) 그 외 한국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능경기제도 구축 및 자체 기능경기대회 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문과 관계자 초청 연수 사업인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역량강화 사업과 세안 회원국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교수법(HRD)과 기술전공분야(사물인터넷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융합과정의 기술연수 실시하는 아세안 직업훈련교사 기술연수 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음.

(시설)장비 구매 공고 무응찰로 이월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베트남 주무부처(노동보훈사회부)의 ODA 경험 부족과 복잡한 내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베트남 SQ-net 구축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예산의 97.6%인 1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고용정보원은 스리랑카의 경제위기, 정치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는 이유로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TVET 역량강화 사업 예산의 99.9%인 10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출연금 교부 시기를 살펴보면, 한국 고용정보원 출연사업인 스리랑카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은 2023년 2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인 베트남 SQ-net 구축과 스리랑카 노동시장 수요기반 TVET 역량강화 사업은 2023년 1월에 교부된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연초에 전액 교부함으로써 집행부진이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DA 사업은 현지국가의 행정력, 정치·경제 사정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함. 그러나 이미 전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차년도로 이월된 상황에서 전년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 요인들의 해소 여부 등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9] 연초 출연기관에 예산을 전액 교부한 점

은 고용노동부가 출연사업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국고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 출연사업의 출연금 교부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나 수원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ODA 출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우회적인 ODA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내역사업(예산액 76억 1,500만원)의 내내역사업인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2012~)’은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경험 공유를 통하여 고용·노동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산업안전 및 직업훈련 분야 제도 수립 및 개선 등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제도의 개선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사업대상국이 정책개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식공유형 원조’ 사업임.

---

9) 스리랑카의 경우 2022년 4월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선언 이후, 2023년 3월 20일이 되어서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승인되는 2023년에도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사업 추진현황]

연 도	사업대상국(자문분야)
'23~'25	캄보디아(노동법/제도)
'22~'24	캄보디아(산재재활), 라오스(노동법)
'21~'23	캄보디아(산업안전분야)
'18~'20	라오스(직업능력개발분야),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7	라오스(직업훈련분야), 스리랑카(ICT 기반 진로지도), 페루(고용센터 운영역량강화)
'16	베트남(직업훈련분야), 캄보디아(직업훈련분야)
'15	베트남(고용센터 운영 모델 구축), 몽골(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캄보디아(근로기준 개선)
'14	베트남(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산안법 개정), 우즈벡(직훈분야 마스터플랜)
'13	베트남(고용법 제정), 몽골(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미얀마(산안법 제정)
'12	베트남(고용법 제정), 필리핀(산업안전보건분야), 스리랑카(직업능력개발분야)

* 자료: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 중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과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분야 정책자문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였고, 캄보디아 산업재해 재활분야 정책자문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은 총 5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방법과 관계 없이 모두 전문가 인건비, 전문가 및 행정지원인력 현지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와 통·번역비, 수원국 정책담당자 초청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등으

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내용 또한 정책자문분야만 다를 뿐 사전 자료 조사-현지 파견을 통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자문의견 송부 등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과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분야 정책자문사업은 일반연구비에서 집행되었음.

해당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사업이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 동 사업의 결과물로서 연구보고서가 없는 점과,[10] 해당 사업의 일반연구비 3억 5,000만원 중 8,000만원이 타 ODA사업의 사전 타당성이나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위한 연구에 집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ODA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은 예산 과목은 정책자문사업이 국가별로 3년 동안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임에도 매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같은 기관을 정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형식적이고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 별도 수행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였음.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10) 실질적인 사업시행 주체인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추진과정을 기록한 최종보고서로 연구보고서를 갈음하였음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사업은 노사발전재단과,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분야 정책자문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사업별로 각각 9,0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직 고용노동부 직원을 자문을 총괄하는 책임자(Project Manager)로,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2~3인을 자문 분야별 전문가[11]로 영입하고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런데, 노사발전재단에 의해 수행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 사업의 수행과정을 보면, 다음의 사항에서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라오스노동법 관련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2021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2월 26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자와 2022년 2월 27일 제안서평가 발표로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실제 정책자문을 한 연구진이 같음.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점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정책자문사업은 '지식공유형 원조' 사업으로서 수원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므로 실제 자문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입한 전문가의 역할[12]이 중요함.

11) 노사발전재단은 사업별로 각각 3인을 분야별 전문가로 영입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정책실장이 안전보건교육과 통계 분야 전문가 역할을 함으로써 2인을 전문가로 영입함

12) 각 최종보고서 상 업무분장을 보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업수행일정 등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자문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총장은 사업추진단장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총괄 역할을 하며,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의 2명은 사업 전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2023년 라

그런데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실태조사 및 수원국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지원인력 1인과 자문을 위한 전문가 2인을 기준으로 총 2회의 현지 출장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 노사발전재단 직원 3명 등 총 7명이 현지 출장에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국외여비가 지출되었고[13] 현지 출장의 횟수는 1회에 그침. 또한 캄보디아 노동법 관련 정책자문 사업의 경우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등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일정이나 생략해도 되는 일정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연구용역의 외형으로 실질적으로는 타 출연사업과 유사하게 ODA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효율적이고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과 사업 내용을 일치시키고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오스 정책자문사업 최종보고서 3-4페이지, 2023년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 최종보고서 7페이지 참조)

13) 캄보디아의 산업안전분야 정책자문사업은 총 5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지출됨

(3)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1-30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2004년~, 직접/보조/위탁)은 지방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도 내국인의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적정 규모로 도입·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관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6억 7,100만원으로, 이 중 43억 2,100만원(92.5%)이 집행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 1,100만원과 일반수용비 5,700만원 등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641	4,641	30	-	-	4,671	4,585 [4,321]	20	66	7,934
▪ 외국인취업자관리	2,655	2,655	30	-	-	2,685	2,601 [2,590]	-	66	4,163
▪ 외국인력상담센터	1,986	1,986	-	-	-	1,986	1,986 [1,731]	-	-	1,971

* 자료: 고용노동부

<일반수용비의 과다편성과 무분별한 사용 지양 필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취업자관리(2004년 ~, 직접)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하거나 안내책자나 취업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임.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은 총 26억 5,500만원이고, 이 중 일반수용비가 21억 6,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81.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자료에 따르면 지방관서 고용센터 통역원 사례비, 외국인력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과 외국인력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 각종 정책 공고, 관련 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14)]

그런데 일반수용비의 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주한 대사 면담 등 공식행사에 초청된 외빈 또는 국외출장 시 상대국 인사에게 주는 선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공식행사 1회에 최대 489만 1,000원, 국외출장 1회에 최대 427만원 등 총 2,5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음.

1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p.958 참고

[일반수용비 중 선물구매 지출 내역]

(단위: 원)

연번	건명	물품	수량	지출액
1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 국외출장	나전필함	1	129,000
		자개명함	40	720,000
2	태국 외교위원회 면담	나전필함	1	129,000
		나전만년필	10	660,000
3	베트남 대사관, 송출기관장 면담	자개명함	7	126,000
4	필리핀 대사 면담	나전송학병풍	1	230,000
5	일본 국외출장	나전손톱깍기 세트	6	210,000
		명품오르골	6	306,000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앙아시아 출장 동행	민화부채	20	420,000
7	주한케냐대사 면담	민화부채	10	210,000
8	네팔 국외출장	나전만년필	3	198,000
		나전필함	1	78,000
9	베트남 국외출장	수저세트	10	480,000
		나전필함	1	78,000
		나전장식접시	1	220,000
		나전3폭병풍	1	220,000
		나전연필꽂이	1	78,000
		수저세트	3	204,000
		민화부채	20	420,000
10	인도,우즈벡,키르기스스탄 국외출장	홍삼정(50포)	6	1,266,000
		홍삼정(30포)	6	702,000
		설화수	4	480,000
		나전병풍3쪽	4	1,040,000

		인후당(30개입)	6	432,000
		나전장식접시	2	440,000
		민화부채	20	420,000
11	스리랑카 국외출장	나전장식쟁반	5	1,100,000
		홍삼정(50포)	6	1,266,000
		인후당	1	72,000
		나전볼펜	40	1,000,000
		민화부채	40	840,000
12	우즈벡 상원의장 면담	설화수(윤조)	1	319,000
		홍삼정	1	211,000
		보석함	1	129,000
13	스리랑카 국회의장 면담	금제관식액자	6	1,440,000
		설화수	1	120,000
		나전필함	1	78,000
14	귀국근로자 간담회	나전벽시계	1	130,000
		고급수저셋	16	768,000
		방짜유기복잔	16	1,568,000
		설화수	2	260,000
15	노무관 간담회	홍삼(30포)	40	4,680,000
		홍삼(50)포	1	211,000
16	EPS 컨퍼런스		16	1,440,000
총액				**25,528,000**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식 회의 및 행사 등에 초

청한 외빈이나 해외 출장 지원을 위한 제경비에 포함되는 선물 등은 사업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실제 구입 된 선물의 품목이나 용도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의 안내·홍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송출국가나 출장 대상국과의 교류를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해당 수용비는 다음과 같이 4차례의 자체전용과 3차례의 세목 조정을 통해 총 1억 3,600만원이 국외여비나 일반용역비, 연구용역비로 집행되고도 5,700만원이 불용된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반수용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금액	변경된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자체전용 ('23.1.18.)	10	260-02	외국인력 수급 관련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자체전용 ('23.4.27.)	20	220-02	중앙아시아 외국인력, 직업훈련 분야 협력 논의
자체전용 ('23.6.15.)	10	220-02	베트남 국외출장(VIP 방베일정 장관 공식수행원 동행)
세목조정 ('23.8.7.)	8	210-14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관련 현장 수요 확인 용역 계약
자체전용 ('23.10.26)	30	220-02	지방관서 외국인력팀 지도점검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세목조정 ('23.10.26)	38	210-1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및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용역
세목조정 ('23.12.15)	20	210-14	2023회계연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회계정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 내용과 실제 집행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사례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15]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작성 단계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기에[16] 이러한 예산 집행의 관행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예산 편성과 다른 집행 관행은 내역사업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결국 이러한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 매년 총액의 상당부분이 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예산집행이 편성 취지와 국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산출액과 집행내역과 일치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15) 2021년 예산의 경우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5,890만원이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었음. 2022년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에서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9,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4,000만원이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었음(2022년 및 2023년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참조)

16)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97페이지

<법령을 위반한 예산집행 및 부적정한 예산과목 편성 관행 시정 필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력상담센터(2011년~, 위탁)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내방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외국인력상담센터는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경기도 안산시에 개소되었음.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은 총 19억 8,600만원인데, 이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 언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원 인건비가 17억 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콜상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나 상담센터 전산장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이 2억 8,500만원임.

동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17] 및 제28조[18]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17)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을 위탁사업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위탁사업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계약 체결 없이 매년 연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 사업계획”으로 계약을 갈음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 편성된 일반용역비도 그 집행단계에서는 과업내용과 산출내역을 기반으로 한 금액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예산 과목과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는 ‘계약’이라는 예산 집행의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시행 체계를 살펴보면 민간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인력공급회사[20]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예산의 약 85%

18)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9)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 업체는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종인 우리엔유(주)임.

인 16억 7,846만 2,500원을 지급하면서, 전화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주의 통·번역 요청에 대한 지원, 시설 및 장비 등 유지관리, 상담 자료 및 보안 관리 등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21]

수탁기관이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현행 사업의 시행체계는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비·공공요금 등의 집행 등 단순 업무와 위탁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작 수탁한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상담업무를 별도의 인력 공급회사에 위탁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행사에 있어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둘째, 현행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인력공급업체로의 이중 위탁 체계는 사무의 지휘·감독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이중적인 요소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실제 인력공급회사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공급회사 선정과정에서 지급하는 조달청 수수료 등은 이러한 이중 위탁 체계에

2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 상담센터 시설 관리 등을 실시함

서 발생한 가외적인 비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외성은 상담의 질 저하 등 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송출국가 언어의 구사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 등 고용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인력공급회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 만을 실시하는 현재의 운영 체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을 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등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탁하여 그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가 설립 근거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취지에 부합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고용정책실

(1)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일반회계, 1032-30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2001년~, 직접 및 출연)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협의 조정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단위 고용실천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회계년도 예산현액 42억 9,700만원 중 42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4,297	4,297	-	-	4,297	4,203	-	94	4,053
▪ 일자리대책지원	333	333	-	-	333	239	-	94	300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359	359	-	-	359	359	-	-	612
▪ 일자리사업평가	3,605	3,605	-	-	3,605	3,605	-	-	3,141

* 자료: 고용노동부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일자리사업평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6호[22]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총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평가[23]를 실시한 후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또는 사업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36억 500만원이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음.

「국가재정법」 제12조[24]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

2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23)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 현장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예산 실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함.

2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로, 출연금은 그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국가재정법」이 출연에 대하여 명시적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출연금이 민간위탁사업비 등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 집행상 자율성을 높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바,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사업비의 구분계리 및 잔액의 국고환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출연금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무부처가 별도로 통보하는 처리지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처리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제5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같은 법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

즉,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제4항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②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

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⑤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⑥앞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자리사업평가는 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4항제5호의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상의 '고용서비스'란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로 규정[25]되어 있는바 취업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인 '일자리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즉, 고용노동부는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집행이 자유로운 출연금의 형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지급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며, 동 사업비가 고용노동부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26]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25)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요하다고 보임.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27]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28]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위탁 사무에는 일자리사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을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28)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2012년~, 직접/위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조 764억 500만원으로, 이 중 8,612억 3,200만원(80.0%)이 집행되고, 2,15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76,405	1,076,405	-	-	-	1,076,405	861,232	-	215,173	836,243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부

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등 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2022년 7월부터는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시기별 사회보험사각지대 사업의 확대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확대 적용 대상
2020. 12.	예술인
2021. 7.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⑦ 방문판매원 ⑧ 화물차주 ⑨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⑩ 방과후학교 강사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2. 1.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 ① 퀵서비스 기사 ② 대리운전 기사
2022. 7.	노무제공자 5개 직종 ①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②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자 ③ 관광통역안내사 ④ 골프장 캐디 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지원대상별로 지원 요건 및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29]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

29)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임(단,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봄,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모두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임.

[지원대상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요건	사업규모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규모와 무관	사업규모와 무관
	보수수준	월 평균보수(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 관련 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월보수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270만원 미만
	지원제한요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좌 동)	(좌 동)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예술인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좌 동)	(좌 동)

<일용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업 참여 독려 필요>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료지원금'과 가입촉진, 홍보 및 공공요금·제세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음.

보험료지원금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조 509억 1,400만원으로, 이 중 실집행액은 8,167억 2,300만원(실집행률 77.7%)이고, 불용액은 2,143억 1,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세부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076,405	1,076,405	-	-	-	1,076,405	861,232 [840,431]	-	215,173	836,243
▪ 보험료지원금	1,050,914	1,050,914	-	-	-	1,050,914	836,600 [816,723]	-	214,314	813,594
▪ 운영비	25,491	25,491	-	-	-	25,491	24,632 [23,708]	-	859	22,649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실제 지원 인원이 목표 지원 인원의 80% 이상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제 월평균 지원 인원은 2,663명으로 목표 월평균 지원 인원 19,375명의 13.7%에 불과하고, 실제 지원 금액은 28억 900만원으로 목표 지원 금액 267억 8,400만원의 10.5%에 그쳤음.

또한, 예술인은 실제 월평균 지원 인원이 3,096명으로 목표 월평균 지원 인원 7,638명의 40.5%, 노무제공자는 실제 지원 인원이 63,601명으로 목표 지원 인원 195,132명의 32.4%로 나타남.

[2023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 인원(월평균)			지원 금액		
		목표 (A)	실제 (B)	달성률 (B/A×100)	목표 (C)	실제 (D)	집행률 (D/C×100)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459,796	385,739	83.9	164,147	124,792	76.0
	국민연금	523,693	434,983	83.1	820,920	667,415	81.3
	소계	983,489	820,722	83.5	985,067	791,207	8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76,913	85,179	110.7	12,109	10,297	85.0
	국민연금	19,375	2,663	13.7	26,784	2,809	10.5
	소계	96,288	87,842	91.2	38,893	13,106	33.7
예술인	고용보험	7,638	3,096	40.5	761	464	61.0
노무제공자 (12개직종)	고용보험	84,013	63,301	32.4	11,062	10,946	41.8
추가 5개직종	고용보험	79,691			10,49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31,428			4,636		
합계		1,282,547	974,961	76.0	1,050,914	816,722	77.7

* 노무제공자: 목표 지원 인원·금액은 구분하여 작성하나, 실제 지원 인원·금액은 통합 집계함

** 자료: 고용노동부

그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예술인 실제 지원 인원도 각각 1,468명과 2,212명으로 목표 지원 인원인 35,000명과 15,220명의 4.2%, 14.5%에 불과함. 노무제공자의 경우도 2021년과 2022년 실제 지원 인원이 각각 5,217명과 8,654명으로 목표 지원 인원인 430,000명과 237,293명의 1.2%,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목표 (A)	실제 (B)	달성률 (B/A×100)	목표 (C)	실제 (D)	집행률 (D/C×100)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390,731	375,210	96.0	115,156	104,613	90.8
	국민연금	419,955	426,794	101.6	602,316	644,819	107.1
	소계	810,686	802,004	98.9	717,472	749,432	104.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계						
예술인	고용보험	35,000	1,468	4.2	9,677	189	2.0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430,000	5,217	1.2	59,443	260	0.4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5개 직종	고용보험						
합계		1,275,686	808,689	63.4	786,592	749,881	95.3

* 일용근로자: 2022년부터 지원인원, 예산 별도 편성, 21년에는 일용근로자 별도 집계 안 됨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20.12~),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1.7~), 플랫폼('22.1~), 5개 직종('22.7~)

***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목표 (A)	실제 (B)	달성률 (B/A×100)	목표 (C)	실제 (D)	집행률 (D/C×100)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439,948	304,587	69.2	135,173	88,787	65.7
	국민연금	472,715	396,610	83.9	706,577	563,494	79.7
	소계	912,663	701,197	76.8	841,750	652,281	77.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2,774	65,876	79.6	19,553	6,782	34.7
	국민연금	72,157	1,266	1.8	82,917	1,228	1.5
	소계	154,931	67,142	43.3	102,470	8,010	7.8
예술인	고용보험	15,220	2,212	14.5	3,683	319	8.7
노무제공자 (12개직종)	고용보험	94,472	8,654	3.6	21,882	2,185	4.6
추가 5개직종	고용보험	71,821			8,318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71,000			17,175		
합계		1,320,107	779,205	59.0	995,278	662,795	66.6

* 노무제공자: 목표 지원 인원·금액은 구분하여 작성하나, 실제 지원 인원·금액은 통합 집계함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 확대 적용된 지원 대상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활용하는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대상자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원단가의 면밀한 책정 필요>

2023년 동 사업 지원 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지원금액의 집행률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 지원 인원 목표달성률이 83.5%, 지원금액 집행률이 80.4%로 큰 차이가 없으나, 예술인은 지원 인원 목표달성률이 40.5%인데 지원금액 집행률은 61.0%로 그 차이가 20.5%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제 지원 인원은 85,179명으로 목표 지원 인원 76,913명의 110.7%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02억 9,700만원으로 목표 지원 금액 121억 900만원의 85.0%로, 지원 인원의 목표달성률(110.7%)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85.0%) 간 차이가 25.7%p인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단위: 명, 백만원, %)

지원대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목표 (A)	실제 (B)	달성률 (B/A×100)	목표 (C)	실제 (D)	집행률 (D/C×100)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459,796	385,739	83.9	164,147	124,792	76.0
	국민연금	523,693	434,983	83.1	820,920	667,415	81.3
	소계	983,489	820,722	83.5	985,067	791,207	80.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76,913	85,179	110.7	12,109	10,297	85.0
	국민연금	19,375	2,663	13.7	26,784	2,809	10.5
	소계	96,288	87,842	91.2	38,893	13,106	33.7
예술인	고용보험	7,638	3,096	40.5	761	464	61.0
노무제공자 (12개직종)	고용보험	84,013	63,301	32.4	11,062	10,946	41.8
추가 5개직종	고용보험	79,691			10,49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31,428			4,636		
합계		1,282,547	974,961	76.0	1,050,914	816,722	77.7

* 노무제공자: 목표 지원 인원·금액은 구분하여 작성하나, 실제 지원 인원·금액은 통합 집계함

** 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지원 금액의 집행률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1인당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할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실제 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단가를 면밀히 책정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41-31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출연)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 1조 2,384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385억 9,200만원(75.8%)이 집행되었고,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00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국민취업 지원제도	1,238,478	1,238,478	160	-	-	1,238,478	938,592	40	300,006	951,470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25,455	1,225,455	160	-	-	1,225,615	925,569	40	300,006	942,515
- Ⅰ유형	1,048,796	1,048,796	50	-	-	1,048,846	756,592	-	292,254	762,373
- Ⅱ유형	95,062	95,062	-	-	-	95,062	93,573	-	1,489	103,193
- 일경험프로그램	80,382	80,382	110	-	-	80,492	74,189	40	6,263	75,984
- 전산망강화	1,215	1,215	-	-	-	1,215	1,215	-	-	965
▪ 국민취업지	13,023	13,023	-	-	-	13,023	13,023	-	-	8,955

원제도(지특)										
- Ⅰ유형	11,506	11,506	-	-	-	11,506	11,506 [8,203]	-	-	7,793
- Ⅱ유형	804	804	-	-	-	804	804 [310]	-	-	776
- 일경험프로그램	713	713	-	-	-	713	713 [292]	-	-	38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30]

Ⅰ유형 내역사업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 청년은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의 여부에 따라 세부유형을 결정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Ⅱ유형 내역사업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30) 이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는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동 내역사업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되는 훈련연계형과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및 적응능력 향상을 등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형으로 구분됨.

100% 이하인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31]에 대하여 취업활동비용[32]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8~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31)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2)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훈련참여지원수당, ③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훈련참여지원수당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③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급됨.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Ⅰ유형 참여자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33]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할 경우(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 등 비교]

구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대상자	Ⅰ·Ⅱ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로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Ⅰ유형 및 Ⅱ유형(조건부수급자만 해당)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지급요건	다음의 ①소득요건 및 ②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Ⅱ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다음의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취업·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조기취업요건 (Ⅰ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업·창업한 자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업·창업한 자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지급수준	150만원을 1회 지급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33) 조건부수급자는 특정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임.

<사업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 중 Ⅰ유형 내역사업의 2023년 참여 인원 및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실제 참여 인원은 226,746명으로 목표 참여 인원 400,000명의 56.7%에 불과하고,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참여 인원은 2,183명으로 목표 참여 인원 4,000명의 5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년도 Ⅱ유형 내역사업의 참여 인원 및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참여 인원의 목표달성률은 99.0%, 예산의 집행률은 98.4%에 달하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참여 인원의 목표달성률은 78.1%이고 예산의 집행률은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Ⅰ·Ⅱ유형 내역사업의 참여 인원 및 예산집행 결과]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참여 인원			예산		
		목표 (A)	실제 (B)	목표달성률 (B/A×100)	편성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100)
Ⅰ유형	전 체	404,000	228,929	56.7	1,060,302	764,795	72.1
	일반(전국)	400,000	226,746	56.7	1,048,796	756,592	72.1
	지특(제주)	4,000	2,183	54.6	11,506	8,203	71.3
Ⅱ유형	전 체	70,570	69,748	98.8	95,866	93,883	97.9
	일반(전국)	70,000	69,303	99.0	95,062	93,573	98.4
	지특(제주)	570	445	78.1	804	310	38.6

* 실제 참여 인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인원을 의미함(신청·상담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은 인원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Ⅰ유형 내역사업의 집행 부진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1년부터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의 경우 실제 참여 인원은 340,649명으로 목표 참여 인원 454,000명의 75.0% 수준이었고, 2022년 실제 참여 인원은 219,527명으로 목표 참여 인원 505,000명의 43.5%에 불과함.

[2021 · 2022년 Ⅰ유형 내역사업의 참여 인원 및 예산집행 결과]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참여 인원			예산		
		목표 (A)	실제 (B)	목표달성률 (B/A×100)	편성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100)
2021년	전 체	454,000	340,649	75.0	945,218	828,021	87.6
	일반(전국)	450,000	337,480	75.0	937,179	820,544	87.6
	지특(제주)	4,000	3,169	79.2	8,039	7,477	93.0
2022년	전 체	505,000	219,527	43.5	1,216,520	732,264	60.2
	일반(전국)	500,000	216,970	43.4	1,205,429	724,416	60.1
	지특(제주)	5,000	2,557	51.1	11,091	7,848	70.8

* 실제 참여 인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인원을 의미함(신청·상담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은 인원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Ⅰ유형 내역사업의 2022년 참여 인원 목표달성률이 43.5%에 불과함에도 2023년 목표 참여 인원을 2022년 실제 참여 인원 219,527명의 2배 수준인 404,000명으로 편성되었는바, 실제 사업수요에 기초하여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Ⅱ유형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 제주지역이 전국과 대비할 때 참여 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예산의 집행률이 훨씬 저조한 것은 제주지역 내 구직자의 특수성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제주지역 내 구직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2006년~, 직접 및 보조·출연)은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등 지역고용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회계년도 예산현액 1,475억 400만원 중 1,462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2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47,504	147,504	-	-	147,504	146,297	-	1,207	106,292
▪ 자치단체지원	135,875	135,875	-	-	135,875	134,917	-	958	94,767
▪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430	430	-	-	430	430	-	0	90
▪ 산업인자위지원	10,500	10,500	-	-	10,500	10,500	-	0	11,040
▪ 운영비	699	699	-	-	699	699	-	250	395

* 자료: 고용노동부

<과업량에 부합하는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자치단체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설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 1,358억 7,500만원 중 1,349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한편, 내역사업 중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 4억 3,0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음.

'자치단체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중 대부분인 1,341억 8,500만원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6억 9,000만원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어 있음. 그리고 '지역고용인프라확충' 내역사업의 예산은 전액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3년 2개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21억 2,000만원으로 총 6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치단체지원 내역사업 예산 중 2억 9,000만원을 '지역 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계약 명목으로, 지역고용인프라확충 내역사업 예산 중 2억 5,000만원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계약 명목으로 각각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와 계약하였음.

[2023년 일반용역비 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약명	계약액	수탁기관
자치단체 지원	지역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연구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평가지원	1,000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290**	**(사)한국능률협회**
	2023년도 지역고용주체 역량강화교육	4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운영지원	90	㈜○○앤코드
	지역고용사업 홍보물 제작	90	○○커뮤니케이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50**	**(사)한국능률협회**

* 자료: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와의 용역계약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내역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명목으로 체결하여 온 것임.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존에 체결하던 계약에 추가하여 '자치단체 지원' 내역사업 예산으로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사)한국능률협회와의 연도별 용역계약 체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내역사업명	계약명	계약액
2020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20
2021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20
2022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50
2023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50
	자치단체 지원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290

* 자료: 고용노동부

매년 체결하던 용역계약과 별도로 추가적인 용역을 계약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이 구분됨과 동시에 추가 계약을 통해 늘어난 계약액에 맞는 과업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능률협회가 2022년 2억 5,000만원의 1건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의 내용과 2023년 2억 5,000만원 및 2억 9,000만원의 2건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고용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2023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였고 이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비 증액[34]으로 인해 각종 심사, 회의, 워크숍과 관련한 장소준비 등 행정지원 업무를 2023년 신규 계약한 사업비를 통해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22년 기존 계약을 통해 수행한 과업과 동일하거나 일부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의 내용 및 과업량 측면에서 2022년과 비교할 때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여 교부하였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임.

34)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2022년 1,220억 7,500만원에서 2023년 1,358억 7,500만원으로 138억원 증액 편성됨.

[(사)한국능률협회와의 2022년 계약과 2023년 계약의 과업내용 비교]

2022년		2023년	
계약명 (계약액)	과업수행내용	계약명 (계약액)	과업수행내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지역고용 아카데미 운영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행정지원 - 심사 관련 행정지원 - 사업 만족도 조사 ▲OECD 지역고용정책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출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지원 (2억 5,000만원)	▲지역고용 아카데미 운영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행정지원 - 현장의견 수렴 워크샵 및 간담회 개최 지원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2억 9,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행정지원 - 심사 관련 행정지원 - 사업 담당자 설명회 및 실적점검회의 지원 - 사업 모니터링 행정지원 - 사업평가 관련 행정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즉,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35]

35) 동 사업의 2024년 일반용역비 예산 감액으로 2024년에는 한국능률협회와 '지역 일자리사업 운영 행정지원' 명목으로 2억 1,800만원의 계약 1건만을 체결한 상태임.

<정보시스템 구축 시 관련 절차 준수 필요>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역일자리지원센터를 2020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12억 9천만원, 2023년 10억원의 용역계약을 한국고용정보원과 체결하였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동 예산을 통해 지역 노동 시장의 지표를 제공하는 '지역일자리맵 시스템'을 구축한바, 구축용역비 및 감리비 등으로 4억 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구축된 지역일자리맵 시스템의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구축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바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동 시스템 구축에 2022년과 2023년의 2년간 총 9억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지역일자리맵 시스템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배경		지역이 스스로 산업현황 및 노동시장 실태 등을 한눈에 파악, 고용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도록 별도 지역단위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제공 정보	지역일자리 정보	(환경) 인구통계, 입지계수(산업의 지역별 고용밀집도), 사업장수, 종사자수 등 (양) 피보험자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구인배수 등 (질) 임금수준, 초과근로시간, 총근로시간 등
	일자리사업 실적	직업훈련, 장려금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역별 성과와 문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지원실적 제공
구축 소요예산		총 9억 2,500만원 (2022년 4억 500만원 / 2023년 5억 2,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시작 당시에는 지역일자리맵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보완하는 단계에 있었고, 2022년 하반기에 용역비 중 일부의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3년에는 구축된 지역일자리맵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세부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용역비 중 일부를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원칙적으로 ISP·ISMP[36]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나, 고용노동부는 동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ISP 또는 ISMP를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지도 연계 검색, 지역 간 비교 등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 별도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단순 자료 제공 시스템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37] 및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수립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형 중 '단순시스템 도입' 및 'DB 구축'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ISP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36)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MP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37)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SP·ISMP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는 '단순시스템 도입' 유형으로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을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언론모음 홈페이지, 설문시스템 등을 들고 있음. DB구축 유형 또한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각종 문헌 자료 디지털화, 수기 조사 자료 디지털화 등 off-line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사업을 들고 있음.

[ISP · ISMP 수립 제외 가능 유형]

구 분	내 용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예)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언론모음 홈페이지, 설문 시스템 등
단순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예) 일부 소규모 기능 개선, 단순 반복 업무 효율화를 위한 RPA 도입 사업 등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예) PC, 노트북, 프린터 등 구매 사업, 사무용 SW 구입 등 별도 개발이 필요없는 상용 SW 구매 사업
DB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 *예) 각종 문헌 자료 디지털화, 수기(지면)조사 자료 디지털화 등 off-line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사업
민간투자형 SW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단, 정부고시형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ISP 또는 ISMP를 수립하여야 함

*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7판)」, 2023.

즉, 이에 따르면 ISP 수립이 제외되는 '단순시스템'에 해당하려면 입력·조회·출력 등 단순 기능만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나, 지역일자

리맵 시스템은 공표된 자료를 취합한 후 지역별로 구분,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ISP 수립이 제외되는 'DB구축'은 인력 투입을 통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나 지역일자리맵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DB화하는 것이므로 DB구축에도 해당되지 않음.

타 유형 사업과 달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특별히 ISP·ISMP 수립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구축되면 일정 규모의 예산이 매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고정 지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편성 예산은 적정한 규모이며 비용 대비 효과성은 충분한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일자리맵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통계청이 2019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일자리 맵'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하여 ISP 수립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음.[38)]

통계청은 지도위에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

38)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ISP를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연구용역(지역 일자리맵 인프라 구축사업, 2022)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임.

스[39]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맵'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콘텐츠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인크루트의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구인정보 현황을 그래프, 지도 등으로 조회하고, 실업률 등 일자리 현황통계 및 피보험자 증감, 구직건수와 같은 일자리 증감 관련 통계지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통계청 '일자리 맵'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오늘의 구인현황	매일 수집한 워크넷과 인크루트의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및 신규 구인정보 등 현황을 그래프, 지도 등으로 조회
일자리 보기	구인정보를 '희망지역', '급여', '직종'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도와 리스트 형태로 조회 * (내주변 일자리) 이용자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내 주변 일자리 우선 제공
구인 현황분석	워크넷, 인크루트 일일 구인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지도 제공
일자리 통계분석	일자리 현황, 일자리 증감 등 일자리 관련 통계지표 조회 * 5개 부문 32개 지표 제공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2019.3.20.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통계청의 '일자리 맵'은 고용노동부가 구축한 '지역일자리 맵'과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이는바 ISP 수립을 통해 이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및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39) 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http://sgis.kostat.go.kr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초 시스템 구축 후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의해 2022년 최초 시스템 구축 시 소요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23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바, ISP 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 결과로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도 발생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할 경우에는 ISP 또는 ISMP를 거치도록 규정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적정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보험기금 총괄

<고용보험기금 결산 개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임.

기금의 주요수입은 피보험자(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적립금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및 기금운용비 등임.

2023년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20조 9,133억원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부담금 및 분담금 수납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18조 2,409억원, 여유자금회수가 2조 3,723억원, 정부내부수입이 3,000억원이고, 사업비가 16조 7,728억원, 여유자금운용이 3조 8,542억원으로 나타남.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자체수입		18,240,950	사업비	16,772,851
	부담금	17,815,726		
	융자원금회수	98,927	정부내부지출	172,003
	재산수입	134,336		
	기타	191,961	기금운영비	114,230
여유자금회수		2,372,368		
정부내부수입		300,000	여유자금운용	3,854,233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보험기금은 적용근로자 및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①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②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③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④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40]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①실업급여	②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③실업급여	④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 계정에 포함됨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0)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실업크레딧지원 등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임.

[계정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내일배움카드(고보)**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실업크레딧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한 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교육 훈련 제도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달성 방안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2023년도 결산 기준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41]의 수입은 14조 3,879억원, 지출은 14조 3,307억원으로, 재정수지는 573억원 흑자이고, 연말적립금은 3조 7,525억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임금근로자) 결산]

(단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A)	58,566	63,415	70,340	71,476	76,407	84,756	136,287	148,141	135,675	143,879
지출 (B)	49,639	43,978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재정 수지 (A-B)	8,928	8,436	11,783	8,618	△2,750	△13,802	△2,573	4,003	△5,650	573
연말 적립금	29,313	37,600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하나,[42]

41) 자영업자 계정의 경우 수입 및 지출의 규모가 임금근로자 계정의 0.1% 미만이므로,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 계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함.

42)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년 결산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1.5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3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이 2021년 0.2배에서 2023년 1.5배로 증가한 것과 달리, 실업급여 계정은 2017년 0.7배에서 2020년 0.3배로 꾸준히 하락하여 이후 계속 0.3배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고용보험기금 계정별(임금근로자)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 (A)	49,639	43,978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연말적립금 (B)	29,313	37,600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적립배율 (B/A)	0.6	0.7	0.8	0.9	0.7	0.4	0.3	0.3	0.3	0.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지출액 (C)	20,339	26,220	30,064	31,700	36,566	40,894	65,706	66,325	39,182	27,101
	연말적립금 (D)	43,858	44,281	46,198	44,264	38,886	31,726	27,800	13,163	25,658	39,794
	적립배율 (D/C)	2.2	1.7	1.5	1.4	1.1	0.8	0.4	0.2	0.7	1.5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기금은 급격히 증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고 함)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에서 총 10조 3,049억원을 차입하였는바,[43] 장래 상환의무가 있는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는 경우 2023년 연말적립금은 △3조 9,682억 7,800만원이고, 적립배율도 음수(△0.3)인 것으로 나타남.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실업급여 계정(임금근로자)의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총계	수입(A)	19,835,792	15,136,077	20,007,419	15,349,002	18,762,114	17,815,302	18,540,950	18,540,950
	지출(B)	20,465,298	20,465,298	21,057,723	21,057,723	18,064,677	18,064,677	17,059,085	17,059,085
	재정수지 C=(A-B)	△629,506	△5,329,221	△1,050,304	△5,708,721	697,437	△249,375	1,481,865	1,481,865
	연말적립금 (D)	6,699,576	1,999,861	5,648,658	△3,709,474	6,337,873	△3,967,071	7,819,643	△2,485,301
실업급여 계정	수입(A)	13,628,678	10,328,678	14,814,055	10,840,080	13,567,529	13,120,717	14,387,917	14,387,917
	지출(B)	13,885,952	13,885,952	14,413,779	14,413,779	14,132,507	14,132,507	14,330,660	14,330,660
	재정수지 C=(A-B)	△257,274	△3,557,274	400,277	△3,573,699	△564,978	△1,011,790	57,258	57,258
	연말적립금 (D)	3,866,572	566,572	4,266,495	△3,007,481	3,695,306	△4,025,482	3,752,509	**△3,968,278**
	적립배율 (D/B)	0.3	0.0	0.3	△0.2	0.3	△0.3	0.3	**△0.3**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및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문제는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는데,[44] 최근 5

43)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44)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로 증가하는 추세임.

년(2019~2023년)간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지출 규모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구직급여의 지출액은 2023년 11조 3,071억 2,200만원으로 2019년 8조 917억 3,600만원 대비 3조 2,153억 8,600만원(39.7%) 증가하였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지출액은 2023년 2조 2,614억 9,500만원으로 2019년 1조 3,500억 3,100만원 대비 9,114억 6,400만원(67.5%) 증가하였음.

[2019~2023년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직급여	8,091,736	11,855,625	12,062,474	10,910,504	11,307,122
조기재취업수당	290,062	321,316	442,832	468,018	468,354
모성보호육아지원	1,350,031	1,561,358	1,685,010	2,077,151	2,261,495
실업크레딧지원	21,260	27,433	32,013	55,918	31,967
자영업자실업급여	3,884	7,227	9,948	12,399	16,784

*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급여[45]의 경우, 2020년부터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으로의 고용보

[고용보험료율 변화]

연도	1998 이전	1999.1.1. 이후	2003. 1.1. 이후	2006.1.1. 이후	2011.4.1. 이후	2013.7.1. 이후	2019.10.1. 이후	2022.7.1. 이후
보험료율	0.3	0.5	0.45	0.45	0.55	0.65	0.8	0.9

* 실업급여 고용주, 피고용자 각각의 부담분

** 2022. 7.부터 예술인·노무제공자 1.4% → 1.6%(예술인·노무제공자 0.8%, 사업주 0.8%)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천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수	13,864	14,112	14,550	14,899	15,200

* 자료: 고용노동부

험 가입 대상 확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2019년 1,443,605명에서 2023년 1,671,623명으로 15.8%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급여 지급액도 2019년 대비 39.7%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실업급여 지급 현황	
	수급자 수	지급액
2019	1,443,605	8,091,736
2020	1,702,725	11,855,625
2021	1,774,614	12,062,474
2022	1,631,270	10,910,504
2023	1,671,623	11,307,122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①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②육아휴직급여,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④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46] 이 중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2019년 1조 588억 5,300만원에서 2023년 1조 7,969억 9,500만원으로 7,381억 4,200만원(69.7%) 증가하였음.

45)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를 곱한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함.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고 있음.

46)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기간 및 급여지급 수준]**

[최근 5년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원	73,279	70,933	70,301	73,072	73,207
	금액	268,479	285,736	289,430	304,849	326,290
유산사산휴가 급여	인원	816	1,010	1,109	1,238	1,329
	금액	1,207	1,433	1,431	1,595	1,647
육아휴직 급여	인원	**105,165**	112,038	110,555	131,084	**126,008**
	금액	**1,058,853**	1,212,143	1,297,525	1,657,231	**1,796,9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원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금액	**21,095**	54,995	89,669	107,330	**130,3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원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금액	**397**	7,050	6,904	6,146	**6,240**

* 자료: 고용노동부

구분	기간	급여 지급 기간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120일) 대규모 기업: 30일(45일) 노무제공자·예술인: 90일	통상임금(노무제공자·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 월 210만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좌동 대규모 기업: 좌동(최대 30일) 노무제공자·예술인: 좌동	통상임금(노무제공자·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 월 210만원)
육아휴직	1년	(좌동)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10만원) 단,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상한이 월 최대 450만원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을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음)	(좌동)	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기준)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10만원 기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의 급여 지급 기간이 상이해짐.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사용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최초 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대규모 기업에 해당한다면 10일 모두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이 2019년 대비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이 약 20% 증가한 것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70%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47]를 신설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임.

한편,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바,[48][49]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음. 전입금은 처음 편성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그 액수가 3,000억원이지만, 전입금이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50]

47)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하한액은 70만원)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음.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급여의 상한액]

(단위: 백만원)

구분	부(父) 1개월	부(父) 2개월	부(父) 3개월
모(母) 1개월	<부> 200 <모> 200	<부> 200+150 <모> 200	<부> 200+150+150 <모> 200
모(母) 2개월	<부> 200 <모> 200+150	<부> 200+250 <모> 200+250	<부> 200+250+150 <모> 200+250
모(母) 3개월	<부> 200 <모> 200+150+150	<부> 200+250 <모> 200+250+150	<부> 200+250+300 <모> 200+250+300

48)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9) 2001년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산전후휴가제도(현재의 출산전후휴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50) 2024년의 경우 4,000억원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주1)	육아휴직 급여 등주2)		
2001	8,821	0.07	-	0.02	0.05	150	2142.9
2002	9,130	257	2.8	226	31	150	58.4
2003	11,375	441	3.9	335	106	-	-
2004	15,844	624	3.9	416	208	20	3.2
2005	19,054	743	3.9	460	282	20	2.7
2006	22,842	1,254	5.5	909	345	100	8.0
2007	27,132	1,934	7.1	1,324	610	100	5.2
2008	32,290	2,651	8.2	1,666	984	100	3.8
2009	45,294	3,182	7.0	1,785	1,397	100	3.1
2010	41,585	3,707	8.9	1,926	1,781	100	2.7
2011	41,876	5,092	12.2	2,329	2,763	100	2.0
2012	43,860	6,004	13.7	2,419	3,585	150	2.5
2013	46,057	6,569	14.3	2,351	4,218	250	3.8
2014	49,639	7,401	14.9	2,368	5,032	350	4.7
2015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	98,558	13,500	15.1	2,700	10,800	1,400	10.4
2020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021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	143,307	22,687	15.8	3,342	19,344	3,000	13.2

* 주1)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주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육아휴직 급여 등은 노사가 분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실업급여 보험료)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급여 상향 지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였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확대 및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51)]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의 적정한 지출 규모를 검토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51)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 가산하여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가산 수준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연장),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029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031호)을 2023년 10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정부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024년 5월 2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음.

(6) 고용창출장려금(고용보험기금, 1046-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창출장려금**’ 사업(2017년~, 직접)은 취업취약계층 고용, 청년 고용, 장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 총 5종의 장려금을 편성하였으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경우 2022년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 사업비가 편성·지원되었으며,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의 경우 2024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23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일자리 함께하기 <2024년 사업종료>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2년)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2024년 사업종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써 실업자 신규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중년 적합직무 <2024년 사업종료>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960만원 지원(최대 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022년 사업종료>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신규고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00만원 지원(기업당 3명 한도)

동 사업은 2023년 계획현액 1,394억 700만원 중 1,035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집행률 74.3%) 358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창출장려금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수정(A)						
□ 고용창출장려금	139,504	139,407	-	139,407	103,562	-	35,845	48,277
▪ 고용촉진장려금	64,801	64,801	-	64,801	43,477	-	21,324	38,148
▪ 일자리 함께하기	12,821	10,321	-	10,321	4,474	-	5,847	1,809
▪ 국내복귀기업 지원	1,164	3,664	-	3,664	3,441	-	223	1,213
▪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20,668	31,668	-	31,668	28,890	-	2,778	7,106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40,050	28,953	-	28,953	23,280	-	5,673	-
▪ 고용장려금(융자)	-	-	-	-	-	-	-	1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의 타 장려금과의 차별화 및 집행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5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52)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섬 지역 거주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60만원을 1년간[54]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

고용촉진장려금의 2023년 예산액(일반수용비를 제외한 보험금 예산 기준)은 647억 7,100만원이었으며, 이 중 67.1%인 43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17년 2,432억 5,2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403억 8,700만원이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55]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에 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삭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54)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

55)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그 세부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

한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한 결과 2021년 4,817억 200만원, 2022년 1,256억 6,900만원 등 집행액이 증가되었음. 그러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2021년 말까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면서 2023년에는 집행액이 다시 434억 4,8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임.

[고용촉진장려금의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현액[1)]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2015	66,522	148,425	143,422	96.6
2016	101,327	186,293	186,219	99.9
2017	147,818	223,942	243,252	108.6
2018	124,502	132,634	90,302	68.1
2019	113,503	88,088	40,387	45.8
2020	49,244	275,704	80,329	29.1
2021	94,220	516,210	481,702	93.3
2022	125,954	125,954	125,669	99.8
2023	64,771	64,771	43,448	67.1

* '15~'17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폭증으로 증액 ('15, '17년 추경, '16년 자체변경)
'18년: 고용위기지역 퇴직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을 위해 증액(추경)
'19년: 고용유지지원금 수요 증가에 따라 고촉장려금 불용예상액 감액(자체변경)
'20년~'22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대책(특고촉)시행으로 증액(추경)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별 지급인원을 살펴보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전의 경우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취업지

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시행기간별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른다.

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2월 1일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과 채용일 전까지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

원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었고 그 인원도 2019년을 제외하면 약 20,000명 이상 수준이었음. 그러나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특성에 기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은 대부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집중되어 지원되었으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어들었음.

그리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지원은 2023년 기준 5,836명으로 2022년 2,31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임.

[고용촉진장려금의 연도별 · 지원대상별 지원 인원]

(단위: 명)

구 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대상자	계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섬 지역 거주자		
2015	32,860	322	194	6	-	**33,382**
2016	44,343	242	387	10	-	**44,982**
2017	50,903	227	420	23	-	**51,573**
2018	19,358	134	292	8	-	**19,792**
2019	7,959	91	244	3	-	**8,297**
2020	6,281	82	193	6	13,163	**19,725**
2021	3,097	49	136	3	94,785	**98,070**
2022	2,310	70	145	1	29,767	**32,293**
2023	5,836	82	248	14	3,625	**9,805**

*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인원 감소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및 인건비·물가인상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유사한 내용의 취업 지원 관련 장려금 제도의 중복 시행을 들 수 있겠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중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그리고 2017년은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어 신규 실시된 해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연간 약 20만명 이상 인원의 고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후[56]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유사한 내용[57]의 장려금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2021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58]되었고, 2022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시행되고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59]이 취업애로청

56) 2017년 292명, 2018년 128,275명, 2019년 229,306명, 2020년 243,869명, 2021년 241,818명, 2022년 72,900명,

57) 지원액은 동일하나 지원기간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최대 3년 대비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고, 지원요건 중 청년 채용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해야한다는 요건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비 추가되었음.

58) 2021년 31,402명, 2022년 54,805명 지원

5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50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년[60]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임.

고용촉진장려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실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채용할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만 15세~34세)이라는 연령 조건이 있고 지원 대상 사업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는 점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가 더 좁은 측면이 있음.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 ① 구직등록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구직등록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 대규모 기업 포함)	5인 이상[2]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지원수준	①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60만원 ② 1년 지원[1]	①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지원 ②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023년 지원인원	9,805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625명 포함)	8.3만명 (2023년 채용 지원 인원)
2023년 지원금액	434억원	7,001억원

*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
주 2)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자료: 고용노동부

60)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그러나 2022년 기준 신규등록취업자 중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3.5%[61]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62]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두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청년'을 신규 고용한다는 조건 하에 두 제도를 비교하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선결조건으로서 지원 요건이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근로자 1인당 지원액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높게 책정[63]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 대상 사업주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61) 2022년 신규 등록취업자 3,006,909명 중 1,307,394명이 19~34세의 청년층이었음.(통계청 생애단계별행정통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62) <연도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장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인 미만	6,470	23,543	9,753	3,155
5인 이상 10인 미만	3,380	11,338	4,685	1,525
10인 이상 30인 미만	3,579	11,468	4,780	1,950
30인 이상 100인 미만	1,488	4,542	1,816	88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27	818	329	163
300인 이상 500인 미만	31	61	18	25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23	25	9	4
1000인 이상	3	7	3	6
계	15,301	51,802	21,393	7,710

* 자료 : 고용노동부

63)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고용촉진장려금이 최대 720만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은 최대 1,440만원)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1,200만원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제도 하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즉, 고용촉진의 대상 중 '청년'의 경우 타 제도를 통한 지원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음.[64]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장려금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4)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고용보험법」 제23조 또한 고용촉진의 대상을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통합고용정책국 · 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2015년~, 출연·보조)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에 대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06억 6,700만원으로, 이 중 405억 6,300만원(99.8%)이 집행되었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40,667	40,667	-	-	40,667	40,563	-	104	83,147
▪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40,330	40,330	-	-	40,330	40,272	-	58	82,801
▪ 2030자문단운영	67	67	-	-	67	67	-	-	67
▪ 운영비	270	270	-	-	270	224		46	279

* 자료: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및 지역청년 참여율 제고 필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03억 3,000만원으로, 이 중 402억 7,2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0,330	-	-	40,330	40,272	-	58	82,80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1,759	-	-	31,759	31,703	-	56	-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8,571	-	-	8,571	8,569	-	2	-

* 자료: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현재 전국 99개교('23년 기준)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거점형 49개교는 대학 특성, 지역 특성, 채용·산업

변화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자율적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전국 지역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6(12)	2(2)	17(10)	4(2)	10(2)	2(1)	5(2)	3(2)	14(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계**
4(3)	4(1)	5(2)	1(1)	4(3)	1	5	2(1)	99(49)

* 괄호안은 거점형 수

** 자료: 고용노동부

[거점형과 일반형의 차이]

구분	거점형	일반형
신청기준	재적생 7천명 이상	재적생 1천명 이상
지원예산	국비 4.5억원	국비 2억원
프로그램상 차이	ㅇ**거점형 특화프로그램*운영 의무** *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 특성, 지역 특성, 채용·산업 변화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별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예시=원광대) 전북 익산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식품 분야 전문가 양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무교육 후 채용 매칭 서비스 제공 - 총 사업비 중 7천만원 이상 사용 - 수혜자 중 지역청년 비율이 50% 이상(또는 지역청년 200명 이상 참여) 필수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상별 참여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참여인원 대비 졸업생 및 지역청년의 참여율은 각각 3.5%, 8.3%로 매우 저조했으며, 기업발굴·매칭의

경우는 졸업생 19.9%, 지역청년 37.5%의 참여율로 해당 대학 재학생 대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상별 참여 인원]

구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	졸업생 (비율)	지역청년 (비율)	기업 발굴·매칭 (명)	졸업생 (비율)	지역청년 (비율)
합계	1,311,034	45,837 (3.5%)	108,499 (8.3%)	93,387	18,543 (19.9%)	35,042 (37.5%)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이 지역청년에 참여 제한을 두진 않으나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높고, 졸업생 및 지역청년은 해당 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센터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대상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원대상	재학생 (비율)	졸업생 (비율)	지역청년 (비율)
취업지원 프로그램(종)	1,156,698 (88.2%)	45,837 (3.5%)	108,499 (8.3%)

그러나 동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을 포함하여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의 혜택이 해당 대학 재학생에게로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한편,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총사업비(7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이상을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청년 참여율이 50%이상 또는 지역청년 참여자가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런데 2023년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거점형인 49개교 모두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중 13개교(26.5%)는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총 참여인원 중 지역청년 참여비율이, 필수 요건인 200명은 웃돌지만,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지역청년 참여 현황]

지역청년 참여율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비율)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50% 이상	36개교 (73.5%)
	50% 미만	13개교 (26.5%)
합계		49

거점형 센터는 일반형 대비 지원예산이 더 크고 지역 청년의 참여

를 보장하기 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 청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일부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청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화프로그램이 센터별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지역 청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일반회계, 1037-31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사업(2011년~, 출연)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성장지원·인식개선 등의 사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65]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2억 5,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69,259	69,259	-	-	-	69,259	69,259	-	-	32,990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41,192	41,192	-	-	-	41,192	41,192	-	-	5,826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058	4,058	-	-	-	4,058	4,058	-	-	4,721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8,817	8,817	-	-	-	8,817	8,817	-	-	5,938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6,601	6,601	-	-	-	6,601	6,601	-	-	640
▪ 운영비	9,082	9,082	-	-	-	9,082	9,082	-	-	16,745

* 자료: 고용노동부

65) 2010. 12. 설립되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운영 및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인증지원, 인식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9억 3,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41,192	41,192	-	-	-	41,192	41,192	-	-	5,826
-사회적기업가 육성	28,936	28,936	-	-	-	28,936	28,936	-	-	1,05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는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1년 동안 창업준비공간, 창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마련	⇒	위탁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	창업팀 모집·심사	⇒	창업팀 최종선정	⇒	창업활동 지원	⇒	평가 및 사후관리
진흥원		진흥원		위탁운영기관		진흥원		진흥원, 위탁운영기관		진흥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육성팀이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 없음
수 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해당 없음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재편집한 것임

한편, 동 사업의 2023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820개소 중 762개소가 창업에 성공하여 높은 창업 성공률(92.9%)을 보임.

[2023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구분	육성팀(A)	창업성공팀(B)	창업성공률(B/A)
2023년	820개소	762개소	92.9%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최근 5년간 창업성공팀의 사회적 기업 진입 실적을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은 평균 55.7%,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평균 7.4%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단위: 개, 2023년 12월말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성팀 목표 수		800	900	850	900	800
육성팀 수(A)		806	910	855	895	820
창업성공팀 수(B) (창업성공비율(B/A))		789	887	825	861	762
		97.9%	97.5%	96.5%	96.2%	92.9%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누적)(C)		551	581	421	411	338
	진입률(C/B)	69.8%	65.5%	51.0%	47.7%	44.4%
사회적기업 진입(누적)(D)		160	114	28	2	0
	진입률(D/B)	20.3%	12.9%	3.4%	0.2%	0.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창업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바, 창업성공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낮은 진입률은 과거 결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팀 및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중간평가 결과를 통한 창업팀 지원금 차등 지원 및 육성팀 수에 비례한 기관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져왔으나,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사회적기업가 육성팀 및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성팀	806팀	910팀	855팀	895팀	820팀
초기 창업팀	1~5천만원 (차등지급)	1~5천만원 (차등지급)	1~5천만원 (차등지급)	1.5~5천만원 (차등지급)	1.5~5천만원 (차등지급)
예비 창업팀	-	-	7백만원	7백만원	7백만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창업팀 지원비)** 사업모델 개발, 재료비, 홍보 및 마케팅, 교육·멘토링 등 창업에 소용되는 비용 ○**(기관운영비)** 인건비, 창업팀 선정 및 관리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육성팀 수 비례				

* (창업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자금 차등 지원

한편, 2024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신규지원은 중단되었고, 정부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민간 구매 촉진 등 판로개척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 사회적기업 지원	69,259	32,990	△36,269	△52.4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41,192	5,826	△35,366	△85.9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8,936	1,056	△27,880	△96.4
- 성장지원센터 운영	10,081	4,370	△5,711	△56.7
- 소셜벤처 지원	618	0	△618	△100.0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1,557	400	△1,157	△74.3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058	4,721	663	16.3
-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지원	2,310	1,738	△572	△24.8
- 사회적기업 박람회	153	0	△153	△100.0
- 공공구매 활성화	295	201	△94	△31.9
- 판로지원 인프라 확대	1,300	2,782	1,482	114.0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8,817	5,938	△2,879	△32.7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3,548	1,568	△1,980	△55.8
- 지원기관 운영	4,222	0	△4,222	△100.0
- 인증지원	102	606	504	494.1
- 사회적기업 협력체계구축	845	0	△845	△100.0
- 사회적 금융기반조성	100	100	0	0.0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재편	3,254	△1,231	△27.4
- 평가 및 모니터링	재편	410	△573	△58.3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6,601	640	△5,961	△90.3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684	300	△384	△56.1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153	100	△53	△34.6
- 국제협력	296	240	△56	△18.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485	재편	재편	재편
- 평가 및 모니터링	983	재편	재편	재편
▪ 운영비	9,082	16,745	7,663	84.4
▪ 결산상 잉여금	△491	△880	△389	79.2

그런데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을 보면, 신규 인증기업은 2021년도 이래 감소하는 반면, 인증취소 및 반납 기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

연도	전년도 말 인증기업	신규 인증	취소	반납
2019	2,122	392	51	27
2020	2,435	429	54	36
2021	2,777	500	53	21
2022	3,215	428	68	44
2023	3,534	371	127	30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계속 장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동판매장 서울,경기지역 편중 해소 및 판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의 내내역사업인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홈쇼핑 방송지원이나 온라인 유통채널 기획전 운영, 전국 92개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3억 1,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058	4,058	-	-	-	4,058	4,058	-	-	4,721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2,310	2,310	-	-	-	2,310	2,310	-	-	1,738

* 자료: 고용노동부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중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운영 지원 사업은 전국에 분포한 92개 공동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매장관리, 판촉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및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목적으로 함.

공동판매장은 진흥원의 협력매장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MOU체결, 3년 갱신), 공동판매장으로 선정된 매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됨.

[2023년 공동판매장 예산집행 내역]

구분	주요내용	금액(백만원)
2023년 스토어 36.5 브랜드 활성화 지원 용역	매장관리,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수요맞춤형 판촉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629
기타운영비	용역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유통전문인력 인건비 등	111
합 계		740

2023년 12월 기준 총 494개의 기업이 입점해 있고, 3,604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누계 판매액은 592억 6,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판매액	119	1,125	2,056	2,349	2,820	4,636	5,627	7,041	8,550	8,829	7,861	8,254	59,267

한편, 공동판매장의 지역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92개 매장 중 78개의 매장이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66] 연간 매출액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조한 지역은 연간매출액이 3백만원에 불과하였음.

66) 고용노동부는 공동판매장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기존 생협, 두레, 한 살림 등 운영이 활성화된 협동조합 매장 내에 임대매장으로 운영 중으로, 이들 협동조합 매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공동판매장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2023년 공동판매장 지역별 운영 현황(12월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광주	전북	부산	경남	제주	계
매장수	37	41	1	3	1	1	3	1	1	1	1	1	92
매출액	2,600	4,704	49	152	31	3	149	175	162	110	108	11	8,254

공동판매장 운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홍보 기능이 지역적으로 제한되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공동판매장은 해당지역의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를 선호[67]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공동판매장 개소수가 적은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동판매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품 홍보의 수혜가 전 지역에 균등하게 미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공동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67) 일반적으로 공동판매장(생협 등)은 자체 판매정책에 따른 입점업체 선정위원회 운영

(3) 한국잡월드운영지원(일반회계, 1049-3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2012년~, 출연)은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직업탐색, 직업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3억 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21,330	21,330	-	-	21,330	21,330	-	-	23,019

*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68]에 설립근거를 둔 기타 공공기관이자 2012년 5월에 개관한 종합직업체험시설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으로 구성(메카이브[69], 진로설계관, 어린이

68)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9) ‘직업세계관’에서 ‘메카이브’(’22.6.10.)로 시설 리뉴얼

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숙련기술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동시체험인원 규모는 1,690명(어린이 538명, 청소년 482명, 숙련 120명, 진로설계 210명, 메카이브 340명)임.

[한국잡월드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설립기간		2005년 2월 ~ 2012년 2월(7년)		
사업규모		대지면적 80,000㎡ 연면적 45,676㎡ (본관) 39,270㎡ - 지상 5층, 지하 1층 (별관) 6,406㎡ - 지상 3층, 지하 1층		
총사업비 (억 원)		총 1,996	공사비 1,412	건축 813, 전시체험시설 599
			토지매입비 474	당시 공시지가 520
			부대경비 110	설계 54, 감리 50, 기타 6
주요시설	메카이브	전 연령층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만들기체험관		
	진로설계관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 탐색, 진로상담(3개존, 17개 코너)		
	어린이체험관	사회 속 다양한 직업을 흥미롭게 체험하는 직업테마 공간 (체험실 42개, 직업 54종)		
	청소년체험관	역할극을 통한 직업체험(체험실 46개, 직업 75종)		
	숙련기술체험관	3개 분야(전통, 기초, 첨단) 10개 기술체험실		

* 자료: 한국잡월드

<사고이월을 통한 사업수행 개선 필요>

한국잡월드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동 기관의 예산은 전시체험관 입장료와 광고수익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과 한국잡월드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은 330억 2,200만원, 결산액은 341억 600만원으로 도달비율은 103.3%임.

[한국잡월드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항 목	23당초 예산(A)	23예산 현액(B)	23결산 (C)	비율 (C/B)	항 목	23당초 예산(A)	23예산 현액(B)	23결산 (C)	비율 (C/B)
합 계	33,022	33,022	34,106	103.3	합 계	33,022	33,022	34,106	103.3
한국잡월드운영지원	33,022	33,022	34,106	103.3	한국잡월드운영지원	33,022	33,022	34,106	103.3
▪출연금(일반회계)	21,330	21,330	21,330	100.0	▪사업비	25,736	25,736	24,861	96.6
▪자체수입	9,895	9,895	9,673	97.8	-전시체험콘텐츠개발	1,558	1,585	1,641	103.5
-입장수입	6,076	6,076	5,020	82.6	-전시체험관운영	18,179	17,796	17,151	96.4
-광고수입	2,226	2,226	1,995	89.6	-숙련기술체험관	3,664	3,664	3,469	94.7
-부대수입	1,593	1,593	2,658	166.8	-매점위탁운영관리사업	1,164	1,164	1,128	96.9
▪이월수입(전기)	1,797	1,797	3,103	172.7	-정보화시스템운영	551	553	530	95.9
					-기타사업운영비	620	975	942	96.6
					▪기관운영비	2,882	2,882	2,608	90.5
					▪인건비	4,404	4,404	4,404	100
					▪결산잉여금(차기)			2,233	

* 자료: 한국잡월드

한편, 한국잡월드는 2022년 이월사업비(사고이월) 14억 3,80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전년도 연말에 계약하거나 계약자체가 2023년도에 이루어지는 등 사고이월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런데 잡월드는 2023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보용역, 시설유지보수, 물품구매까지 사고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일부 홍보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약하는 등 정부회계연도[70]와 다르게 운영하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한국잡월드 2022년 사고이월액 집행내역(일부 발췌)]

사업명	사업기간	이월사유	사고이월액	지급금액	잔액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서비스)용역	'22.12.08.~ '23.12.07.	연도 내 계약 체결	6,700,000	6,700,000	-
홍보인쇄물 제작	'22.12.12.~ '23.11.30.	연도 내 계약 체결	13,475,000	13,475,000	-
22-23 웹진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추진	'22.5.6.~ '23.6.30.	연도 내 계약 체결	9,130,000	9,130,000	-
22-23 웹진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추진	'22.5.6.~ '23.6.30.	연도 내 계약 체결	11,979,000	11,814,000	165,000
2023년 온라인 연간 광고 사업	'22.12.1.~ '23.11.30	연도 내 계약 체결	49,500,000	49,500,000	-
2022년 온라인홍보 매체운영 용역사업	'22.8.17.~ '23.8.16.	연도 내 계약 체결	11,000,000	11,000,000	-
숙련기술체험관 운영물품 연간단가계약	'22.12.16.~ '23.12.31.	연도 내 계약 체결	88,411,140	88,411,140	-
1. 숙련기술체험관 식품류 연간 구매	'22.12.9.~ '23.12.31.	연도 내 계약 체결	7,585,490	7,415,100	170,390
2022년 숙련기술체험관 세탁용역(단가)	'23.1.1.~ '23.12.31.	미집행금액 이월	14,867,000	14,867,000	-
2022 웹진 제작 용역	'22.5.6.~ '23.6.30.	연도 내 계약 체결	79,200,000	62,800,000	16,400,000

* 자료: 한국잡월드 제출 자료 재구성

70)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이에 대해 한국잡월드는 수지차보전 기관의 특성상 그 해 자체수입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정부회계연도와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잡월드의 2023년 지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실집행률은 89.8%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22억 3,300만원의 차년도 사고이월액이 재차 발생하는 등 지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임. 향후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은 그 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을 통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잡월드 2023년 지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명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결산	전년도이월액 제외		이월액	집행 잔액	실집행률 (C/A)
					예산현액	집행액 (C)			
○한국잡월드운영	33,022	1,438	34,460	31,001	33,022	29,640	2,233	1,226	89.8%
Ⅰ. 인건비	4,404	-	4,404	4,404	4,404	4,404	-	-	100%
Ⅱ. 사업비	25,736	1,288	27,024	23,938	25,736	22,711	2,149	936	88.6%
Ⅲ. 기관운영비	2,882	150	3,032	2,658	2,882	2,525	83	290	87.6%

* 자료: 한국잡월드 제출 자료 재구성

(4)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051-30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해외취업지원**' 사업(1998년~, 출연·보조)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 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67억 8,600만원으로, 이 중 467억 4,2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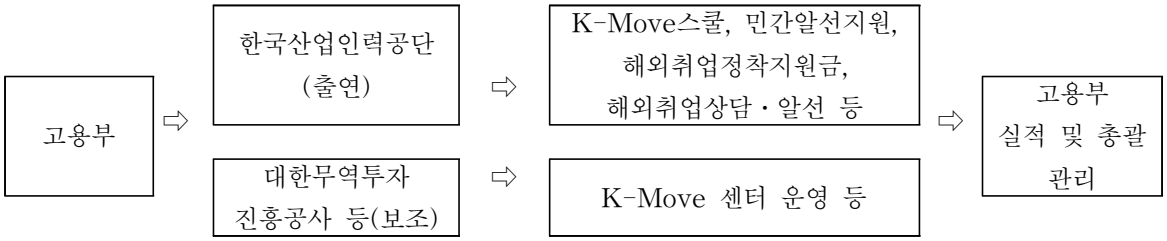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해외취업지원	46,786	46,786	-	-	46,786	46,742	-	44	57,540
▪ K-Move 스쿨	20,075	20,075	-	-	20,075	20,075	-	-	32,405
▪ 민간해외 취업알선	1,400	1,400	-	-	1,400	1,400	-	-	-
▪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6,409	16,409	-	-	16,409	16,409	-	-	16,727
▪ 해외통합 정보망	769	769	-	-	769	769	-	-	911
▪ 국내해외 취업지원	1,762	1,762	-	-	1,762	1,762	-	-	1,484
▪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지원	4,950	4,950	-	-	4,950	4,950	-	-	4,650
▪ 운영비	1,421	1,421	-	-	1,421	1,377	-	44	1,363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K-Move스쿨 운영과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추진체계와 각 내역사업별 구

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취업지원 사업추진체계]



[2023년 해외취업지원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K-Move 스쿨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 후 해외취업 연계 - (지원액) 1인당 최대 (트랙Ⅰ) 800 (트랙Ⅱ) 1,350 (대학연합) 1,200 - (지원규모) 2,100명
해외통합 정보망	○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www.worldjob.or.kr)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③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 등록한 자, ④ 연봉 1,700만원 이상 취업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규모) 3,800명 (단위: 만원) 1차 / 2차 / 3차 / 계 지원액: 250 / 100 / 150 / 500
국내해외취업지원 (서울, 부산 운영)	○ 온·오프라인 상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국가별 현지 트렌드 및 유망 직종 등을 반영한 해외취업 컨설팅 실시
해외취업촉진 인프라 지원	○ 코트라 무역관 등에 설치된 해외 K-Move센터를 활용하고 취업유망지역의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해외취업 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민간해외 취업알선	○ 민간기관 인프라를 활용, 해외 우수 구인처 발굴과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 '24년 폐지* - (지원액) 200만원(연봉 3,000만원 ↑), 300만원(연봉 4,000만원 ↑) - (지원규모) 600명 * (연봉 3,000만원 이상) 400명, (4,000만원 이상) 200명

<K-Move스쿨 취업률 제고 및 사후관리 내실화 필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K-Move스쿨' 사업은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0억 7,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K-Move스쿨 사업 결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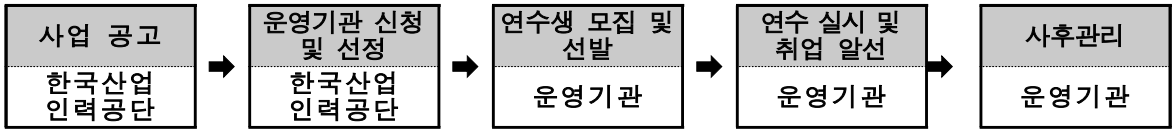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K-Move스쿨	20,075	20,075	-	-	20,075	20,075	-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수과정별(일자리 맞춤형, 자격취득 또는 훈련과정 이수형, 도제제도 연계형, 특화모델 연계형)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연수생을 모집·선발하여 연수 실시 및 취업을 알선하고 연수종료 후 18개월 시점까지 연수생 연락처 관리, 고용유지 파악, 정보제공 등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K-Move스쿨 사업 절차]



연수과정은 연수시간 및 1인당 지원금액에 따라 트랙I, 트랙II, 대학연합 유형으로 나뉘는데,

[K-Move스쿨 유형]

(단위: 개, 명)

구분	개요	지원금액	2023년 현황	
			과정수	연수인원
트랙Ⅰ	직무역량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300시간 이상 연수과정	1인당 최대 800만원	105	1,573
트랙Ⅱ	고임금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8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수과정	1인당 최대 1,350만원	23	415
대학연합 과정	기존 연수사업 참여대학과 신규 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며 운영하는 연수과정	1인당 최대 1,200만원	13	200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Move스쿨 취업률을 살펴보면, 연수유형별로 취업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20~2022년 K-MOVE 스쿨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단기	장기	트랙Ⅱ	단기	장기	트랙Ⅱ	단기	장기	트랙Ⅱ	연합
취업인원(A)	85	790	87	286	995	153	276	1,249	198	135
참여인원(B)	364	1,821	268	546	1,615	355	593	1,665	370	172
취업률(A/B)	23.4	43.3	**32.5**	52.4	61.6	**43.1**	46.5	75.0	**53.5**	78.5

주1: 대학연합과정은 2022년도부터 운영

주2: 2023년도 연수과정의 취업은 현재(8월말) 진행 중에 있음
(K-Move스쿨은 4~11개월의 장기과정으로 비자발급 및 취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정 종료 후 18개월까지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음)

주3: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각 국의 방역정책 시행에 따라 해외취업 어려움 발생, 2022년 상반기부터 해외취업 점차 회복중

특히 연수시간과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가장 크고 고임금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트랙II 과정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원인 파악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K-Move스쿨은 4~11개월의 장기과정으로 비자발급 및 취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정 종료 후 18개월까지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는바, '20년 참여자의 실제 취업 시기는 '21~'22년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취업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고, '23년 연수생의 경우 취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임.

한편, K-Move스쿨 운영기관의 실적 산정시 취업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구인업체와 1년 이상 근로계약(유급)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취업가능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업 후 동일한 해외업체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는 취업자의 안정적인 고용상태 보장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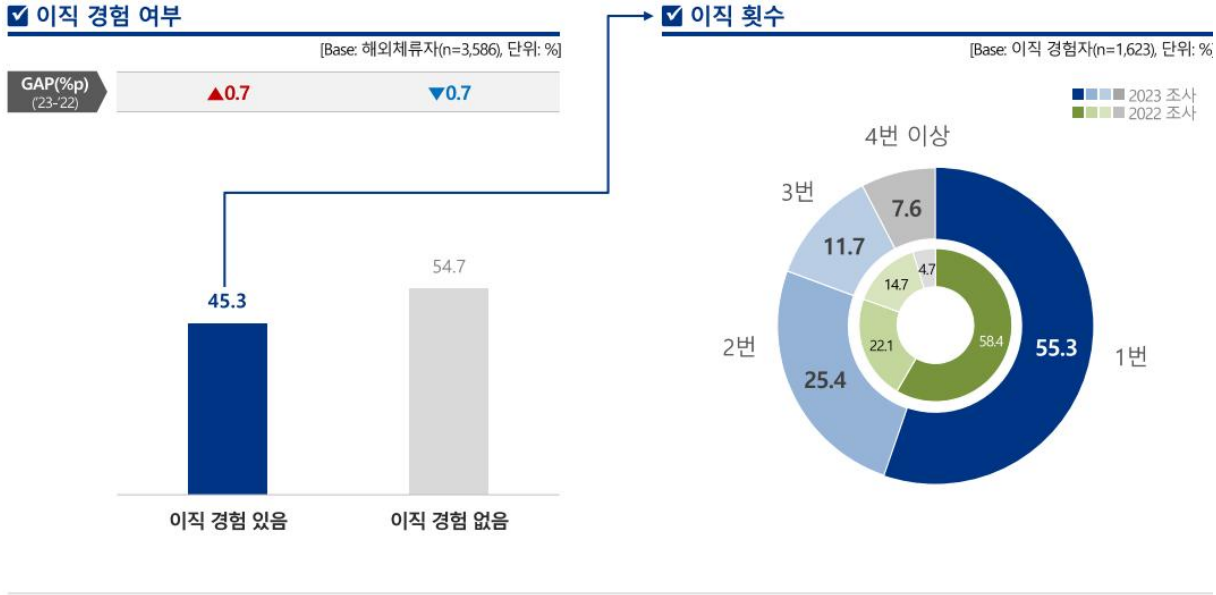
취업자의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운영기관에 연수종료 후 18개월 시점까지 수료자들에 대한 취업현황 확인, 연락처 확보, 구인기업 및 현지생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71] 의무가 부여되며,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취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71)「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지침」

야 함.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해외취업자('18~'23) 사후관리 설문조사」 최종보고서[72]를 살펴보면, 해외체류자 중 45.3%는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 주 이유는 근무환경 개선, 임금상승, 경력개발 등의 순이었음.

[해외취업자('18~'23) 사후관리 설문조사]



| 해외취업자('18~'23) 사후관리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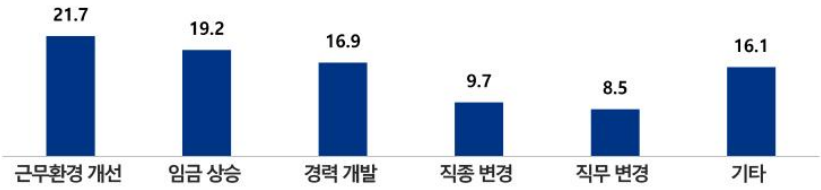
제42조(수료자 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료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종료 후 18개월 시점까지 취업현황 확인, 연락처 확보·관리, 구인기업 및 현지생활 정보제공 등 성실하게 사후관리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3.04.10. '24.03.25.>

② 운영기관의 장은 연수과정 종료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시점까지 수료자 사후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사후관리 현황은 취업지원 결과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3.26,'21.03.31, '23.04.10.,'24.03.25.>

72) 2024. 06. 26.

☑ 이직 주 이유

[Base: 이직 경험자(n=1,623), 단위: %]



2023 전체		(1,623)	21.7	19.2	16.9	9.7	8.5	16.1
해외취업 직종	사무직	(781)	20.1	16.3	15.7	11.1	10.1	18.2
	서비스/영업직	(235)	25.1	12.8	14.9	13.2	6.4	15.7
	IT	(312)	22.8	34.0	18.6	2.9	5.4	12.2
	이공계	(97)	19.6	12.4	21.6	12.4	12.4	13.4
	기타	(198)	23.7	18.7	19.2	9.6	7.6	15.7

| 해외취업자('18~'23) 사후관리 설문조사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취업자 중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상승 등을 목적으로 이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정부는 운영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6개월 단위로 취업현황 중심의 보고를 받고 있어 이직 등 취업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K-Move스쿨 운영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역할 정립 및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월드잡플러스 내 사후관리 보고서 예시]

2022년 K-MOVE 스쿨 수료자 사후관리 현황 보고

7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연수과정 수료자의 12 개월 차 사후관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서 상태 승인

연수기관 개요

연수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	작성자	연락처
대학교	226	김	유	031

연수과정 개요

연수과정명	연수기간	계사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	취업인원
7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2-05-16 ~ 2022-11-29	15	5	1	9

취업자 현황보고

해외취업인원	B.A. 취업 기업근무	1회 이직	2회 이상 이직	6개월 내 귀국	12개월 내 귀국	비고
9	6	0	0	1	0	

취업자 현재 취업상태

NO	성명	연락처	이메일	현재 취업회사				이직 횟수	현재상태	사후관리업그도	재직증명 (12개월)
				회사명	취업직종	급여	비자				
1	이		@naver.com	Modu Management Group, Inc 4405 Fruitland Ave, Vernon, CA···	회계 사무원	₩50,959,860	인턴비자	0	재직	좋음	확인
2	강		@gmail.com	Parati USA Inc, 1018 Wilt Avenue, Ridgefield, ···	무역 사무원	₩45,595,656	인턴비자	0	6개월내 귀국	좋음	확인
3	문		naver.com	KCC Trandport Systems, Inc (U.) 2475 TOUHY AVE STE 300, ELK···	무역 사무원	₩40,515,600	인턴비자	0	기타	좋음	확인
8	김		5@naver.com	Auberge du Soleil 180 Rutherford Hill RD, Rutherf···	그외 주방장 및 조리사	₩42,913,560	인턴비자	0	재직	좋음	확인
9	박		@naver.com	Doubletree Hotel Fort Lee 2117 ROUTE 4 FORT LEE, NJ 07···	호텔 서비스원	₩34,867,272	인턴비자	0	재직	좋음	확인

미취업자 지원현황

NO	성명	연락처	이메일	지원내역	사후관리상담	현재상태	사후관리업그도
1	신		3@naver.com	국내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관과 함께 국내취업 지원	국내 취업 준비 중	자격증 시험공부 중	좋음
2	김		@gmail.com	국내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관과 함께 국내취업 지원	국내취업 고려 중	5월 초 결혼	좋음

사후관리 및 주요성과(서술형 입력)

○커뮤니티 구축현황 및 간담회
- 2022년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생활 확인
-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을 통해 상담.

○기타 취업 우수사례

- 미국 현지 장기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활성.
- 연수 중 선배 연수생들과 전화 연결 및 방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생활 및 취업의 어려움을 놀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짐.

2023 년 11 월 21 일

대학교기관 대표자 (인)

(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2006년~, 직접·출연·보조)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의 청년층에 대하여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62억 9,300만원으로, 이 중 1,172억 8,000만원이 집행(92.9%)되었고, 9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0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126,293	126,293	-	-	126,293	117,280	939	8,074	244,113
▪ 청년일경험지원	55,330	55,330	-	-	55,330	52,426	939	1,965	171,820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790	790	-	-	790	790	-	-	690
▪ 청년친화형기업 ESG지원	25,100	25,100	-	-	25,100	25,084	-	16	-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3,771	3,771	-	-	3,771	3,771	-	-	세부사업 변경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33	133	-	-	133	130	-	3	
▪ 청년도전지원사업	40,780	40,780	-	-	40,780	34,858	-	5,922	70,933
▪ 운영비	389	389	-	-	389	221	-	168	670

*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실적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율 높일 필요>

내역사업 중 '청년도전지원' 사업(2021년~)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07억 8,000만원으로, 이 중 348억 5,800만원(집행률 85.5%)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도전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도전지원사업	40,780	40,780	-	-	40,780	34,858	-	5,92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지방비 20%매칭[73]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참여지자체는 구직단념청년 등[74]을 발굴·모집하여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수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등 타사업

73) 지방비 매칭: (도전) 사업비의 20%, (도전+) 1인당 50만원

74)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30점 만점)인 청년(만 18~34세) 등을 말함.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 이상 보호받고 있거나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으로의 연계를 지원함. 2023년에는 총 49개 지방자치단체(광역13, 기초36)가 참여하였음.

맞춤형 프로그램은 운영기간에 따라 도전(5주 이상), 도전+유형Ⅰ(15주 이상), 도전+유형Ⅱ(5개월 이상)로 나뉘는데, 참여청년과 운영기관에는 참여수당 및 사업비가 지급되고, 도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등 성과연계 시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됨.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 사업 프로그램별 사업 내용]

2023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유형Ⅰ	유형Ⅱ
운영기간			최소 5주 이상	최소 15주 이상	5개월 이상
지원 내용	참여 청년	참여수당	▸ 이수시 50만원	▸ 150만원(50만원×3회)	▸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50만원
	운영 기관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 (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 (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 이수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시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시 25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1년 추경사업으로 신설되어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확대되어 왔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시행 이래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고, 지원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참여인원은 목표인원 대비 적은 상황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 실적(2021~2023)]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 산			인 원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목표인원	참여인원	지원인원 (이수인원)	목표인원 대비 지원율
2021	6,460	3,773	58.4	5,000	3,287	2,764	55.3
2022	7,580	5,849	77.2	7,000	5,795	4,929	70.4
2023	40,780	30,311	74.3	8,000	6,775	6,389	79.9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에는 사업예산 및 목표인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실집행률은 74.3%로 저조하였고, 3년 연속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는 사업목표 인원이 전년 대비 더욱 증가(8,000명→9,000명[75])하였는바,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76]

한편, 동 사업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인원 대비 이수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등에

75) ▲(도전) 2,000명 ▲(도전+ 유형Ⅰ) 4,000명 ▲(도전+ 유형Ⅱ) 3,000명

76)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3년 참여 지자체 수는 49개로 전년('22년 28개)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자체가 신청한 지원인원이 목표 대비 부족하였고, 참여인원의 중도탈락(11%) 발생으로 인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미지급 등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참여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는 의견임.

* 참여 자치단체 : ('21) 14개 → ('22) 28개 → **('23) 49개(광역13+기초36) → ('24) 72개**

긍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율은 취업 연계율 31.7%,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율 12.9% 등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도전지원 사업 사후관리 현황(2021~2023)]

(단위: 명, 개)

사업연도	자치단체		프로그램 참여자				사후관리			
	목표인원	개수	신청인원	참여인원	이수인원	중도탈락	취업	직업훈련	국취연계	고용촉진장려금 등
2021	5,000	14	4,663	3,287	2,764 (84.1%)	523 (15.9%)	714 (21.7%)	69 (2.1%)	1,028 (31.3%)	50 (1.5%)
2022	7,000	28	7,927	5,795	4,929 (85.1%)	866 (14.9%)	1,354 (23.4%)	681 (11.8%)	1,531 (26.4%)	90 (1.6%)
2023	8,000	49	13,943	7,147	6,389 (89.4%)	758 (10.6%)	2,266 (31.7%)	839 (11.7%)	923 (12.9%)	3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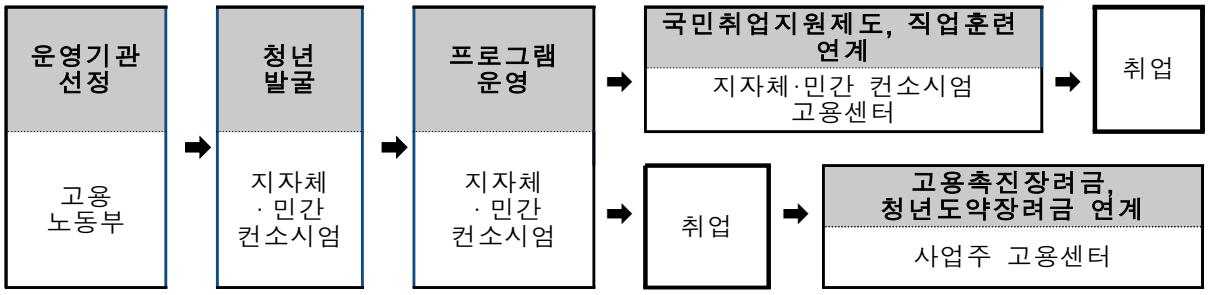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프로그램 이수를 독려하여 취업 등으로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여지는바,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등으로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청년도전지원사업 : 연내 사업수행 완료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진행절차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운영기관이 청년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청년도전지원 사업수행절차]



2023년에는 총 3차례(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운영기관 선정이 이루어졌음.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구분	공모일자	선정일자	참여지자체 수
1차	'22.12.13	'23. 1.16	35개
2차	'23. 1.16	'23. 2.27	13개
3차	'23. 3.15	-	-
4차	'23. 7. 8	'23. 9. 8	1개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의 월별 집행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집행률이 19.1%에 불과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그 결과 2023년도 사업은 차년도 2월에야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운영기관의 차년도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쳐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보임.

[청년도전지원사업 2023년 월별 집행실적]

(단위: 명)

월	신청자 (누적)	대기자 (현재)	불승인 (불승인율)(누적)	참여자 (누적)	중도 탈락자(누적)	이수자 (이수율)(누적)	실집행률
1	49	0	24 (49%)	25	5	20 (80%)	-
2	2,930	0	1,579 (53.9%)	1,351	190	1,161 (85.9%)	0.2%
3	5,106	1,242	2,605 (51%)	2,501	344	2,157 (86.2%)	1.7%
4	6,871	338	3,436 (50%)	3,435	460	2,975 (86.6%)	5.9%
5	8,708	348	4,317 (49.6%)	4,391	543	3,848 (87.6%)	11.7%
6	10,237	378	5,021 (49%)	5,216	643	4,573 (87.7%)	19.1%
7	11,264	420	5,499 (48.8%)	5,765	688	5,077 (88.1%)	26.7%
8	11,877	0	5,814 (49%)	6,063	702	5,361 (88.4%)	37.2%
9	12,466	312	6,123 (49.1%)	6,343	719	5,624 (88.7%)	46.5%
10	13,456	356	6,520 (48.5%)	6,936	755	6,181 (89.1%)	54.6%
11	13,767	271	6,664 (48.4%)	7,103	757	6,346 (89.3%)	63.7%
12	13,938	288	6,793 (48.7%)	7,145	758	6,387 (89.4%)	71.4%
2024.1.	13,940	63	6,793 (48.7%)	7,147	758	6,389 (89.4%)	72.7%
2024.2.	13,943	0	6,796 (48.7%)	7,147	758	6,389 (89.4%)	74.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77] 보조사업의 수행기간은 정확한 사업실적 평가 및 원활한 정산 절차 등의 이행을 위해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024년도에는 전년대비 다소 늦게 1차 참여지자체 선정이 이루어진 바, 사업수행일정 자체가 늦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 집행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구분	공모일자	선정일자	참여지자체 수
1차	2023. 12. 29.	2024. 2. 8.	72개

* 자료: 고용노동부

77)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년 월별 집행 실적(6월 말 기준)]

월	신청자 (누적)	대기자 (현재)	불승인 (불승인율)(누적)	참여자 (누적)	중도 탈락자(누적)	이수자 (이수율)(누적)	실집행률
1	873	214	156 (18%)	74	0	0 (0%)	-
2	3,031	564	709 (23%)	742	12	32 (4.3%)	1.0%
3	5,518	917	1,427 (26%)	1,927	55	104 (5.4%)	4.7%
4	8,002	964	2,100 (26%)	3,328	132	208 (6.3%)	9.9%
5	10,565	1100	2,914 (27.6%)	4,839	273	435 (9%)	17.2%
6	12,467	968	3,775 30%	6,128	426	849 (13.9%)	25%

* 자료: 고용노동부

(6) 중장년층취업지원(일반회계, 1340-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2006년~, 직접·보조)은 ①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에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②이들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③장년 고용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포럼을 실시하고, ④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221억 2,800만원(99.3%)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중장년층취업지원	22,281	22,281	-	-	22,281	22,128	15	138	20,052
▪ 고령자인재은행	3,522	3,522	-	-	3,522	3,404	-	118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4,154	14,154	-	-	14,154	14,154	-	-	15,737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100	100	-	-	100	100	-	-	80
▪ 장년고용연구지원	100	100	-	-	100	65	15	20	-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405	4,405	-	-	4,405	4,405	-	-	4,235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78]에 따라 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79]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80].

구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에게 해당 업종·사업 등에 적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주요 직종·업종별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및 기업담당자 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됨.

2023년에는 사업의 주요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기업 중심에서 300~999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며,[81] 기업컨설팅 기(旣)지원 300~999인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음.

---

7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79)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80)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한 후 노사발전재단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2021년의 경우 11개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행기관들이 내부 컨설컨트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진행함.

81) 사업대상 : 2021년 900인 이상, 2022년 300인 이상

주요 항목	주요 변경 및 신설 과제	
	2022년 (예산: 4,405백만원)	2023년 (예산: 4,405백만원)
기업 컨설팅 지원	• 목표: 450개소(실적: 420개소) • 대상: 1,000인 이상 의무기업 중심 ※ 정부부처(8), 지자체(48), 교육청(4) 지원	• 목표: 400개소 • 대상: 300인 이상 중소기업 중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제외 ※ 비영리기관: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별도 제공[신설]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신설]	-	• 대상: 기업컨설팅 기(旣)지원 300~999인 사업장 ※ 예산: 500백만원(100개사, 1천명) • 내용: 재취업서비스 제공 시 1인당 50만원 내 지원 ※ 제도 도입 취업규칙 명시
서비스 모델 보급	• 내용: 서비스직 표준모델 2종 개발 등	• 내용: 사업주용 운영 가이드북 개정(125백만원)[신설] ※ 가이드북: 1만부 제작 및 배포
기업담당자 연수과정 운영	• 목표: 700명(실적: 551명) ※ 대면·비대면 혼용	• 목표: 700명 ※ 300인 이상 비의무기업 재직자 우선 ※ 연수과정 e러닝 개발[신설] 및 비대면 위주 운영
사업 홍보	-	• 내용: 정보화 운영 관리(50백만원)[신설]

* 자료: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계획, 노사발전재단

동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4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43억 3,900만원이 실집행됨.

[2023회계연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405	4,405	-	-	4,405	4,405	-	-

* 자료: 고용노동부

<컨설팅 실적 허위 보고 수행기관 제재 미약>

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운영 현황 점검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장과 수행기관 간 서면점검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기업컨설팅 미착수, 수행일지 허위작성 등으로 수행기관 2개사가 적발되었음.

노사발전재단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기존 승인요건대로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는바, 기업컨설팅 불성실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해당기업들의 불성실 수행사항으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신청한 그룹 계열사 6개소에 대한 독립적 컨설팅 미제공, 사업장 컨설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일지 및 중간보고서 허위작성 등 단순 과실이 아닌 실적을 부풀려 감독기관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바, 그 비난 정도가 커 보임.

[2023년 기업컨설팅 불성실 수행기관 적발사항]

□ **중간점검 시 적발사항**

구분	A	B
계약금액	339,000,000	340,000,000
적발 사항	○○그룹 계열사 6개소는 각 **법인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상이하고, 업종 및 사업장 담당자가 구분되어 신청한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컨설팅을 전제**로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 재단의 추가점검 시 수행기관이 6개 법인의 관리체계 분리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독립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	○○진흥원, ○○기업(주), ○○리조트(주) (3개소)는 B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후 5차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 중간 서면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이 해당 사업장컨설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일지 및 중간보고서 허위 작성 적발**
재단 조치 사항	수행기관은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재단에서는 수행기관에게 잔여 컨설팅 기간 동안 **독립적인 기업컨설팅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컨설턴트 교체 포함) 및 재발방지책 제출 후 준수하여 컨설팅하도록 조치**	수행기관은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재단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재발방지 조치(안)에 의거, **관리자급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팅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도록 컨설팅 기간 연장(~12/20) 제공 조치**, 수행기관에서는 담당자 징계 (감봉 1개월 조치)
결과	수행계획 검수 후 컨설팅 재개하였으나, **○○그룹 계열사 6개소 중 5개소가 컨설팅 신청을 취소, 남은 1개소 대상 컨설팅만 진행 완료**	컨설팅 재개 후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 **최종보고서 평가 시 적발사항**

○(적발사항) 최종보고서 평가를 통해 **B에서 사전 보고 없이 컨설팅 수행기간을 지연한 3개 사업장 추가 적발**

○(조치사항) **수행기관이 지연사유 등 제출 보고하도록 조치**

* 자료: 2023년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사업 결과 보고, 노사발전재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제12조)[82], 당해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며[83],

82)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제27조).[8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정당 기업에 대해 계약해지, 차년도 참여제한 등의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불성실 수행기관으로 적발된 2개 기업은 차년도 입찰에도 응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 예산사업은 더욱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예산이 보다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85]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생 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83)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85) 고용노동부는 ’24년 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해당업체에 최하점 부여, 2024년도 사업 수행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금년도 수행기관과의 계약 시 불성실한 과업수행에 대한 제재 강화, 수행기관 평가지표에 불성실 과업에 대한 부분 추가 반영, 수행기관에 해당 내용 재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입장임.

<재취업지원제도 도입 지원사업: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용 필요>

2023년도 신규사업인 '재취업지원제도 도입 지원' 사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사업 컨설팅 참여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지속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 사업]

❑ 참여대상: 1,000인 미만 기업(공공부문 제외)
❑ 지원내용: 퇴직예정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 참여절차

노사발전재단	①컨설팅 제공 ⇒ ②운영 실비 신청 ⇐ ⇒ ④운영 실비 지원	기업	③서비스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취업규칙 등 명시) ⇒	퇴직예정자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장 신청 저조로 전액 다른 용도로 집행되었음.[8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기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까다로운 지원 요건[87] 때문으로, 금년도에는 기업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88]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입장임.

---

86) 고용노동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역사업 내에서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내용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반영 필요

88) 지원 1년차: 취업규칙 변경 불요 / 지원 2년차: 취업규칙 변경 필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불용액 5억원 중 1억 8,499만원은 확대된 기업컨설팅 지원 물량에 사용되었고, 3억 1,500만원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제고 및 차년도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우수사례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등에 사용되었는데, 사업예산 불용액 일부를 홍보비 등 일상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변경 전 예산	변경(안)		변경 후 예산	비고
사업계획2	목	세목		증	감		
기업컨설팅 지원	운영비	일반 용역비	3,400,000	184,995	-	3,584,995	·(증)기업컨설팅 지원 (400개사→424개사)
	보전금	기타 보전금	500,000	-	500,000,	0	·(감)제도 도입 지원 (1,000명→0명)
홍보 등 운영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54,500**	**220,200**	**-**	**274,700**	**·(증)홍보매체 광고료 및 영상 송출료**
		임차료	**1,500**	**905**	**-**	**2,405**	**·(증)간담회 임차료**
		일반 용역비	**110,000**	**92,000**	**-**	**202,000**	**·(증)운영 가이드라인 발송비, 우수사례집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여비	**국내 여비**	**2,000**	**800**	**-**	**2,800**	**·(증)우수사례 취재 동행 출장비 등**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2,000**	**-**	**-**	**2,000**	
	보전금	**포상금 등**	**5,000**	**1,100**	**-**	**6,100**	**·(증)우수사례 발굴 사례비**
합 계			4,075,000	500,000	500,000	4,075,000	·총액 변동 없음

* 자료: 고용노동부

그 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에는 별도로 홍보 등 운영비가 책정되어왔는데('21년 1억원, '22년 1억 2,500만원, '23년 1억 2,500만원),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 내역	예산
기업컨설팅 지원	·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400개사×8,500,000원	3,900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500,000,000원)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가이드북 개정 및 보급(125,000,000원)	125
담당자 교육	· 기업담당자 e-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205
홍보 등 운영비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우수사례 전파(125,000,000원)**	175
	· 정보화 운영 관리(50,000,000원)	
총 사업비		4,405

* 자료: 2023년「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계획, 노사발전재단

2023년에는 신규사업인 '재취업지원제도 도입 지원' 사업비 불용액 중 3억 1,5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하여 총 4억 4,000만원을 홍보 등 운영비로 집행한 것임.

더욱이 '재취업지원제도 도입 지원' 사업비 불용액으로 집행된 홍보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홍보부문)]

계약 건명	계약금액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후관리 브로셔 제작비	2,800,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월간 지면광고 게재비	9,680,000원
TV 광고 영상 제작비	46,700,000원
TV 방송광고 송출 비용	164,000,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라디오 캠페인 소재 제작비	4,180,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라디오 캠페인 송출료	26,320,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홍보 영상 송출료	19,800,000원
지원사업장 간담회	1,005,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13,827,000원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우수사례집 제작비	10,000,000원
합 계	**298,312,000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4년차임에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현장의견 및 관련 연구에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빈번히 제시되어 제도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홍보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비 불용액을 기존 사업의 홍보비 등으로 집행한 것은 사업비를 당초 편성 목적과는 다르게 일상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따라서 정부는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인 제도 도입 지원 사업

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예산 불용액을 홍보 등 일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7) 직장어린이집지원(고용보험기금, 1345-35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1995년～, 직접·보조)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직장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111억 9,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A)						
□ 직장어린이집지원	111,195	111,195	-	111,195	111,195	-	-	112,130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8,428	18,428	-	18,428	18,428	-	-	18,583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3,354	12,165	-	12,165	12,165	-	-	14,134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75,461	76,807	-	76,807	76,807	-	-	75,461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952	3,795	-	3,795	3,795	-	-	3,952

*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사업 성격에 맞게 비목 변경 필요 등>

내역사업인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37개소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89]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84억 2,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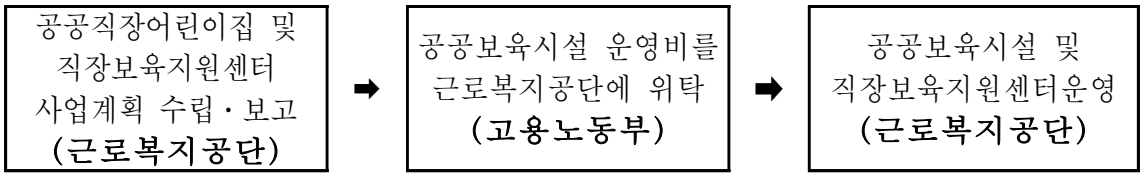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18,428	18,428	-	18,428	18,428	18,428	18,428	-	-
-일반용역비(210-14)	18,428	18,428	-	18,428	18,428	18,428	18,428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일반용역비(210-14)에 편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89)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수요조사, 시설규모 결정,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신청 안내 및 우수 보육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학부모 교육 지원 등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 지원 절차]



일반용역비는「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업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용역비(210-14)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그간 동 사업은 별도의 계약 없이 사업이 수행되어 온바, 관리·감독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과업내용이 부재하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공공복지시설 설치·운영

제1절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제44조(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성격에 맞게 비목 변경이 필요해 보임.

또한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계약 체결 및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므로[90], 위탁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책임과 의무, 과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한 지휘·감독의 책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9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2-31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취업지원' 사업(1991년~, 출연)은 공공부문 및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장애인 개별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현장 훈련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은 334억 8,800만원으로, 그 중 328억 5,900만원(98.1%)이 집행되었고 6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A)						
□ 장애인취업지원	33,488	33,488	-	33,488	32,859	-	629	34,011
▪ 고용의무이행지도	2,533	2,533	-	2,533	2,507	-	26	2,153
▪ 장애인취업알선지원	1,129	1,129	-	1,129	1,101	-	28	1,268
▪ 직업능력평가	5,900	5,900	-	5,900	5,728	-	172	5,674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5,653	15,653	-	15,653	15,385	-	268	15,097
▪ 장애인인턴제	4,590	4,590	-	4,590	4,566		24	6,558
▪ 장애학생취업지원	3,623	3,623	-	3,623	3,514		109	3,261
▪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60	60	-	60	58		2	순감

*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실적 개선 필요>

내역사업인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인인턴제' 사업은 평균 고용률 이하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6억 5,300만원으로 그 중 152억 4,300만원이 실집행되었고, 장애인인턴제 사업은 45억 9,000만원으로 그 중 45억 6,5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 장애인취업지원	33,488	33,488	-	33,488	32,859	-	629
▪중증장애인지원고용	15,653	15,653	-	15,653	15,385	-	268
▪ 장애인인턴제	4,590	4,590	-	4,590	4,566		24

* 자료: 고용노동부

각 내역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은 선발된 훈련생에 대하여 사업체에 배치한 직무지도원을 통해 사전 훈련

(6일이내) 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과 일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함.

[2023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턴제는 특정유형[91]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중점지원대상[92]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장[93]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를 지원(최대한도 월 100만원, 최대 6개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를 추가로 지원(최대한도 80만원, 최대 6개월)하고 있음.

91)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9개 장애유형
92)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93)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2023년 장애인 인턴제 지원내용]

구분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기간	인턴 약정기간(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 후 최대 6개월
수준	월 최대 1백만원(지급 임금 80%까지)	월 최대 80만원(지급 임금 80%까지)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계획 인원대비 높은 훈련 수료율을 보이고 있음.

[2023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및 장애인인턴제 사업 수료율 현황]

실적지표	'23년 사업실적		
	계획(A)	추진실적(B)	달성률(B/A)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수료인원(명)	6,000	6,598	110.0
장애인인턴제 수료인원(명)	700	870	124.3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최근 5년간 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는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23년도에는 64.7%로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9년도 취업률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또한 취업자의 최근 4년간 평균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6개월 59%, 1년 44.6%로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취업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2023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실적]

(단위: 명, %)

연도	참여 사업장	목표 인원	참여 인원	수료(A)	취업(B)	취업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2019	1,589	5,000	6,800	5,672	4,253	75	57.0	45.1
2020	1,453	5,000	6,034	5,350	3,706	69.3	57.0	42.0
2021	1,633	6,000	6,939	6,250	3,976	63.6	60.5	45.1
2022	1,679	6,000	7,069	6,406	4,026	62.8	61.8	46.1
2023	1,690	6,000	7,180	6,598	4,270	64.7	-	-

* '23년 고용유지율은 기간 미도래로 '24년 12월 말 확정

장애인인턴제 사업의 경우는 최근 4년간 정규직 전환 비율은 평균 86.7%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유지율은 2022년도의 경우 6개월 69.3%, 1년 50.6%로 저조하였고, 2019년 이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019~2023년 장애인 인턴제 사업 실적]

(단위: 명, %)

연도	목표인원	참여인원	수료(A)	정규직 전환자(B)	정규직 전환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2019	200	310	241	205	85.1	77.6	65.9
2020	400	599	477	408	85.5	77.7	59.6
2021	600	655	523	465	88.9	72.9	59.8
2022	600	925	713	622	87.2	69.3	50.6
2023	700	1,216	-	-		-	-

* '23년 수료자수, 정규직 전환자 수는 기간(최대 6개월) 미도래로 '24년 6월 말, 고용유지율은 '24년 12월 말 확정

두 사업 모두 지원대상이 취업에 있어서 더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등임을 고려하면, 지원대상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으로의 연계뿐만 아니라 연계 후 고용 유지가 필수적인 요소로 보여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침체 및 2021년 목표 물량확대[94] 등이 두 사업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의 하락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나,

취업연계율 및 고용유지율이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장애인인턴제의 경우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94)중증장애인 지원고용(5→6천명, 20%↑), 장애인인턴제(4→6백명, 50%↑)

라. 직업능력정책국

(1)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일반회계, 1133-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사업(1999년~, 직접)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과정 및 훈련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94억 6,900만원으로, 이 중 188억 2,500만원(96.7%)이 집행되었고, 6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19,469	19,469	-	-	-	19,469	18,825	-	644	18,394
▪ 훈련기관 평가	3,474	3,474	-	-	-	3,474	3,164	-	310	2,844
▪ 훈련과정 심사	4,512	4,512	-	-	-	4,512	4,488	-	24	3,500
▪ 훈련과정 평가	2,145	2,145	-	-	-	2,145	2,142	-	3	2,145
▪ 중앙부처사업 평가	324	324	-	-	-	324	227	-	97	0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지원	1,350	1,350	-	-	-	1,350	1,220	-	130	1,350
▪ 부정훈련 관리	60	60	-	-	-	60	60	-	0	60
▪ 인건비	5,431	5,431	-	-	-	5,431	5,363	-	68	5,431
▪ 용역비	2,173	2,173	-	-	-	2,173	2,161	-	12	2,164

* 자료: 고용노동부

<특정 심사평가위원으로의 쏠림 현상 방지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①'훈련기관 평가' 사업은 정부지원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건전성, 훈련성과 및 훈련실시 능력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고, ②'훈련과정 심사' 사업은 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시설·장비 등 인프라의 적정성, 교·강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업이며, ③'훈련과정 평가' 사업은 훈련과정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가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 평가계획, 훈련과정 심사계획, 훈련과정 평가계획을 공고하게 됨. 훈련기관이 해당 공고를 보고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신청하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그 결과를 발표·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됨.

훈련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또는 인증유예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되고,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됨.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1년 인증' 등급 또는 '3년 인증'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는 날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음.

또한, 훈련기관은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평가대상기관(훈련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평가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게 됨.

훈련과정 심사 결과 선정된 과정만 운영될 수 있고, 훈련과정 평가 결과는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평가는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평가는 현장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 산업현장 전문가 및 직업훈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심사평가위원 위촉)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현장 전문가, 직업훈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관련분야 산업계 전문가로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가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에서 강의, 용역, 컨설팅,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심사평가 및 훈련성과 관리 등을 위해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등을 포함한 별표1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심사평가위원은 심사평가기관이 주관하는 심사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사평가기관의 소속직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심사평가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훈련기관 평가위원은 총 466명이고, 훈련과정 심사위원은 총 793명이며, 훈련과정 평가위원은 총 429명임. 훈련기관 평가 건수, 훈련과정 심사 건수, 훈련과정 평가 건수가 각각 3,851건, 130,224건, 3,569건이므로, 1인당 훈련기관 평가 건수, 훈련과정 심사 건수, 훈련과정 평가 건수는 각각 8.3건, 164.2건, 8.3건임.

[2023년 심사평가위원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심사평가위원 수	심사·평가 건수	1인당 심사·평가 건수
훈련기관 평가	466	3,851	8.3
훈련과정 심사	793	130,224	164.2
훈련과정 평가	429	3,569	8.3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년도 심사·평가 수당 상위 5명의 심사·평가 건수를 보면, 훈련과정 평가,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과정 평가 모두 총 심사·평가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심사평가위원의 심사·평가 건수는 각각 32

건, 471건, 37건으로, 1인당 심사·평가건수인 8.3건, 164.2건, 8.3건의 4배 수준이고, 이들은 모두 최근 3년 내내 심사·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심사 · 평가 수당 상위 5명의 심사 · 평가 건수]

(단위: 건, 천원)

구분	순위	이름	직위	심사·평가 건수	총 심사·평가 수당	심사·평가 참여연도
훈련기관 평가	1	이○○	1호	32	9,280	2021, 2022, 2023
	2	동○○	2호	30	8,700	2021, 2022, 2023
	3	성○○	1호	30	8,700	2021, 2022, 2023
	4	윤○○	2호	32	7,700	2021, 2022, 2023
	5	박○○	1호	26	7,380	2021, 2022, 2023
훈련과정 심사	1	김○○	2호	471	15,694	2021, 2022, 2023
	2	김○○	1호	325	15,613	2021, 2022, 2023
	3	오○○	1호	159	15,000	2021, 2022, 2023
	4	김○○	4호	480	14,980	2021, 2022, 2023
	5	이○○	1호	424	14,394	2021, 2022, 2023
훈련과정 평가	1	김○○	3호	37	9,490	2021, 2022, 2023
	2	김○○	1호	34	8,500	2021, 2022, 2023
	3	김○○	1호	29	8,150	2021, 2022, 2023
	4	전○○	1호	25	7,360	2021, 2022, 2023
	5	권○○	1호	25	7,210	2021, 2022, 2023

* 직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 것임
** 자료: 고용노동부

특정 심사평가위원이 너무 많은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수행하면 피로도 증가 등에 따른 평가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심사평가위원이 심사·평가할 경우 반복적인 평

가로 심사·평가의 질이 저해될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정 심사평가위원에게 심사·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심사·평가위원이 심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5-30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훈련인프라 구축과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2,786억 6,100만원으로, 이 중 2,735억 2,700만원(98.6%)이 집행되었고, 39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78,661	278,661	-	△1,200	-	277,461	273,527	-	3,934	317,873
▪ 인력개발사업	107,037	107,037	-	-	-	107,037	107,005	-	32	105,725
▪ 시설확충사업	22,280	22,280	-	-	-	22,280	22,280	-	-	46,200
▪ 정보전산화	3,771	3,771	-	-	-	3,771	3,771	-	-	3,921
▪ 경상경비	145,573	145,573	-	△1,200	-	144,373	140,471	-	3,902	200,605

* 자료: 고용노동부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률 향상 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력개발사업'은 다기능기술자과정,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등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공심화과정' 사업은 학위과정인 전공심화과정에 소요되는 강의료, 실습재료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 현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이 중 13억 2,800만원(97.6%)이 실집행되었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전공심화과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인력개발사업	107,037	107,037	-	-	-	107,037	107,037 [106,781]	-	32	105,725
- 전공심화과정	1,360	1,360	-	-	-	1,360	1,328 [1,328]	-	32	1,224

* 자료: 고용노동부

전공심화과정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95] 동 과정의 훈련기간은 2년이고 과정 참여자에게는 일정 실습재료비 및 식비 등이 지급되며, 2023년 기준 수업료는 243만 2,000원임.

9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

동 내내역사업은 서울정수캠퍼스, 인천캠퍼스, 창원캠퍼스 총 3개 캠퍼스에서 전기공학, 금형공학 등 7개 학과로 운영되는데,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창원캠퍼스의 메카트로닉스학과를 제외한 3개 캠퍼스의 모든 학과에서 입학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전공심화과정 입학 인원 현황]

(단위: 명)

캠퍼스	학 과	연 도	모집 인원	입학 인원
서울정수캠퍼스	기계설계공학	2021	25	16
		2022	25	11
		2023	20	11
	전기공학	2019	25	23
		2020	25	17
		2021	25	16
		2022	25	10
		2023	20	13
인천캠퍼스	금형공학	2019	25	25
		2020	25	15
		2021	25	15
		2022	25	20
		2023	20	11
	메카트로닉스공학	2019	25	22
		2020	25	11
		2021	25	17
		2022	25	10
		2023	20	9
	자동차공학	2019	25	25
		2020	25	15
		2021	25	21
		2022	25	25
		2023	20	16
	전기공학	2019	25	25
		2020	25	12
		2021	25	16

		2022	25	15
		2023	20	11
	정보통신공학	2019	25	16
		2020	25	11
		2021	25	25
		2022	25	13
		2023	20	8
창원캠퍼스	기계공학	2019	25	23
		2020	25	13
		2021	25	18
		2022	25	14
		2023	20	20
	메카트로닉스공학	2019	25	20
		2020	25	16
		2021	25	9
		2022	25	15
		2023	20	20
	전기공학	2021	25	12
		2022	25	7
		2023	20	9

* 2023년에 개설된 학과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내역사업은 수업 참여 인원과 무관하게 운영수당(강의료 등)과 공공요금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데, 해당 비목의 지출액이 내내역사업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합이 82.6%이고, 가변비용인 실습재료비 및 급식비가 동 내내역사업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8%, 2.7%에 불과하므로 모집률(모집 인원 대비 입학 인원)이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음.

[2023년 전공심화과정 사업의 비목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원)

전공심화과정		1,360,000	100.0%
1) 공공요금	18학급*15,313,000원-4,000원=	275,630	20.3%
2) 일반수용비	18학급*5,000,000원=	90,000	6.6%
3) 급식비	1,000원*450명*51%*5일*32주=	36,720	2.7%
4) 운영수당	70,000원*840시간*18학급*80%=	846,720	62.3%
5) 실습재료비	345,000원*450명*51%=	79,178	5.8%
6) 여비	63,000원*18학급*3명*7회=	23,814	1.8%
7) 업무추진비	63,000원*18학급*7회=	7,938	0.6%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공심화과정 입학 인원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학과 개편 및 교육 체계 다변화 등 전공심화과정 모집률 상승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성화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모집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인력개발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다기능기술자’ 사업은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2년제 학위과정)’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강의료, 실습재료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 현액은 190억 8,900만원으로, 이 중 190억 5,200만원(99.8%)이 실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다기능기술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인력개발사업	107,037	107,037	-	-	-	107,037	107,005 [106,781]	-	3	105,725
- 다기능기술자	19,089	19,089	-	-	-	19,089	19,089 [19,052]	-	-	18,191

* 자료: 고용노동부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하여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으로,[96] 동 과정의 훈련기간은 2년이고 과정 참여자에게는 일정 실습재료비 및 식비 등이 지급되며, 2023년 기준 수업료는 243만 2,000원임.

동 과정은 특성화대학[97] 4개 캠퍼스를 비롯한 28개 캠퍼스에서 컴퓨터 응용기계과 등 150여개 학과로 운영되는데, 최근 5년(2019~2023년)간 항공캠퍼스 항공기계학과, 항공메카트로닉스학과, 항공전기전자정비학과 및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장비설계학과, 반도체융합SW학

9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

97) 특성화대학은 ①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 ②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③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④ 로봇캠퍼스(경북 영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캠퍼스는 각각 바이오산업, 항공산업, 반도체산업, 로봇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기능기술자(2년제 학위과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과의 입학 인원이 모집 인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항공캠퍼스 및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다기능기술자 입학 인원]

(단위: 명)

캠퍼스	학과	연도	모집 인원	입학 인원
항공캠퍼스 (경남 사천)	항공기계	2019	60	68
		2020	60	72
		2021	60	47
		2022	**60**	**22**
		2023	**50**	**20**
	항공메카트로닉스	2019	60	65
		2020	60	56
		2021	60	30
		2022	**60**	**16**
		2023	**30**	**15**
	항공전기전자정비	2021	60	53
		2022	**60**	**36**
		2023	**60**	**31**
	항공정비	2019	30	36
		2020	30	35
		2021	60	64
		2022	60	55
		2023	60	52
반도체융합캠퍼스 (경기 안성)	반도체품질측정	2020	50	57
		2021	50	49
		2022	50	42
		2023	50	50
	반도체장비설계	2020	50	53
		2021	50	28
		2022	**50**	**20**
		2023	**25**	**15**
	반도체설계	2020	50	60
		2021	50	55
		2022	50	47
		2023	50	55
	반도체융합SW	2020	50	50
		2021	**50**	**31**
		2022	**50**	**21**
		2023	**50**	**0**
	반도체공정장비	2020	50	53
		2021	50	45
		2022	50	39
		2023	**50**	**30**

	반도체전기시스템	2020	50	56
		2021	50	53
		2022	50	43
		2023	50	38
	영상그래픽	2019	30	30
		2020	30	30
		2021	30	30
		2022	30	22
		2023	**30**	**18**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항공캠퍼스 및 반도체융합캠퍼스 운영 초기 특성화 학과 운영을 통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입학 인원이 많았으나, 해당 캠퍼스 소재지의 인근 전문대학에서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고 입학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동 캠퍼스 일부 학과에서 모집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입장임.[98)]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므로, 다른 전문대학과의 경쟁을 통해 학생 만족도 증가 및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및 반도체융합캠퍼스에 대하여 학생 지원 제도·인프라 확대, 교육 방법 다각화 및 홍보 강화 등 모집 인원 충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8) 항공캠퍼스는 경남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인 경남 남해에 소재한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항공정비학부, 메카트로닉스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음. 반도체융합캠퍼스는 경기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경기 안성에 소재한 두원공과대학교 안성캠퍼스는 반도체기계설계과, 반도체과 등을 운영하고 있음.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36-30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사업(1989년~, 출연)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실천공학적 자질을 갖춘 직업능력개발담당자(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기업현장교사), 직업능력개발 교육 훈련 분야의 전문인력 및 고용서비스전문가 양성 등에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496억 8,3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100%).

[2023회계연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50,035	50,035	-	△352	-	49,683	49,683	-	-	52,718
▪ 교육환경인프라구축(舊노후건축설비개수)	8,610	8,610	-	-	-	8,610	8,610	-	-	13,090
▪ 대학정보화사업	4,133	4,133	-	-	-	4,133	4,133	-	-	1,382
▪ 연구학생지원비	2,660	2,660	-	-	-	2,660	2,660	-	-	2,660
▪ 1공학관 정밀안전진단	340	340	-	△260	-	80	80	-	-	-
▪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건립	1,700	1,700	-	-	-	1,700	1,700	-	-	3,782
▪ 첨단산업훈련콘텐츠 강화	6,215	6,215	-	-	-	6,215	6,215	-	-	3,815
▪ 기관운영비	47,757	47,757	-	△92	-	47,665	47,665	-	-	49,059
▪ 자체수입	△21,380	△21,380	-	-	-	△21,380	△21,380	-	-	△21,070

*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 주의>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환경인프라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을 향상하고, 공학1관 내진설계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1공학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학생 밀집도가 높은 1공학관에 대하여 내진설계와 교육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0억 9,500만원으로, 이 중 2,200만원(2.0%)이 실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교육환경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교육환경인프라구축(舊노후건축설비개수)	8,610	8,610	-	-	-	8,610	8,610 [6,734]	-	-	13,090
-노후건축설비개수	6,380	6,380	-	-	-		6,380 [5,576]	-	-	
-1공학관 환경개선공사	1,095	1,095	-	-	-		1,095 [22]	-	-	
-대학본부 증축·환경개선 및 주차타워 건립공사	1,135	1,135	-	-	-		1,135 [1,135]	-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 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 내역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4년, 295억원)이므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후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당초 예상 기간보다 길어졌다는 입장임.

[1공학관 환경개선공사 사업 추진 경과]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비 고
'23.3.~4.	• 자체 기획업무 및 사전검토서 작성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자체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0호」
'23.5.~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및 검토 • 건축공간연구원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7.12)	• 「건축서비스진흥법」 '19.12.19. 개정 적용 • 「건축서비스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23.7.~11.	• 건축기획업무용역 발주 및 진행	• 「건축서비스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23.8.~'23.11.	•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및 진행	• 건축공간연구원 사전검토의견 반영
'23.9.~10.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완료(계획단계, 입찰공고전)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3.11.	• 대학 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11.30)	• 「건축서비스진흥법」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3.12.	• (조달청)공학1관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의뢰	• 설계제안공모(약3개월소요)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99]에 따

99)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 등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 전에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심의·자문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공공기관마다 설치하도록 함(「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8. 12. 18. 개

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동 법은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절차를 인지하고 준비할 기간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사업 절차를 숙지하여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 2019. 12. 19. 시행)

(4) 내일배움카드(고보) (고용보험기금, 1151-35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1997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현액은 8,873억 8,800만원으로, 이 중 6,554억 3,400만원(73.9%)이 집행되었고,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19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내일배움카드(고보)	887,312	887,312	76	-	887,388	655,434	32	231,922	734,204
▪ 일반직종 훈련	344,708	344,708	-	-	384,708	360,353	-	24,355	331,239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64,833	464,833	-	-	424,833	218,138	-	206,695	325,960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76,610	76,610	-	-	76,610	75,872	-	738	75,960
▪ 운영비 등	1,161	1,161	76	-	1,237	1,071	32	134	1,045

*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적정 훈련인원 편성 및 훈련 방식 다각화 모색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내역사업은 직종을 크게 ①기간산업직종(건축목공, 정보통신설비 등 28개), ②전략산업직종(빅데이터 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등 24개)과 ③서비스산업직종(게임콘텐츠제작, 클라우드 운영관리 등 34개)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목록]

대분류	기간산업직종(28개)	전략산업직종(24개)	서비스산업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 (3)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 (3)
교육·자연·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5)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1)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11)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18)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타),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 (3)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신소재개발 및 제조 (2)	
화학·바이오(2)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2)	

섬유·의복 (2)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12)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6)	
정보통신 (13)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가구·공예 (4)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9)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2)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구축 (2)	

*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3. 10. 23. 기준)

동 내역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100] 모든 국민임. 참여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과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데,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함.

동 내역사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훈련과정을 심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결과를 공고하는데, 국

100)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2024. 1. 1. 기준).

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이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한 뒤 훈련비·훈련장려금을 받는 절차로 진행됨.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내용]

목적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지원 대상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민
지원 내용	(훈련비) 1회에 한하여 전액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 내 출석일수 × 10,000원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월 최대 200,000만원
사업추진체계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고용부·심평원) ⇨ **훈련과정 선정**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고용센터) ⇨ **훈련 실시** (훈련생·훈련기관)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4,248억 3,300만원으로, 이 중 2,181억 3,800만원(51.3%)이 집행되고, 2,06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목표 훈련 인원은 인력부족직종 44,864명과 기타직종 25,786명으로 총 70,650명이었으나 실제 훈련 인원은 38,184명으로 실제 훈련 인원이 목표 훈련 인원의 54%에 불과함.

[2023년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집행 결과]

(단위: 명, 백만원)

훈련인원			예산		
목표	실제	목표달성률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70,650	38,184	54.0	424,833	218,138	51.3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 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목표 훈련 인원 증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인상 등 계획액 규모가 증가했고, 장기 과정으로 인하여 용접, 금형, 밀링 등 일부 직종에서 청년층이 훈련 참여에 소극적이며, 중장년층은 훈련 참여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훈련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는 목표 훈련 인원 증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인상을 포함하여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3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기금계획 수립 근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22) 350,615 → ('23) 464,833백만원(+114,218백만원, +32.6%)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원활한 훈련지원 및 인력양성

○ 산출내역 : ('22) 64,227명×**5,459천원**

→ ('23) (44,864명×**6,671천원**[인력부족직종]) + (25,786명×**6,420천원**[기타직종])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615	○ **기타보전금(310-04) : 350,615,000천원** 가. 훈련비, 훈련장려금 (350,615,193천원) · 64,227명×5,459,000원=350,615,193천원 나. 조정재원 (△193천원)	464,833	○ **기타보전금(310-04) : 464,833,000천원** 가. 훈련비, 훈련장려금 (464,833,864천원) · 44,864명×6,671,000원=299,287,744천원 · 25,786명×6,420,000원=165,546,120천원 나. 조정재원 (△864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2023년부터 훈련시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줄곧 장기간 훈련을 통해 전문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려

했으므로 2023년도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 직종의 훈련시간별 훈련 인원]

(단위: 명)

구분	대분류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140~350시간미만	350시간 이상	140~350시간미만	350시간 이상	140~350시간미만	350시간 이상
기간 산업 직종	기계	밀링(머시닝 센타)	0	103	0	31	0	66
		금형	0	160	0	135	0	70
	재료	특수용접	0	2,308	0	1,547	0	1,720
전략 산업 직종	건설	플랜트건설	255	1,083	253	1,088	254	1,090
	기계	자동차정비 (섀시,엔진,장치)	6	1,378	0	849	0	904
서비스 산업 직종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지털 디자인	0	6,998	0	3,685	0	2,828
		멀티미디어	0	4,537	0	2,183	0	2,871
	정보통신	디지털컨버전스	0	12,081	0	7,879	0	4,677

* 전체 직종의 훈련시간별 훈련 인원은 참고자료 참조

** 자료: 고용노동부

2021~2023년 동 내역사업의 결산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96.4%→90.0%→51.3%)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21~2023년 동 내역사업의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1	410,528 (422,280)	407,095	96.4
2022	350,615 (320,615)	288,540	90.0
2023	464,833 (424,833)	218,138	51.3

* 집행률(%) = $\frac{\text{집행액}}{\text{계획현액}} \times 100$

** 자료: 고용노동부(재편집)

즉, 동 내역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는 전반적인 훈련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훈련 수요 감소에 따라 적정한 목표 훈련 인원을 설정하고, 많은 국민이 동 내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훈련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련 방식 다각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훈련시간별 훈련 인원**

(단위: 명)

구분	대분류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140~350 시간 미만	350 시간 이상	140~350 시간 미만	350 시간 이상	140~350 시간 미만	350 시간 이상
기간 산업 직종	건설	측량	0	30	0	28	0	33
		건축목공	0	1,026	0	805	0	826
		실내건축	0	1,000	0	2,049	0	1,731
		건축설비설계시공	0	105	0	59	0	43
		가스설비시공	0	37	0	24	0	37
	기계	생산기계	0	32	0	24	0	82
		레이저가공	0	171	0	156	0	110
		밀링(머시닝센타)	0	103	0	31	0	66
		선반(CNC선반)	0	26	0	31	0	43
		자동차도장	0	148	0	97	0	84
		금형	0	160	0	135	0	70
		기계설계제작	0	2,546	0	1,331	0	1,016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0	143	0	67	0	21
		열·냉동기계	0	1,357	0	903	0	959
	재료	특수용접	0	2,308	0	1,547	0	1,720
	섬유·의복	염색가공	0	33	0	29	0	32
	전기·전자	내선공사	0	4,737	0	2,489	0	3,323
		외선공사	0	748	0	331	0	145
		전기시스템제어	0	521	0	345	0	319
		전기기기제작	0	6	0	0	0	24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0	79	0	15	0	52
	인쇄·목재·가구·공예	특수인쇄	0		0	0	0	0
	환경·에너지·안전	광산자원개발생산	0	35	0	39	0	48
전략 산업 직종	교육·자연·사회과학	빅데이터 전문가	0	1,460	0	663	0	233
	건설	플랜트건설	255	1,083	253	1,088	254	1,090
		친환경건축시공	0	1,077	0	769	26	823
	기계	자동차정비(섀시,엔진,장치)	6	1,378	0	849	0	904
		영상촬영드론조종	0	165	0	152	0	178
	재료	품질관리기술자	0	0	0	0	0	5
	전기·전자	3D프린터 운용	0	747	0	472	0	358
	정보통신	사물인터넷(홈·산업 IoT)	0	254	0	102	0	87
	인쇄·목재·가구·공예	가구설계제작	0	608	0	471	0	515
	환경·에너지·안전	태양에너지	0	702	0	362	0	472

	농림어업	종자생산.유통	0	0	0	0	0	20
서비스 산업 직종	경영·회계·사무	물류관리	0	936	0	580	0	872
		기술문서작성가	0	0	0	11	0	38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지털디자인	0	6,998	0	3,685	0	2,828
		제품디자인	0	825	0	439	0	546
		게임콘텐츠제작	0	2,513	0	1,739	0	1,561
		공공디자인	0	0	0	77	0	209
		멀티미디어	0	4,537	0	2,183	0	2,871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국제관광마케팅	0	79	0	43	0	133
	건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0	2,529	0	1,574	38	1,673
	기계	항공기정비	0	311	0	117	0	148
		자동차차체정비	0	154	0	46	0	7
		산업응용로봇제어	0	144	0	43	0	23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0	50	0	42	0	76
	섬유·의복	스마트의류	10	881	0	484	0	430
	정보통신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0	1,514	0	707	0	404
		스마트웹&콘텐츠개발	0	4,341	0	2,829	0	1,938
		네트워크운영관리	0	258	0	284	0	218
		디지털컨버전스	0	12,081	0	7,879	0	4,677
		클라우드 운영 관리	0	593	0	372	0	200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0	593	0	501	0	212
		VR/AR 콘텐츠 개발	0	0	0	58	0	34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0	992	0	599	0	207
	인쇄·목재·가구·공예	출판	0	2,094	0	1,477	0	1,620
		보석디자인	0	419	0	390	0	308
	환경·에너지·안전	환경보건관리	0	69	0	77	0	279
		생태복원.관리	0	103	0	75	0	225
		기후변화대응관리	0	574	64	234	67	57
		스마트물관리	0	0	0	0	0	37

* 자료: 고용노동부

(5)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용보험기금, 1152-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1995년, 직접)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동자의 직무능력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현액은 4,014억 500만원으로, 이 중 3,983억 6,600만원(99.2%)이 집행되었고, 30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03,030	401,405	-		401,405	398,366	-	3,039	356,828
▪ 일반훈련	243,458	349,147	-		349,147	349,147	-	-	303,884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27,011	26,539	-		26,539	23,764	-	2,775	32,271
▪ 지역·산업별특화훈련	30,929	24,087	-		24,087	23,896	-	191	-
▪ 운영비	1,632	1,632	-		1,632	1,558	-	74	1,632

* 자료: 고용노동부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사업은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노동

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업 규모별로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동 내역사업은 일반직무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 고숙련·신기술훈련, 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일반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일반훈련	243,458	349,147	-	-	349,147	349,147	-	-	303,884
- 일반직무훈련	147,911	250,378	-	-	250,378	250,378	-	-	213,452
- 기업직업훈련카드	30,700	27,916	-	-	27,916	27,916	-	-	47,600
- 고숙련·신기술훈련	8,607	12,491	-	-	12,491	12,491	-	-	-
- 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	20,200	47,509	-	-	47,509	47,509	-	-	-
- 장기유급휴가훈련	36,040	10,853	-	-	10,853	10,853	-	-	14,00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해당 업종·직종의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60억 4,000만원이고, 이 중 108

억 5,300만원(30.1%)이 집행되었고, 25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내내역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연속하여 4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4주 이상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로 분할 훈련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임.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내용]

목적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주어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훈련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①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이면서 법령 또는 취업규칙상 유급 휴일은 제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가 제한되고 있는 사업주 제외 ② **근로자:** 동일 업종 1년 이상,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지원 요건	① **훈련기간:** 연속하여 4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4주 이상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로 분할 훈련 ② **훈련시간:** 최소 1일 6시간 이상 훈련 시 8시간 인건비 지급 ③ **훈련내용:** 직무향상 훈련, 디지털 융합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
지원 내용	① **훈련비:** NCS 기준단가 100%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50%) * 1인당 연간 1,000만원(회계연도 기준)이며, 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의 240% 지원한도액에 미포함 ② **인건비:** 1일 6시간 이상의 훈련을 최소 4주 이상 실시한 경우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의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지원

동 내내역사업은 2023년에 10,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36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056명을 지원하여 108억 5,300만원을 집

행하는 데 그쳤음. 동 내내역사업은 2022년에도 10,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4,662명을 지원하여 목표달성률이 46.6%에 불과함.

[2022 · 2023년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의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목표인원	실제인원	목표달성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22	10,000	4,662	46.6	36,040	15,800	43.8
2023	10,000	3,056	30.6	36,040	10,853	30.1

* 자료: 고용노동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선업 불황 등으로 대량 실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장기간 유급휴가 부여 및 훈련을 통해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숙련도 제고를 위해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시하였으나, 2022년부터 코로나-19 회복, 고용상황 개선으로 동 내내역사업의 지원실적이 감소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동 내내역사업이 처음 편성된 2022년에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이 아니라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가 협업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러나 2023년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

게 장기 유급휴가 훈련을 주어 해당 업·직종 업무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훈련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사업목적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원 업종 및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훈련기관을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에서 모든 공동훈련센터와 민간 훈련기관까지 확대하였음.

[2022 · 2023년 장기유급휴가 훈련 사업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2년도	'23년도
업 종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부·RSC 심의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산업 추가 가능	업종 제한없이 장기유급휴가 훈련이 필요한 기업
지 역	우리부와 협약 체결 자치단체 (경남, 부산, 인천중구)	지역제한 폐지
훈련기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모든 공동훈련센터,민간 훈련기관
요 건	(유급휴가) 20일 이상 (훈련) 4주 이상	좌 동
지원수준	**(인건비)** 최저임금 150% 내 **(훈련비)** 1인당 1천만원 내 * 지원한도(고용보험료 240%) 미포함	좌 동

그럼에도 동 내내역사업의 2023년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기(旣)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집행 저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인력 지원 및 훈련과정·실시과정 다변화 등 집행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 노동정책실

(1)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일반회계, 2031-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1976년~, 직접 및 보조)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하여 임금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며, 노사갈등 예방·관리 및 사업장의 노사 상생 협력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회계년도 예산현액 91억 8,000만원 중 53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7%)되고,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7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9,180	9,180	-	-	9,180	5,390	80	3,710	-
▪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5,682	5,682	-	△18	5,664	1,974	20	3,670	-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425	2,425	-	△320	2,105	2,105	-	-	-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73	1,073	-	338	1,411	1,311	60	40	-

* 자료: 고용노동부

<ISP 수립이 완료되기 전 시스템 구축 부적정>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사업은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하여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직무평가도구·활용매뉴얼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21억 5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음.

고용노동부는 2023년 예산 편성시 기존 운영하던 '임금직무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일부 개선하여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동 내역사업 예산 중 7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101]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직무정보를 통합하여 직무와 연계된 임금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이는 단순한 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신규 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ISP·ISMP[102] 수립 대상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101)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02)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MP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에 고용노동부는 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된 7억원의 사업비 중 2억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한국형 O*net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비로 1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 예산에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103)]

ISP·ISMP는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중복성 등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과 기술 적정성을 포함한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 총 구축비 산출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됨.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관은 ISP·ISMP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이에 대한 예산당국의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된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23년 예산에 한국형 O*net 구축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7억원 중 ISP 수립을 위한 전용액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의 예산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명목의 용역계약[104)]을 체결한 바 ISP가 완료되지 않은

103) 일반회계,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104) 계약기간 2023.4.7.~2023.12.21.

시점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도의 예산을 사전적으로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콘텐츠 개발 연구, 정보구조도 및 UX-UI 디자인 설계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여 해당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직접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2023년도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세부 과제 내역]

연번	세부과제명
1	직무역량 관련 Job Zone 콘텐츠 개발
2	한국직업정보 콘텐츠 개정(직무정보 중심)
3	신규 시스템 직종선정 기초연구
4	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개발
5	직무정보 중심 동영상 콘텐츠 제작
6	한국직업전망 DB 설계 및 구축
7	정보구조도 및 UX/UI 디자인 설계 연구
8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체계 수립
9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적용방안 연구
10	노동시장 신규 직무확인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연구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추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과제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개발', '정보구조도 및 UX/UI 디자인 설계 연구',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체계 수립',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적용방안 연구' 등 과제의 경우 직접적인

시스템 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로 보임.

당초 고용노동부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가 이를 확정한 것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용도의 예산이며 고용노동부가 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한국형 O*net)의 구축을 위한 용도의 예산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동 예산 중 일부를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에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45조[105]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할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예산 집행은 ISP 수립 완료 및 이에 따른 예산 배정 전에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서 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요구 전에 ISP 수립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위반한 집행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ISP 수립 후 이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정된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10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비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필요>

2023년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사업비 21억 500만원은 전액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중 16억 500만원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운영비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음.

임금직무혁신센터는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임금 및 직무체계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금 및 직무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개발, 임금체계 개선, 산업 및 업종 수준에서의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 및 직무 관련 정책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목표로 하는 기관임.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매년 동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한바 2013년 및 2014년에는 연구개발비(260-00목)로, 2015년 및 2016년에는 위탁사업비(210-15목)[106]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는 일반용역비(210-14목)로 동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106)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개정을 통해 2017년 예산안부터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통합하였음.

는 비목임.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매년 수의계약의 방식[107]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한편,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최근 3년간 수행한 과제 내역을 살펴보면,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임금정보브리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매년 수행과제가 달라지고 있는바 이는 매년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연초 임금직무혁신센터와 계약 체결시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연중 수시 요청[108]을 통해 수행하였기 때문임.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108)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용역계약서 상 과업지시서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 요청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음.

[최근 3년간 임금직무혁신센터의 과제 수행내역]

구 분	2021	2022	2023
과제명	·임금체계 실태조사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지원 ·직무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 (화학·건설·조선해양업종) ·사회복지서비스업 표준직무체계 개발연구 ·직무 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포럼 ·임금정보브리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공정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지원 ·직무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 (기계·화학업종) ·임금직무 포럼 및 토론회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이용자 의견조사 ·임금정보브리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임금 관련 소통창구 운영 ·표준형 직무평가 도구 개발 ·업종별 표준직무체계 구축 ·미임금체계 사업장 실태조사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연구 ·임금정보브리프
예산액	7억 7,300만원	7억 7,300만원	16억 5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동 사업의 2023년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제출된 결과보고서 상의 사업 추진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과업지시서에 표기된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된 내역이 발견되는바, 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연중 상황변화에 따라 과업을 상시 수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임.

[2023년 임금직무혁신센터의 과업지시서 및 실제 과업 수행 내용 비교]

구 분	내 용
계획내용과 동일	○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 ○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 임금정보시스템 운영 ○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 표준형 직무평가 도구 개발
계획내용과 다른 과업 수행	○ 임금체계 개편 지원센터 운영 → 임금 관련 소통창구 운영 - 당초 임금체계 개편 추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임금체불 가능성, 임금지급 적법성 등과 관련한 상담만을 제공(임금체계 개편 자문 실적 0건)
계획 변경에 따라 과업 미실시	○ 직무관리 체계 도입 컨설팅 ○ 보건의료 업종 표준임금체계 마련
계획 상 없던 과업 수행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연구 ○ 미임금체계 사업장 실태조사 ○ 업종별 표준직무체계 구축(식품제조업·자동차부품업·조선업)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업무 수행 절차가 문제되는 것은 해당 비목이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되었기 때문으로, 일반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시 과업 내용을 정하고 이에 기반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발주한 행정관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계약상대방에게 교부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권한이 없기 때문임.

즉, 일반용역비에 따른 예산집행은 계약 체결시 과업내용이 명확히 확정되는 업무에 대한 위탁 시에 적합한 예산비목이라고 할 것이며, 임금직무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집행과 같이 사전에 과업내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중 추가적으로 요청한 과업을 포함한 전체 과업량이 사전에 계약한 계약액 대비 적정했는지 등을 사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특히 동 사업은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센터에서 연구하는 연구자 9인의 인건비가 포함되는바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새롭게 정하여야 하는 비목인 일반용역비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 업무의 성격 및 집행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은 일반용역비가 아닌 집행에 대한 사후 감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권 및 감사권한[109]을 가지게 되며,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액의 정산을 통한 잔액 환수,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예산 집행상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음.

---

10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시책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110] 같은 법 제9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11]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동 사업비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동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집행하여 예산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1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회계, 2036-31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2007년~, 보조)은 노사발전재단이 노사상생협력, 노동분야 국제교류, 고용차별 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2023회계년도 예산현액 231억 4,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023회계연도 노사발전재단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노사발전재단지원	23,141	23,141	-	-	23,141	23,141	-	-	20,144
▪ 노사상생 협력교육	202	202	-	-	202	202	-	-	91
▪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502	502	-	-	502	502	-	-	200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2,500	2,500	-	-	2,500	2,500	-	-	-
▪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운영	600	600	-	-	600	600	-	-	419
▪ 일생활균형 확산지원	18	18	-	-	18	18	-	-	-
▪ 일반관리비	19,319	19,319	-	-	19,319	19,319	-	-	19,434

* 자료: 고용노동부

<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통합 편성 · 집행 필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은 2007년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기타 노사발전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당초 노사발전재단은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중 일부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보조·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비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하여 교부받아 기관을 운영하였으나 2021년 예산부터 각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였음.

그러나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보조·위탁받아 집행한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관 경상운영비를 통해 집행하여야 할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기관 경상운영비 외 위탁 또는 보조사업비에서 나누어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의 노사발전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재원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총 2억 6,200만원의 유지보수비 중 7,100만원을 3개 보조·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총 5억 1,000만원의 유지보수비 중 1억 1,900만원을 6개 보조·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4억 9,000만원의 유지보수비 중 2억 4,700만원을 8개 보조·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각각 집

행한 바 기관 경상운영비 외 집행액 및 나누어 집행한 사업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노사발전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재원별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목)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위탁·보조사업	노사발전재단 지원	경상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91 (4,368)	391 (4,392)	243 (4,525)
	일터혁신 지원	컨설팅 (민간위탁사업비)	-	21 (24,290)	21 (26,534)
		인프라 (민간위탁사업비)	-	10 (1,000)	10 (1,000)
		총괄관리 (민간경상보조)	16 (430)	30 (430)	30 (470)
	고용안정장려금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민간위탁사업비)	15 (184)	15 (184)	15 (184)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민간위탁사업비)	40 (565)	41 (1,248)	41 (867)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민간위탁사업비)	-	2 (151)	3 (151)
자치단체 위탁사업	제주중장년취업프로젝트		-	-	72 (1,648)
자체사업	외국인 취업교육		-	-	55 (3,146)
합 계			262	510	490

* 주: 괄호 안은 해당 내역사업의 해당연도 예산액임.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노사발전재단은 2021년 각 보조·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경상운영비를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이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이관되지 못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단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조·위탁사업으로 분배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관운영비를 여러 사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에 관한 투명성을 저해하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며, 해당 보조·위탁사업에서 직접사업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도 “사업비중 경상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발전재단은 기관운영비 성격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여러 보조·위탁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한바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의 기관 경상운영비가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발전재단은 향후 기관의 경상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에 편성된 경상운영비를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하여 기관의 경상운영비성 경비를 다른 보조·위탁사업비를 통해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차보증금의 중요재산 관리 필요〉

노사발전재단은 재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부 외에도 서울지사(서울 금천구), 중부지사(인천 남동구), 충청지사(대전 서구), 영남지사(대구 중구), 호남지사(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인 중장년내일센터 운영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 12개소[112]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노사발전재단은 본부 및 지사, 중장년내일센터 등의 사무공간을 임

112) 노사발전재단 운영 중장년내일센터(12개소)

연번	기관명	소재지
1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5, 3~4층 (준타워)
2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층 (BYC하이시티빌딩)
3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인천 남동구 미래로 7, 3층 (현대해상빌딩)
4	경기중장년내일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권선동, 안동빌딩)
5	강원중장년내일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단구동, KT링커스빌딩)
6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 (홍국생명빌딩)
7	울산중장년내일센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노동자종합복지회관)
8	대구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 (SHL동성빌딩 7M층)
9	광주중장년내일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36, 4층 (누문동, 교보빌딩)
10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5층 (효자동2가, BYC빌딩)
11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 8, 15층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이도1동, 제주고용센터)

대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차보증금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교부받은 사업비 중 일부로 지급한바, 2024년 5월말 기준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으로 2억 9,600만원, 중장년내일센터 운영사업으로 20억 900만원 등 총 23억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급되었음.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지급된 노사발전재단 임차보증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금액
노사발전재단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285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8	5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스마트업타워	6
	소 계	**296**
중장년일자리 희망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2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22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30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200
	전라북도 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39-2	10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6-5	5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8	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1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25-3	5
	대전광역시 서구 중반2길 75	5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5	14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3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7-6	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18-6	5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8	10
	소 계	**2,009**
합 계		**2,305**

* 자료: 고용노동부

민간경상보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목으로, 동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요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 및 공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경상적 지출과는 달리 보조기관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 보조금 교부 이후 시점에 이를 현금화하여 보조금 교부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지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114]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즉, 이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은 민간경상보조비를 통해 집행한 임차보증금을 중요재산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나 2024년 5월말까지 동 규정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의 임차보증금을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3)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2005년 ~, 직접)은 취약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및 자율개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67억 2,700만원 중 165억 5,900만원(99.0%)이 집행되었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근로조건개선지원	16,675	16,675	52	-	16,727	16,559	30	138	11,896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6,880	6,880	-	-	6,880	6,845	-	35	7,063
▪ 근로조건자율 개선지원	2,041	2,041	-	-	2,041	1,985	-	56	1,375
▪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3,024	3,024	-	130	3,154	3,116	-	38	983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1,089	1,089	8	-	1,097	1,085	12	-	-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222	222	-	△50	172	172	-	-	-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23	1,623	9	△30	1,602	1,596	6	-	1,61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	1,796	1,796	35	△50	1,781	1,761	12	8	862

* 자료: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지원팀 업무 범위 조정 필요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통하여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청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68억 8,000만원 중 68억 4,500만원(99.4%)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권리구제지원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변호사·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115]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116],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제도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음.[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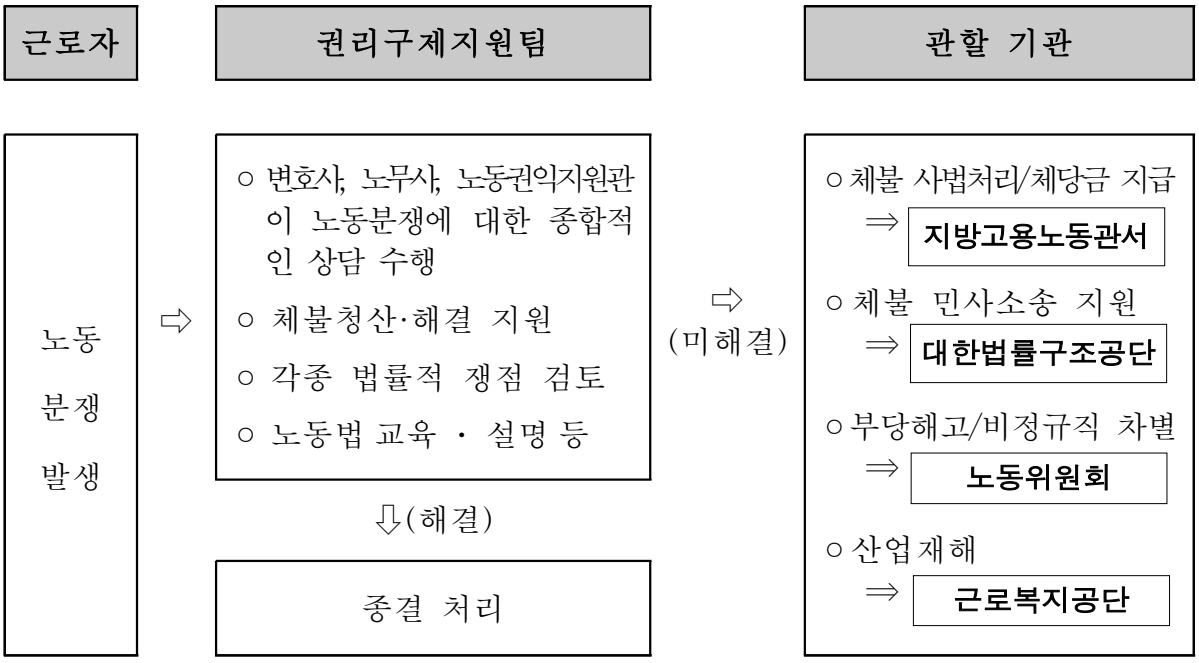
[권리구제지원팀 주요 직무 내용]

구 분	주요 업무
노동변호사	노동법상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민·형사 법률 심층상담, 기관대상 행정쟁송 지원, 노동법 교육 등 수행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반 심층상담,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규약 등 각종 인허가 검토, 기관 내·외 노동법 교육 및 설명 등 수행
노동권익 지원관	기관 방문 및 유선 민원인 초기상담(임금체불 등), 임금체불 청산지원 업무 수행

115)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음.
116) 변호사, 공인노무사
117) 상세한 직무 내용에 관하여는 【참고1】 권리구제지원팀 직종별 업무 세부내용 참조

권리구제지원팀은 노동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간이한 노동분쟁을 근로감독관의 수사 이전에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감독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도식]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권리구제지원팀 중 변호사의 업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조사,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법률상 쟁점에 대한 자문, 기관 대상 행정쟁송 자문·지원, 기관 및 직원(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소송 자문, 형사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인노무사의 경우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등 인·허가 심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권리구제지원팀의 변호사가 기관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에 관하여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인·허가 심사 및 검토는 행정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인·허가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 보조적인 행위가 아닌 주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해석 등을 통해 충실한 법 집행을 보조함으로써 근로자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지원팀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 검토 등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 및 최종 심사는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이상 적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인·허가 검토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기관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송무의 수행은 대국민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목적에 맞게 이들의 직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관하여 전문직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은 전국 48개 관서(6개 지방청, 42개 지청·출장소)에 151명(변호사 14명, 공인노무사 21명, 노동권익지원관 116명)이 배치되었는데, 충원률은 정원(177명) 대비 85.3%에 그쳤고 권리구제지원팀에게 지급되는 상용임금 55억 9,4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45억 1,700만원(80.7%)에 불과하였음.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 원	현 원*				충원률
		계	변호사	공인 노무사	노동권익 지원관	
지방고용노동청 (6개소)	43	34	6	5	23	79.1
지청·출장소 (42개소)	134	117	8	16	93	87.3
합 계	177	151	14	21	116	85.3

* 2023년 12월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전문직 인력의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충원률은

43.8%이고 공인노무사의 충원률은 61.8%로, 별도의 전문자격을 요하지 않는 노동권익지원관이 정원(111명)을 초과하여 충원한 것과 비교할 때 충원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자격인원별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현원	충원률
변호사	32	14	43.8
공인노무사	34	21	61.8
노동권익지원관	111	116	104.5
계	177	151	85.3

또한, 운영관서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모두 배치되지 않은 관서는 23개소(지방고용노동청 1개소, 지청·출장소 22개소)로[118]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중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119] 이와 같이 전문직 인력 충원이 어려운 이유는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전문인력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120]

---

118) 광주청(지방고용노동청 1개소), 서울동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강원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충주지청(지청·출장소 22개소)

119) 【참고2】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정·현원 참조

120)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변호사 채용 시 월 381만원(민간 중위값 647만원), 노무사 채용 시 256만원(민간 중위값 42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직 인건비에 대하여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통의 기준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어 민간 수준의 임금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설명임.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충원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는 주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노동권익지원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성과금 지급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현재 대구청·광주청·대전청과 같은 주요 지방노동관서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용임금에 관하여는 정부 공통기준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수당 신설 등이 제한된다는 점[121]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 지원팀의 전문직 직원 채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1) 기획재정부(2022),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1.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하므로,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참고1 권리구제지원팀 직종별 업무 세부내용

○ 노동변호사

○ **(법률자문)** 신고사건 처리·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쟁점 자문(산안 포함)

○ **(심층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분쟁 관련 민·형사 법률 심층상담

*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 및 관계 법령, 사례 등 중심, 노동관계법 상담도 포함

○ **(소송 등 지원)** 특이민원 대응 법률자문 및 기관 대상 행정쟁송* 자문·지원 수행, 기관 및 직원(근로감독관 등)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송 등 자문

* (예시) 도산 등 사실인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노조설립인가 반려, 작업환경측정 기관 업무정지 등 우리 부 업무수행 상 발생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

○ **(교육)** 형법·형사소송법 등 법률 이론 강의 및 교육

☞ 변호사 배치 관서에서는 미배치 지청을 포함하여 위 업무 수행, 대표(지)청 권리구제지원팀장은 변호사 미배치 지청에서 자문 등 요청이 있는 경우 관내 변호사 자문 순서를 정하여 요청업무를 배정

○ 공인노무사

○ **(심층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관계법* 심층상담

*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근로자성, 불법파견, 차별, 집단 노사관계 등 임금체불 외 사안 또는 임금체불 포함 복합적 사안 중심 상담,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미배치 관서는 직장 내 성희롱 포함

○ **(인·허가 검토)**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등 인·허가 심사 및 검토

○ **(자문 및 교육)**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쟁점 검토 및 자문

– 기관 내 요청 또는 교육과정 강의 요청 시 노동관계법 이론 및 실무 강의, 타 기관 및 사업장 요청 시 노동법 강의 및 교육

○ 노동권익지원관

○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 민원의 노동관계법* 안내·초기상담 실시, 신고사건 및 청산지원 절차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포함(초기상담)

○ **(체불상담)** 임금 및 퇴직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교부 등 관련 내용 권리구제 절차(신고사건, 대지급금 등) 및 상담 실시

○ **(청산지원)** 체불 진정사건 중, 조기해결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인이 동의하는 사건에 한해 청산지원 실시

– 진정사건 당사자에게 체불액, 체불 사유, 청산 계획 등을 확인하여 대상 민원 분류(2차 분류), 사실관계 등을 청산지원 시스템(노사누리) 조치

* 체불금액, 체불금품 지급계획 등 '사실확인정보'에 입력 철저, 유선확인 시 중요사항은 '전화 등 사실확인'에 기재

** **(2차 분류 및 동의 확인)** 청산지원 민원은 처리절차, 기간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한 후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철저히 관리(민원인 미동의 시 즉시 접수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고사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 → 권리구제지원팀장의 1차 분류된 민원의 상담 후 민원인 진행 동의 여부 확인

참고 2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정·현원

운영관서	정원	현원				운영관서	정원	현원			
		계	변호사	노무사	지원관			계	변호사	노무사	지원관
<지방고용노동청>(6)											
서울	8	9	3	2	4	대구청	7	6	1	-	5
중부청	7	6	1	1	4	광주청	7	4	-	-	4
부산청	7	5	1	1	3	대전청	7	4	-	1	3
<지청>(40)											
서울강남	6	5	-	1	4	부산북부	3	3	-	1	2
서울동부	5	4	-	-	4	창원	3	2	-	-	2
서울서부	5	5	1	1	3	울산	6	4	-	-	4
서울남부	5	4	-	-	4	양산	3	3	-	-	3
서울북부	3	3	-	-	3	진주	2	2	-	-	2
서울관악	6	6	1	1	4	통영	3	2	-	-	2
인천북부	5	4	-	1	3	대구서부	4	2	-	-	2
부천	3	4	-	1	3	포항	3	2	-	-	2
의정부	5	5	1	1	3	구미	2	2	1	-	1
고양	5	5	-	1	4	영주	1	1	-	-	1
경기	6	5	1	-	4	안동	1	1	-	-	1
성남	5	3	-	1	2	전주	2	1	-	-	1
안양	3	3	-	1	2	익산	1	1	-	-	1
안산	5	4	-	1	3	군산	2	1	-	-	1
평택	4	4	-	1	3	목포	2	2	-	-	2
강원	4	2	-	-	2	여수	2	2	-	-	2
강릉	2	2	1	-	1	청주	4	4	1	1	2
원주	2	1	-	-	1	천안	3	4	-	1	3
태백	1	1	-	-	1	충주	1	1	-	-	1
부산동부	3	3	1	-	2	보령	1	2	-	1	1
<출장소>(2)											
영월	1	1	-	-	1	서산	1	1	-	1	-

(4) 고용상 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2005년 ~, 직접/보조)은 비정규직 근로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12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하여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43억원 중 41억 3,700만원(96.2%)이 집행되었고, 1,200만원(0.3%)이 이월되었으며, 1억 5,100만원(3.5%)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4,288	4,288	12	17.7 △17.7	4,300	4,137 [3,945]	12	151	3,358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지원	1,683	1,683	6	17.7 △17.7	1,689	1,634 [1,634]	12	43	1,403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2,008	2,008	6	-	2,014	1,986 [1,794]	-	28	1,805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597	597	-	-	597	517 [517]	-	80	150

* 자료: 고용노동부

122)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보조사업의 내용을 고려한 예산 편성 기준 마련 필요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에는 ①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②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실태조사, ③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④노무제공 권리보장 제도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 편성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0억 1,400만원 중 19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실집행액은 17억 9,400만원임. 상세한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3년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	집행	실집행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28	28	28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실태조사		256*	254	254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민간경상보조	840	820	714
	자치단체경상보조	840	834	748
노무제공 권리보장 제도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		50	50	50
계		2,014	1,986	1,794

* 2022년 연구용역비 600만원 이월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안전교육 등 일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선정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을 위해 플랫폼 기업(또는 컨소시엄)의 맞춤형 일터 개선 사업 지원	
사업예산	16억 8,000만원(8개소*2.1억원)	
지원대상	플랫폼 기업(플랫폼 운영자[123]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124]), 컨소시엄, 자치단체	
지원유형	**쉼터**	배달라이더, 가사근로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기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전조치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센터 등)
	기타	그 밖의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내용	일터 개선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최대 50%* (최대 3억원, 2년+1년 연장)	

* 사업 총예산액의 절반을 보조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지원액의 2배로 볼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사업 수행 결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을 통해 총 24개(민간 9개, 자치단체 15개)의 일터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쉼터 조성 및 운영뿐만 아니라 방한·안전장구 지급, 안전·기타 종사자 보호 교육 등이 주된 사업의 내용으로 나타났음.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운영 내용]

구분	쉼터 조성·운영	방한·안전 장구 지급	직무·안전 등 종사자 교육	기 타*
민간(9곳)	5	6	7	5
자치단체 (15곳)	7	11	11	7

* 세무상담, 건강상담, 건강진단 등

** 하나의 보조사업에서 다수의 사업 내용을 운영한 경우 중복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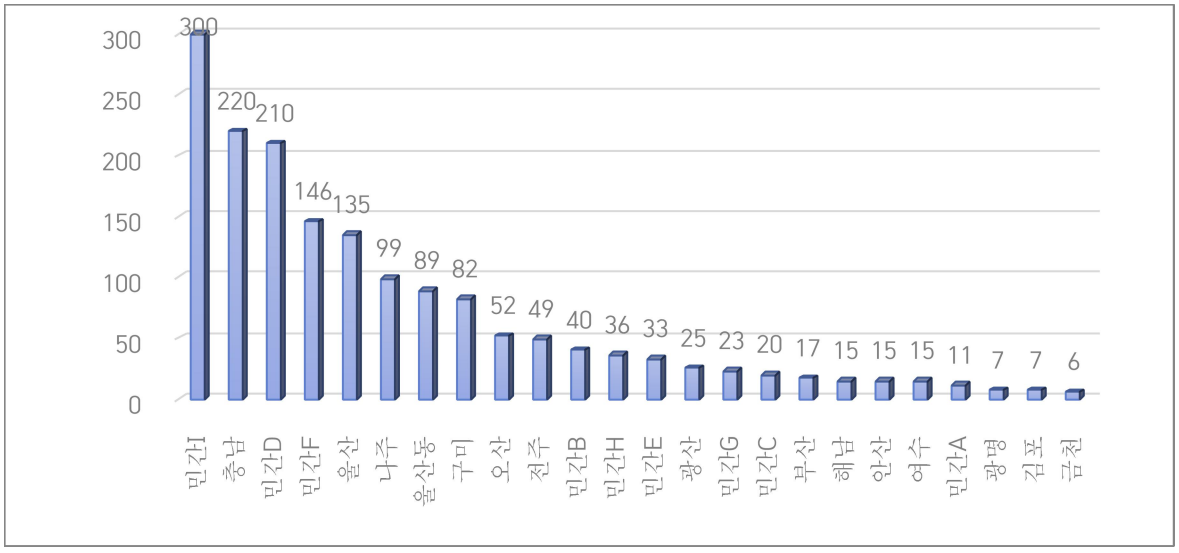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123)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

124)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동 사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는 당초 계획(8개) 대비 3배를 넘었으므로 보조사업자별 평균 보조액은 당초 계획(2억 1,000만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한 6,900여만원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인 사업자별 보조금액은 다음과 같음.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참여자별 보조금액]



* 동 사업은 50% 자체부담 + 50%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액의 2배가 사업비 총액임.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첫째,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원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예산 편성 당시 지원 대상 사업별로 평균 2억 1,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유사 쉼터 설치 지원 사례[125]

를 참고하면서 소규모 쉼터 운영 사업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나, 실제 동 사업의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안전장구 지급이나 종사자 교육 등 단기성·일회성 일터 개선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이 실시되었는바, 향후 다양한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단가 등 예산내역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쉼터 설치·운영 지원이나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동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일터 개선 사업 8개를 선정하여 평균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9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김포시·안산시, 전라남도 여수시·해남군에서 실시한 사업은 주로 방한장구 지급 등 현물성 지원에 해당하였음.

현물성 지원은 일률적으로 물건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쉼터 설치·운영과 같이 지역별로 지원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관하여 차등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현물성 지원을 주된 일터 개선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125)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에서 최대 3억원 이내로 실시된 유사 쉼터 설치 지원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밝힘.

보기 어려움.

고용노동부는 안전장구 등의 지원에 관하여 민간 플랫폼 기업의 지역전달체계가 부실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지역보다는 플랫폼 종사자의 업종이나 사업체에 따라 노무제공 환경과 현물성 지원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 현재 민간 플랫폼 기업에서도 동 사업을 통해 안전장구 등 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는 쉼터 설치·운영 지원 등 지역별로 구축·운영이 필요하거나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의 지급,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임.[126)]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이고, 주요 지출은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계획액 9,169억 2,700만원 대비 582억 9,500만원(6.4%)을 초과한 9,752억 2,200만원이고, 여유자금운용분과 공자기금 예탁·회수분을 제외한 수입액은 6,139억 3,900만원, 지출액은 7,923억 500만원임.

126)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202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결산	
수입액	7,754	9,169	9,752	9,728
법정부담금	3,803	4,053	4,083	4,219
대지급금회수금	1,589	1,819	1,524	1,988
체불청산지원융자회수금	161	159	208	345
기타 재산수입금	80	480	325	326
여유자금운용회수	1,100	1,638	2,579	1,815
공자기금회수	1,021	1,020	1,033	1,035
지출액	7,754	9,169	9,752	9,728
대지급금지급금	5,369	5,592	6,869	4,747
체불청산지원융자금	332	483	728	402
법률구조지원금	140	103	133	115
기타 사업지출금	0.40	0.52	0.45	0.00
기금운영비	162	177	193	167
공자기금예탁	1,000	1,000	1,000	1,000
여유자금운용	751	1,813	829	3,297

*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127]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9,587억 7,700만원에서 2023년 5,204억 8,700만원으로 5년 사이에 4,382억 9,000만원(45.7%)이 감소하였음.

127) 사업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회수할 수 있는 예탁·예치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유자금운용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한국은행 예치금을 포함한다고 볼 것임.

[2019년~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자금 규모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계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128] 2023년 말일 기준 적립금은 5,205억원으로,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인 6,869억원(2024년도 책임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음.

128)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지출 구조 및 재정 악화 요인 분석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129]과 체불된 임금을 대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임금채권 환수분으로 구성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사업주부담금과 임금채권환수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주부담금은 2019년 3,379억 8,800만원에서 2023년 4,082억 7,200만원으로 702억 8,400만원(20.8%)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임금채권환수분은 1,238억 5,000만원에서 1,524억 200만원으로 285억 5,200만원(23.1%) 증가하였음.

[2019년~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금수입규모	827,130	1,051,845	844,279	775,395	975,222
수입액	484,318	513,186	521,873	563,322	613,939
사업주부담금	337,988	335,436	346,381	380,275	408,272
임금채권환수분	123,850	131,307	156,875	158,880	152,402
일반회계전입금	82	82	82	-	82
기타잡수입	22,398	46,361	18,535	24,167	53,183
예금회수분*	138,738	336,216	120,403	110,010	257,967
예탁회수분**	204,074	202,443	202,003	102,063	103,316

*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정부예금회수분

** 공자기금예탁 원금·이자회수분

*** 자료: 고용노동부

129)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감소와 관련하여 수입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 임금채권 환수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대지급금 지급 이후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142억 1,600만원에서 2023년 1,481억 3,200만원으로 339억 1,600만원(29.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대지급금 지급분은 2019년 4,598억 8,000만원에서 6,869억 500만원으로 2,270억 2,500만원(49.3%) 증가하여 대지급금 지급액과 환수액의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누적 환수율도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 및 환수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 자료: 고용노동부

<u>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출</u>을 살펴보면, 공자기금 예탁분과 여유자금 운용분을 제외하고 주로 대지급금 지급분과 체불청산지원 융자분(사업주융자+근로자생계비융자)으로 구성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

근 5년간 대지급금 지급분과 체불청산지원 융자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지급금은 2019년 4,598억 8,000만원에서 2023년 6,869억 500만원으로 2,270억 2,500만원(49.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180억 4,600만원에서 727억 8,500만원으로 547억 3,900만원(303.3%) 증가하였음.

[2019년~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금지출규모	827,130	1,051,845	844,279	775,395	975,222
지출액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대지급금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체불청산 지원융자*	18,046	19,240	40,979	33,177	72,785
기금운용비등	41,227	41,444	39,864	30,301	32,615
공자기금예탁분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여유자금운용분	107,977	211,471	116,865	75,053	82,917

* 2021년부터 체불근로자 생계융자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감소와 관련하여 지출에서는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융자가 확대된 사유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전체 임금체불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 300만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3,000만원으로 628억 2,700만원(3.64%)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8억 8,000만원에서 2023년 6,869억 500만원으로 2,270억 2,500만원(49.3%) 증가하여 체불액 증가 대비 대지급금 지급액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19년~2023년 임금체불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금체불액(A)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대지급금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체불액 대비 대지급금 지급액 (B/A)	26.7	36.6	40.5	39.9	38.5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체불액의 증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지급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특히 간이대지급금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은 ①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요건으로 국가로부터 최대 2,100만원까지 임금 등을 대지급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체불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건으로 국가로부터 최대 1,000만원(재직자는 700만원)까지 임금 등을 대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지금금의 유형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간이대지급금은 2019년 2,910억 9,000만원에서 2023년 6,472억 7,100만원으로 3,561억 8,100만원(122.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도산대지급금은 1,291억 5,400만원(76.5%) 감소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63.3%에서 2023년 94.2%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2019년 7월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법원의 판결 없이 체불사실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2019년~2023년 유형별 대지급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간이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도산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 괄호안은 전체 지급액 대비 해당 대지급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융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융자액은 2019년 180억 4,600만원에서 2023년 727억 8,500만원으로 547억 3,900만원(303.3%)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생계지원 목적의 융자가 실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년~2023년 체불청산 지원 융자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주 체불청산	18,046	19,240	21,255	14,259	25,579
근로자 생계융자	-	-	19,724	18,918	47,207
계	18,046	19,240	40,979	33,177	72,785

* 2021년부터 체불근로자 생계융자분 포함

** 자료: 고용노동부

위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지출 흐름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수입 확대분이 지출 확대분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 규모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인 재정 상태 악화의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보임.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악화 관련 수입·지출 주요 요소]

수 입	지 출
○ 대지급금 지급액 대비 환수 실적 저조	○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액 상향 및 지급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액 증가 ○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 증가

②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u>수입 측면</u>에서는 ①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②부담금 요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③「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적인 사무처리 비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130] 이를 활용하여 기금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고 보임.

먼저, 대지급금 환수 실적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변제금 확보를 위한 보전조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지급금 환수 관련 가압류 및 배당요구 등 보전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당해연도 지급액 중 보전조치 신청금액의 비율은 2019년도 지급분은 62.4%에 달하나 2020년 지급분부터 3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3년 지급분의 경우 26.5%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지급금 환수 관련 보전조치 실적]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지급금	지급건수[1]	21,894	24,975	24,071	22,271	24,183
	지급액(A)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보전조치[2]	건수	4,459	5,659	5,318	4,739	4,337
	신청금액(B)	287,125	190,966	189,836	168,901	182,225
비율(C=B/A)		62.4	32.9	34.7	31.5	26.5

1) 당해연도 지원된 사업장 수(동일 사업장에 연도를 달리하여 지급할 경우 복수 산정)
2) 가압류 및 배당요구건
3) 당해연도 대지급금 지급분에 대한 보전조치 액수로 기간 경과에 따라 보전조치액 변동
4) 자료: 고용노동부

130)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금 요율에 관하여는 그간 경기변동에 따라 부담금 요율이 조정되었고 2000년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현재 0.06%보다 높은 0.08%에서 부담금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요율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6년
0.03%	0.09%	0.05%	0.03%	0.04%	0.08%	0.06%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8년 이후 8,200만원에서 증액된바 없는데, 동 기금의 운영비는 2008년 93억 7,600만원에서 2023년 192억 7,700만원으로 99억 100만원(105.6%) 증가한 만큼 운영비 상승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출 측면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조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제도별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부정수급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간 부정수급액은 2019년 2억 5,200만원에서 2023년 34억 9,200만원으로 32억 3,900만원(1,28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31]

131)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사업장별 대지급금 지급 규모, 체불금액 대비 대지급금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설명임.

[2019년~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지급금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간이대지급금	291,090	469,715	467,210	500,288	647,271
	도산대지급금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부정수급액		253	220	107	443	3,492
	간이대지급금	191	186	101	438	3,452
	도산대지급금	62	33	6	5	40

* 자료: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어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앞선 논의를 정리하면, ① 수입 측면에서는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제고하고, 기금운영비 증가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하거나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지출 측면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대지급금 지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

구분	원 인	개선방안
수입	○ 대지급금 지급액 대비 환수 실적 저조	○ 보전조치 강화 등을 통한 대지급금 환수 실적 제고 ○ 사업주 부담금 요율 조정 ○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 기금운영비 증가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지출	○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 상향 및 지급요건 완화에 따른 지급액 증가 ○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 증가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대지급금 지급 억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개정 「임금채권보장법」(2024. 1. 개정) 시행에 따라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체불 사업주의 납부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며,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대지급금 지급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다만,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의 요건이 삭제되는 등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가 이루어진바 있어 향후 체불청산지원 융자 지급 소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사이에 급속도로 여유자금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수지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 대지금금 지급분 환수율 제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사업주 부담금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계획변경 후 국회 보고 누락 부적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주요항목[132] 지출금액에 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2/10(금융성 기금의 경우 3/10) 이하인 경우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133]

다만,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국가결산보고

---

132)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13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서에 명시하여야 함.[134]

2023년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 변경하였음에도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023년 임금채권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례]

(단위: 백만원)

일자	세부사업명	당초계획	변경액	계획현액	변 경 사 유
9.12.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7082-203>	3,288	1,550	4,83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소송업무 수행에 따라 소송제기 사건 급증으로 소송비용 마련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9704-973>	176,606	△1,550	175,056	
9.13.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3054-304)	48,333	34,704	83,037	최근 임금체불 등의 증가로 인해 융자 수요 증가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9704-973>	175,056	△34,704	140,352	
10.26.	대지급금 지급 <3051-300>	559,155	127,773	686,928	○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재원 마련
	무료법률 구조지원 <3052-302>	10,386	2,907	13,293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9704-973>	140,352	△130,680	9,672	○ 체불액, 체불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무료법률구조지원 수요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

* 자료: 고용노동부

13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제출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가 총 9회 확인되었는데[135]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 미숙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미제출한 것에 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5) 2019년 4분기(1회), 2020년 1분기, 3분기, 4분기(3회), 2021년 3분기, 4분기(2회), 2022년 4분기(1회), 2023년 3분기, 4분기(2회)

(6) 근로복지진흥기금 총괄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 생계안정 등을 위한 융자 및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임.[136]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분과 복권기금 전입금이고, 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계획액 4,121억원 대비 136억원(3.3%) 초과한 4,257억원으로, 여유자금운용분과 공자기금 예탁·회수분, 내부 계정간 전출·전입금을 제

136)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외한 수입액은 2,480억원, 지출액은 2,512억원임.

[2023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결산	
수입액	4,814	4,121	4,257	5,011
민간융자금회수	1,340	1,546	1,519	1,854
복권기금전입금	1,598	644	644	635
계정간 전입금	107	237	202	354
기타 재산수입금	341	247	318	311
공자기금회수금	-	-	-	500
공자기금이자수입	-	10	3	20
여유자금회수금	1,430	1,436	1,572	1,338
지출액	4,814	4,121	4,257	5,011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232	1,500	1,650	885
신용보증대위변제금	283	336	336	302
기타 사업지출금	386	377	375	563
기금운영비	223	205	150	159
복권기금전출금	12	2	2	97
계정간 전출금	107	237	202	354
공자기금예탁금	-	500	500	500
여유자금운용금	1,572	964	1,043	2,152

*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대책사업계정 내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 신용보증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할 수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137]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참조

137)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 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퇴직연금운영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복지계정**, 근로자의 생활자금대출 등의 보증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사업계정**,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대책사업계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관한 자금은 독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자금은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임.[138]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8)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 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계정별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계정명	주요사업	2023년 결산	
		계획액	지출액
중소복지계정	생활안정자금(융자)	170,000	165,030
	근로복지기금지원	19,209	19,206
	퇴직연금사업운영	15,624	8,675
신용보증사업계정	신용보증대위변제	33,550	33,550
실업대책사업계정	-*	-	-

* 2023년 계획 및 지출 없음

**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 계정별로 사업비 지출을 살펴보면, 실업대책사업계정의 경우 2020년에는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35억원, 2021년에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으로 513억 8,900만원을 집행한 외에 2019년, 2022년, 2023년은 사업비가 집행된 실적이 없음.

[2019년~2023년 계정별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계정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소복지계정	111,427	231,592	179,053	261,769	202,545
신용보증사업계정	19,597	16,031	19,156	28,343	33,550
실업대책사업계정	-	3,500	51,389	-	-

* 기금운영비, 기금간 거래(공자기금예탁, 복권기금전출 등), 계정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등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대책사업은 경제·사회적 위기상황 신속대응,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계정을 운용하고 있고, 향후 여유자금 잔여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통해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①동 계정은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계정으로 타 기금 예탁을 바람직한 자금 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②2020년 이후 동 계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약 400억원 내외(여유자금회수분)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운영이 곤란할 수준의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유자금 규모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9년~2023년 실업대책사업계정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	자체수입	2,105	31,735	29,432	1,143	507
	공자기금회수	435	34,369	24,078	-	-
	여유자금회수	33,649	2,189	40,793	42,914	44,057
	계	36,189	68,293	94,303	44,057	44,564
지출	사업지출	-	3,500	51,389	-	-
	공자기금예탁	34,000	24,000	-	-	24,000
	여유자금운용	2,189	40,793	42,914	44,057	20,564
	계	36,189	68,293	94,303	44,057	44,564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유휴자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실업대책사업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률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발굴 필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법령상 용도에 따라 수행 사업을 분류하면, 근로자 생활안정 및 학자금 융자(「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2호·제3호), 신용보증 지원(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제7호), 퇴직연금사업 등 노후생활지원(제17호)에서 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업별 지출과 법령상 용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액	용도
생활안정자금(융자) (3062-306)	165,030	근로자 생활안정, 학자금 융자
신용보증대위변제 (3064-308)	33,550	신용보증 지원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3061-500)	7,848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로복지기금지원 (3061-322)	19,206	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지원 (3061-301)	1,15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
	407	문화·체육활동 지원
퇴직연금연구센터운영 (3061-308)	222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 경비
퇴직연금사업운영 (3061-318)	8,675	퇴직연금 사업 등 노후생활 지원

* 2023년 지출액 기준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주된 수입이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확대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곤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융자, 신용보증, 퇴직연금 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우리사주제도 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비 등 법률에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139]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기준으로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2019년 1,192억 1,700만원에서 2023년 1,042억 6,100만원으로 149억 5,600만원(12.5%) 감소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 타 기금에 비해서 여유자금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출 규모가 큰 사업은 수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 확산과 같은 법정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139) 동 기금의 법령상 용도에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 신축, 임차비용)'의 융자가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보험기금	7,249,265	6,577,360	5,492,404	6,231,491	7,742,05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9,061,073	18,952,091	19,304,553	20,770,086	22,449,8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910,105	967,341	1,099,564	1,105,144	1,135,584
임금채권보장기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근로복지진흥기금	119,217	127,314	142,966	157,199	104,261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융자 사업, 신용보증 사업, 퇴직연금 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고, 법률상 용도와 여유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과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범위 확대·개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금의 법률상 사용처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에도 열거된 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금이 설치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컨설팅 등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형태로 사업을 구상·운영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의 사업 범위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업을 통해 우리사주, 선택적복지, 퇴직연금, 근로자복지프로그램(EAP),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140)]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업 개요]

<table>
<tr><td>목적</td><td colspan="3">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지원하여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td></tr>
<tr><td>사업대상</td><td colspan="3">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td></tr>
<tr><td rowspan="4">지원내용</td><td colspan="3">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노무·세무·법무) 상담사를 통해 현장상담 무상제공</td></tr>
<tr><td colspan="3">상담유형</td></tr>
<tr><td>기본</td><td>심화</td><td>도입</td></tr>
<tr><td>▪신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설명</td><td>▪기본상담 연계 또는 기업이 별도 신청 시 제도에 대하여 사업장 진단(설명, 인터뷰),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 상담</td><td>▪상담을 통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금법인 설립까지 필요한 절차 일체 지원</td></tr>
<tr><td>▪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td><td>▪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td><td>▪1기금법인 설립 시 1회</td></tr>
<tr><td>예·결산*</td><td colspan="3">2억 6,500만원 중 1억 3,500만원(50.9%) 집행</td></tr>
</table>

* 2022년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여유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열거된

140) 근로복지공단은 실적 미비에 따라 2022년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설명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 목적 외 지출 주의 필요 등>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5조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도 해당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므로,[141] 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정해진 목적 외에 계획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142]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예산 중 2,800만원을 기관운영경비로 지출하여야 할 근로복지연구원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하였는데,[143] 이는 세부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을 운영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것임.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내 운영지원 목적 지출 내역]

일자	액수	지출처	내용
2023-09-22	11,871,200	근로복지연구원	근로복지지원사업 등 통계 분석 프로그램 구매
2023-10-17	12,650,000	근로복지연구원	근로복지지원사업 등 통계분석 프로그램
2023-10-17	3,960,000	근로복지연구원	근로복지지원사업 등 통계분석 프로그램

14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2) 기업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일종의 사내복지제도임.

14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각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구축하기 위해 동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정보시스템 및 퇴직연금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 예산 중 4,900만원을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여야 할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임.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 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출 내역]

일자	액수	지출처	내용
2023-05-25	22,260,000	근로복지공단	2023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2023-05-25	16,140,000	근로복지공단	2023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2023-06-26	10,600,000	근로복지공단	2023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지출은 각목명세서상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에 EAP 전문가 상담료 4,900만원이 편성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운영비는 세부사업인 근로자복지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통해 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동 사업에 투입되는 계획액은 근로자복지지원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2023년 기금운용계획 내역]

□ 근로자복지지원(3061-301)
- EAP 안내·홍보 : 1,440만원
- EAP 운영 : 10억 3,100만원
- EAP 담당자 직무 교육 : 1,390만원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3061-500)
- EAP 전문가 상담료 : 4,900만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성된 계획액을 목적 외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위탁 운영비가 단일한 세부사업을 통해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퇴직연금사업운영(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2010년 ~, 직접)은 퇴직연금 도입·운영이 어려운 30인 이하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56억 2,400만원 중 86억 7,500만원(55.5%)이 집행되었고, 69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퇴직연금사업운영**	15,624	15,624			15,624	8,675 [8,675]	-	6,949	22,011
▪ 계약형 퇴직연금	2,314	2,312	-		2,312	2,303 [2,303]	-	9	1,832
▪ 중소기업퇴직 연금	13,310	13,312	-		13,312	6,372 [6,372]	-	6,940	20,179

*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에는 ①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C·IRP제도[144]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형퇴직연금** 사업, ②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14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Plan)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Plan)와 차이가 있음.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률 제고 필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①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되고,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퇴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중퇴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들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운용을 관리[145]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퇴직급여 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규약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용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업주·근로자 각 각 사업주 부담금의 10%(월 268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 자료: 고용노동부

1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7%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79.1% 대비 55.4%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규모		도입 대상 사업장	도입사업장	도입률
	5인 미만	874,426	92,172	10.5
	5~9인	396,649	130,569	32.9
	10~29인	233,115	133,514	57.3
~29인		**1,504,190**	**356,255**	**23.7**
	30~49인	40,605	29,648	73
	50~99인	29,111	23,496	80.7
	100~299인	15,175	13,241	87.3
	300인 이상	5,568	5,117	91.9
30인~		**90,459**	**71,502**	**79.1**
합계		1,594,649	427,757	26.8

* 통계청(2022),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중퇴기금제도는 위와 같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①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사용자가 일시에 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마련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적은 금액의 연금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②대규모 자산을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연금 적립금의 장기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제도 도입 시부터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 후 3년간 퇴직연금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고,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사업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부터 5년간 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중퇴기금제도 가입자 확대 정책을 통해 2022년 기준 적립액 324억원, 가입사업장 수 2,443개소에서 2023년 적립액 4,734억원, 가입사업장 수 13,685개소로 가입 실적을 제고하였으나 전체 가입 가능 추정 기업 수 150여만개소[146] 중 0.9% 가입에 그쳤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실적]

(단위: 개소, 명, 억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입대상사업장 수	1,504,190	-	-
가입사업장 수	2,443	13,685	17,380
적용근로자 수	9,861	65,123	79,687
적립금액	324	4,733	5,926

* 2023년, 2024년 가입대상사업장 수는 통계청 통계 미생산으로 확인 불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 9. 가입 시작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중소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표 지원 대상 인원 87,072명에 대

146) 통계청(2022),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함.

하여 기타지원금 9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1,844명에 대하여 23억 3,000만원(24.9%)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데 그쳤음.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집행	집행률	비고
기타지원금	**9,240**	**2,303**	**24.9**	중소사업주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일반수용비	1,841	2,653	144.1	-
공공요금 및 제세	2,211	721	32.6	-
일반용역비	-	561	-	콜센터 운영 등
기타운영비	-	113	-	가입유도 성과급지급
국내여비	16	16	100.0	-
사업추진비	4	4	100.0	-
계	13,312	6,372	47.9	-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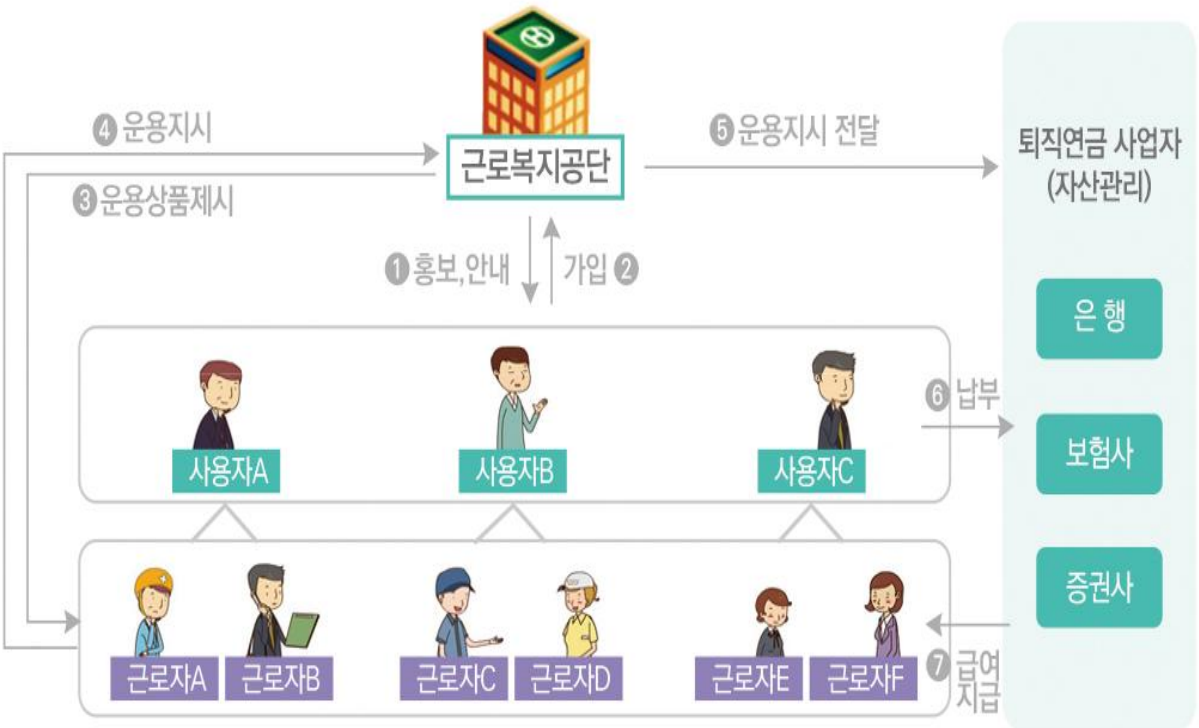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가입실적 및 지원금 집행실적에 관하여 사업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사업비를 계획·편성하였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계획 대비 제도 가입실적이 낮아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2024년 현재 중퇴기금제도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요건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 미만 근로자로 완화하였고, 경제·직역단체 등과의 업무 협약, 현장 설명회 등 실효성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적극적인 중퇴기금제도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운영 지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퇴기금제도 편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원활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한 중소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금운용지시를 전달하는 운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적으로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는 중퇴기금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사업 운영체계도(DC,IRP)]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지원 서비스 가입 사업장 수는 76,668개소이고 대상자는 398,248명이며 적립금은 4조 3,456억원으로 중퇴기금제도와 비교할 때 적립금 기준 약 10배에 이르는 규모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퇴직연금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 중 99.8%(4조 3,355억원)는 DC형, 0.2%(101억원)는 IRP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상품 기준으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가입된 경우가 전체 금액에 96.5%에 이르는 등 수익률이 높기 어려운 자산운용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는 만큼 중퇴기금제도 전환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임.

[퇴직연금지원 서비스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DC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가입상품 기준	43,355	100.0	101	100.0	43,456	100.0
원리금보장형	41,830	96.5	93	92.1	41,923	96.5
실적배당형	1,525	3.5	8	7.9	1,533	3.5

* 2023년 기준

특히, 2023년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한 사업장 근로자 중 중퇴기금제도로 가입을 전환한 실적을 살펴보면, 중퇴기금제도로 편입된 가입자 수는 29,138명에 적립금은 2,884억원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 수 398,248명의 7.3%, 적립금 4조 3,456억원의

6.6%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전환 수요를 발굴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둘째, 중퇴기금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147]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사업장 근로자가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할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중심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타 퇴직급여제도에서 중퇴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148]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담금 감액이나 사용자단체(경제·직역단체)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중퇴기금제도 가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조치는 사용자의 중퇴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근로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장래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되는 근로자로서는 중퇴기금제도의 자금운용결과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퇴기금제도가 집약적·장기적·전문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퇴직연금 운영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7)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1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산업안전본부

(1)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2023년 ~, 직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하고(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료를 수사하기 위한 분석장비를 도입하고 분석실 설치하며(중대재해수사의 과학화), 증거확보를 위한 기반과 중대재해 홈페이지를 구축(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은 46억 2,900만원으로 44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산업안전 감독역량강화	4,629	4,629	-	-	-	4,629	4,406	25	198	2,282
▪ 산업안전감독관직무교육	414	414	-	-	-	414	412	-	2	408
▪ 중대재해수사의 과학화	2,521	2,521	-	-	-	2,521	2,418	-	103	986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1,694	1,694	-	-	-	1,694	1,576	25	93	888

* 자료: 고용노동부

<유류비 과다 계상과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 저조 문제>

내역사업인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은 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수사 지원 차량을 도입·운행하고, ②각 지청마다 조사실과 조사실 내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며, ③중대재해발생 현황을 공개하는 중대재해 통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6억 9,400만원이고 이 중 15억 7,600만원(93%)을 집행하였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계약 잔금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조사는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재해가 종종 발생하므로 현장 조사 및 목격자 진술 확보[14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산업재해 현장의 환경이 열악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조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공간이 있는 지청과도 떨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특히 현재 지방관서에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패트롤카가 5~7인승 승용차로서 수사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고 영상 분석 등 조사를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사고조사 장비 등이 탑재되어 이동식 수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사차량[150] 4대[151]를 제작·구매하기 위

149)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150) 수사지원 차량은 대형 밴인 쏠라티임
151)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한 4개 지청(경기지청, 중부청, 부산청, 대전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

하여 총 5억 3,200만원[152]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유류비 2,000만원[153]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유류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4대의 수사지원 차량이 총 30회를 운행함으로써 예산액의 6.5%인 13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음.

[수사지원 차량 운행일지]

(단위: km)

연번	지방관서	운행일자	운행목적	목적지	운행거리
1	부산청	2023-08-11	재해조사	부산 연제구	7
2	대전청	2023-08-14	사업장 감독	충남 논산시	106
3	경기지청	2023-08-18	재해조사	경기 군포시	19
4	부산청	2023-08-24	수사협의	부산 연제구	6
5	경기지청	2023-09-06	재해조사	경기 광명시	35
6	중부청	2023-09-11	재해조사	경기 동두천시	170
7	대전청	2023-09-11	사건조사	충남 서천군	305
8	중부청	2023-09-14	사건조사	경기 양주시	208
9	대전청	2023-09-14	재해조사	충남 논산시	98
10	대전청	2023-09-15	사건조사	충남 아산시	271
11	경기지청	2023-09-22	재해조사	경기 시흥시	32
12	중부청	2023-09-25	재해조사	경기 구리시	130
13	부산청	2023-09-27	디지털포렌식	부산 사하구	50
14	부산청	2023-10-04	디지털포렌식	부산 사하구	48
15	중부청	2023-10-20	사건조사	경기 구리시	156

함

152) 차량 1대 단가를 1억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최종 집행금액은 5억 1,900만원임

153) 차량 1대에 500만원을 계상함

16	경기지청	2023-10-20	사건조사	경기 용인시	85
17	대전청	2023-10-25	재해조사	충남 보령군	203
18	부산청	2023-11-03	사건조사	경남 고성군	171
19	중부청	2023-11-06	PSM평가	경기 이천시	385
20	부산청	2023-11-09	사건조사	부산 부산진구	4
21	부산청	2023-11-15	검찰협의	경남 창원시	95
22	대전청	2023-11-16	검찰협의	대전 서구	2
23	부산청	2023-11-17	검찰협의	경남 창원시	84
24	부산청	2023-12-05	사건조사	경남 창원시	91
25	부산청	2023-12-06	사건조사	부산 남구	22
26	대전청	2023-12-12	재해조사	세종	110
27	부산청	2023-12-14	검찰협의	경남 창원시	92
28	부산청	2023-12-20	검찰협의	충남 공주시	66
29	대전청	2023-12-20	검찰협의	충남 공주시	66
30	대전청	2023-12-21	검찰협의	충남 아산시	205

* 자료: 고용노동부

유류비의 집행부진은 수사지원 차량의 운행이 저조한 데서 비롯된 바, 경기지청이 총 4회를 운행하는데 그쳤고, 중부청은 5회, 대전청은 9회, 부산청은 12회를 각각 운행하였음.

한편 이러한 집행 부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차량 1대당 월 약 40만원 정도 유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여 유류비로 2,000만원[154]을 편성하였으나, 기본 차량의 출고 및 개조까지 상당한 기간이[155]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지원 차량이 기성품이 아닌 이

154) 2,000만원 = 4대 × 12개월 × 41.6만원
155) 2023년 5월 31일 기본차량이 출고되었고, 개조작업을 거쳐 8월부터 운행이 시작됨

상 개조작업을 통하여 제작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실적인 차량운행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유류비를 추계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못하였음.

또한 운행일지에 따라 수사지원차량의 실제 운행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하더라도 지청당 월 1회에서 최대 2.4회가 운행되었고, 수사지원 차량의 본래 기능과 관련 없는 수사 협의나 검찰 협의의 용도를 제외하면 월 1회 정도로 운행되어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 1대 당 1억 3,000만원이 넘는 차량이 월 1회 운행됨으로써 '산업재해 현장조사 여건 개선'이라는 수사지원차량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수사지원차량은 15인승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통상 운행하는 차량보다 차량 높이 및 길이가 커서 운전부담이 높아 운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행상의 제약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하면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 운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2024년에도 같은 기종의 수사지원차량 2대가 현재 제작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시급히 운행률 저조의 원인을 해결하고, 운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156] 강구가 시급한 것으

156) 수사지원 차량 이용률의 획기적인 상승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2025년 예산은 삭

로 생각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시행단계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집행잔액으로 예산과 다른 자산 구입의 문제>

산업재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변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청 업무공간과 독립된 전담 조사실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예산에 전국 43개 지청에 조사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비 1억 2,900만원[157]을 편성하였고, 43개 조사실 내 설치되는 영상녹화장비 구매 예산 2억 5,800만원[158]과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전산장비 구매예산 2억 1,500만원[159]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음.[160]

그런데 2023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20개의 조사실이 설치되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예산 중 절반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82%인 1억 600만

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57) 43개 지청 × 30,000,000원
158) 43개지청×6,000,000원
159) 43개지청×5,000,000원
16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국회확정)(Ⅱ)973페이지 참조

원이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의 90%가 넘는 4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실제 공사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고, 조사실 내 실제로 필요한 사무기기[161]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업무 효율을 위하여 송치 서류를 넘버링하는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편성 시점부터 실 집행까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내 조사실당 공사비가 약 77%가 증가하였고, 조사실 내 사무장비 구입액도 약 47%가 증가한 점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유사 사례는 중대재해 통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국회에서도 확정된 2023 회계연도 예산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3억 6,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자산취득비 중 2억 9,3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노트북 구매에 집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의 서버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해당 집행잔액과 수사 관련 노트북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합친 총 3억 9288만원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 조사나 사업장 근로감독에 활용하기 위한 터치디스플레이가 지원되는 노트북[162] 159기를구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른 자원을 활용한 예산 절감으로 예산집행의

161)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무기기가 책상, 캐비닛, 노트북, 프린터, 천공기 등이라고 설명함
162) 2 in 1, 기종은 Microsoft Surface Pro 8로 단가는 2,471,000원임.

효율성을 제고한 점과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하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기 지원은 바람직하나, 사업 축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절약집행하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예산 집행을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재보험급여**' 사업(1964년 ~, 위탁)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7조 7,923억 1,700만원 중 7조 2,849억 4,100만원(93.5%)이 집행되고, 5,07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7,792,317	7,792,317	-	7,792,317	7,284,941	-	507,376	7,876,091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급여는 8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요양 종료 후 지급하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가 있음.

[산재급여의 종류]

종류	내용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간병료 포함)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46,036원의 70%, 최저임금(1일 76,96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노무제공자 1일 41,150원)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1급(1,474일분) ~ 14급(55일분)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장례비	· 산업재해로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금액 17,241,680원, 최저금액 12,460,160원)
직업재활급여	·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이외 기타 훈련은 연 600만원 이내) 훈련수당(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 2023년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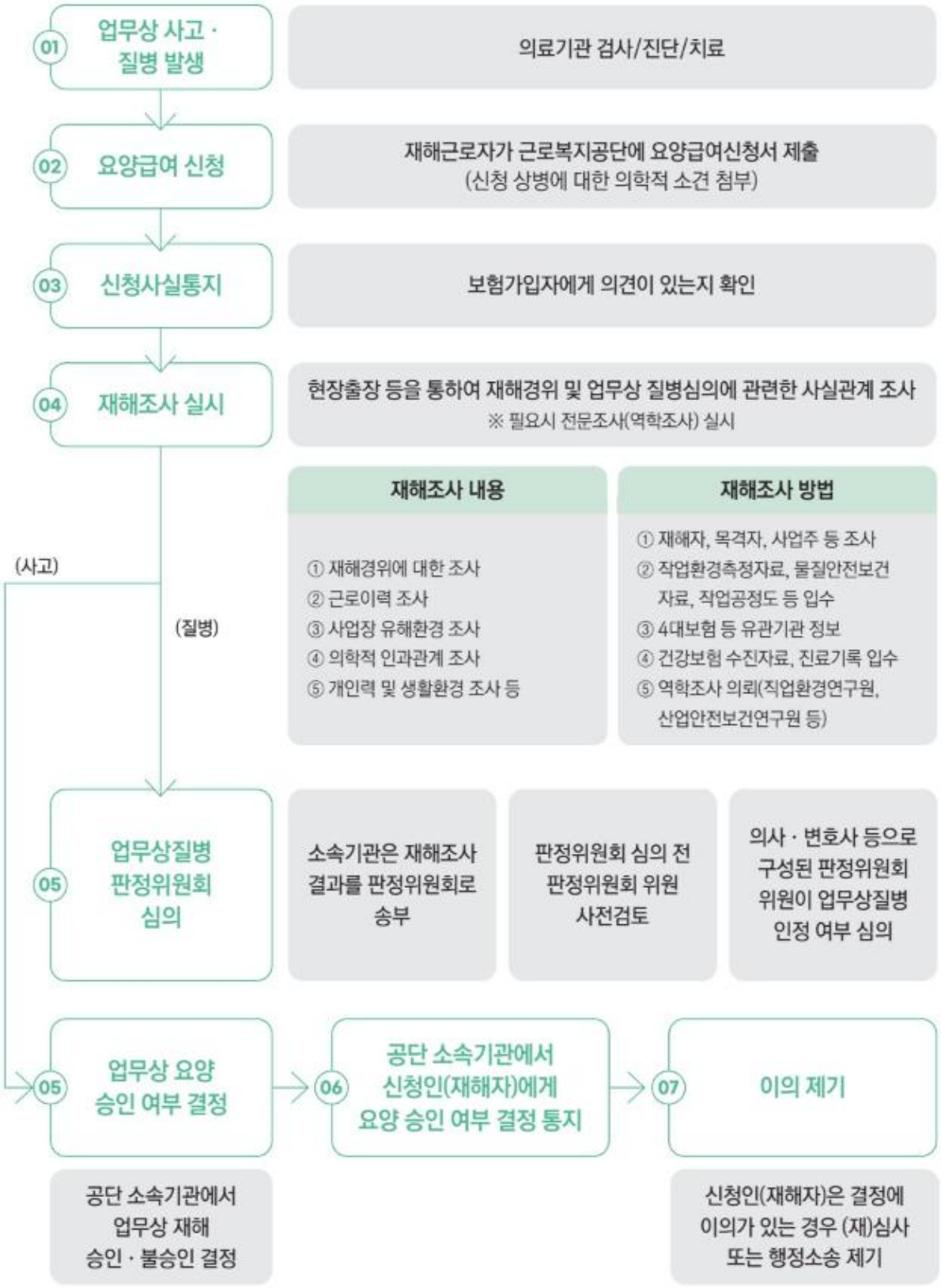
업무상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 심사 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업무상 재해는 사고에 의한 경우와 질병에 의한 경우로 분류됨.

①**업무상 사고**의 경우 공단 직원이 관련자(사업주, 동료, 재해근로자 등) 진술서, 현장출장, 의료기록 확인을 통한 재해경위 조사 및 근로이력 확인 등의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를 바로 결정하나,

②**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며,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또는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문헌검토 등의 전문적인 조사인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의 조사 절차]


01 업무상 사고 · 질병 발생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02 요양급여 신청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03 신청사실통지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
04 재해조사 실시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조사(역학조사) 실시
재해조사 내용
①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② 근로이력 조사
③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④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⑤ 개인력 및 생활환경 조사 등
재해조사 방법
① 재해자, 목격자, 사업주 등 조사
② 작업환경측정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공정도 등 입수
③ 4대보험 등 유관기관 정보
④ 건강보험 수진자료, 진료기록 입수
⑤ 역학조사 의뢰(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사고)
(질병)
05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소속기관은 재해조사 결과를 판정위원회로 송부
판정위원회 심의 전 판정위원회 위원 사전검토
의사 ·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위원이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심의
05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06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07 이의 제기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 · 불승인 결정
신청인(재해자)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소음성 난청의 재해조사 기간 단축 필요>

최근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사건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을 살펴보면, 2019년 40.9일에서 2023년 55.0일로, 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건은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일로 늘어났음.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재 평균 처리기간*		40.9	39.1	43.4	47.6	55.0
	업무상 사고	16.1	15.5	15.3	15.9	16.5
	업무상 질병	**186.0**	**172.4**	**175.8**	**182.0**	**214.5**

*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 자료: 고용노동부

질병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근골격계질환(45.6%), 소음성 난청(28.9%), 기타질병(13.5%) 순으로 처리사건 수가 많은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리기간도 평균 처리기간인 214.5일보다 119.2일 긴 333.7일로 나타나고 있어 난청의 심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단이 타 질병에 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019년~2023년 질병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단위: 건, 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질병		건수	18,266	18,634	24,871	28,796	**31,666**
		기간	186.0	172.4	175.8	182.0	**214.5**
	근골격계	건수	9,426	9,925	12,449	12,491	14,448
		기간	136.5	121.4	113.0	108.2	146.0
	뇌심혈관	건수	2,694	2,380	2,276	1,922	2,035
		기간	155.6	132.4	120.6	113.8	122.2
	정신질병	건수	313	561	696	657	684
		기간	242.8	209.5	202.0	188.2	205.6
	직업성암	건수	367	487	576	720	1,056
		기간	309.3	334.5	301.9	281.0	289.5
	소음성 난청	건수	2,962	3,035	5,630	7,550	**9,152**
		기간	305.2	287.4	303.7	328.4	**333.7**
	기타질병	건수	2,504	2,246	3,244	5,456	4,291
		기간	239.0	239.0	205.2	158.6	217.5

*자료: 고용노동부

소음성 난청 사건은 재해조사 단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특진의료기관[163] 등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장해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장해심사를 거친 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

1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여를 지급하고 있는데,[164] 주로 청력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청력검사와 소음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을 확인하는 소음노출력 조사가 주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난청 사건 심사 단계]

<table>
<tr><th>접수 및 서류검토</th><th colspan="2">재해조사
(특별진찰 의뢰)</th><th>장해심사</th><th>장해보상</th></tr>
<tr><td>• 장해급여청구서 접수
• 4대보험 취득이력
• 건강보험 수진이력
• 특수건강검진자료
• 작업환경측정결과</td><td colspan="2">• 청력검사
• 소음노출력 조사
– 노출수준, 노출기간</td><td>• 심사구분
– 자문의사, 직영병원, 장해판정위원회
• 심사내용
– 난청발생 원인
– 업무관련성 판단
– 청력장해상태 판단</td><td>• 장해등급 결정
–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4급~14급 결정
• 장해급여 지급
–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 × 평균임금</td></tr>
<tr><td></td><td><청력검사></td><td><소음노출력></td><td></td><td></td></tr>
<tr><td>공단지사</td><td>직영병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td><td>직영병원</td><td>공단지사, 직영병원</td><td>공단지사</td></tr>
</table>

특별진찰 중 청력검사는 귀의 청력 손실이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내이염, 열성 질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청력 손상의 정도와 유형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청력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의 인력 기준과 청력검사실 및 검사장비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164) 소음성 난청은 치료의 방법이 없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조사 단계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경유하고 있지 않음.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20개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8개소, 외부 특진의료기관 112개소)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음.

소음노출력 조사는 작업장 내 소음 노출의 수준과 노출 기간을 확인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의뢰를 거치지 않으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11개소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음.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청구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장해급여청구서 접수건수가 2019년 4,534건에서 2023년 17,182건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고, 미처리건수도 2023년 누적건수 16,000건을 초과하였는데, 청력검사 기관수는 2019년 74개소에서 2023년 120개소로 62.2% 증가하였고 소음노출력 조사 기관은 2019년 8개소에서 2023년 11개소로 3개소(37.5%) 증가한 것에 그쳤음.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접수 및 처리 현황 및 검사 기관 현황>

(단위: 건, 개소)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해급여청구	접수건수	4,534	9,090	9,840	12,590	17,182
	처리건수	3,852	4,823	7,952	10,531	13,542
	미처리 누적건수	-	7,669	9,762	12,045	16,059
조사기관 수	청력검사*	74	88	109	108	120
	소음노출력	8	8	9	11	11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병원으로 기준 완화

** 자료: 고용노동부

같은 기간 청력검사와 소음노출력 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청력검사 기간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음노출력 조사 기간은 최대 2배 이상(2020년 70일 → 2023년 171.3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음노출력 조사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조사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청력검사 및 소음노출력 조사 기간]

(단위: 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력검사*	256.4	224.7	219.9	246.0	239.5
소음노출력검사	112.0	70.0	95.2	143.2	171.3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과 외부 특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소요일수

** 청력검사와 소음노출력검사는 각기 별개로 실시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으로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위탁하고 부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165]를 통해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등 보험급여 지급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특별진찰이 부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재차 확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력 조사의 외부 위탁에 따른 부정의 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165)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또는 과징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및 제44조), 부당이득의 징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정수급자 형사처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및 제128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난청 사건에 관한 소음노출력 조사를 신뢰성 있는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등 난청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재 사건의 신속한 판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산재사건 장기심사 기준 마련 등 산재 심사의 신속성 강화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7일의 기간에는 공단의 재해조사 기간이 제외되어 있어[166]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재 처리기간의 장단(長短)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산재사건의 접수일부터 결정일까지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은 214.5일로 나타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7일의 기한은 법정기한이기는 하나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는 곤란하다고 볼 것임.

---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019년~2023년 산재급여 처리소요일수 현황]

(단위: 건, 일)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처리건수	124,988	123,921	141,727	150,862	162,947
	소요기간	40.9	39.1	43.4	47.6	55.0
사고	처리건수	106,722	105,287	116,856	122,066	131,281
	소요기간	16.1	15.5	15.3	15.9	16.5
질병	처리건수	18,266	18,634	24,871	28,796	31,666
	소요기간	186.0	172.4	175.8	182.0	214.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법정기한 내 처리실적을 사용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로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활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정기한(7일)이 실질적인 재해조사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167]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신속성 관련 성과지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5" rowspan="2">내 용</th></tr>
<tr><th>기관</th><th>지표유형</th></tr>
<tr><td rowspan="8">고용
노동부</td><td rowspan="6">예산
성과지표</td><td colspan="5">산재사건 평균 처리일수[1]
(처리일수의 합 / 처리건수의 합)</td></tr>
<tr><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tr>
<tr><td></td><td>99.22</td><td>111.02</td><td>121.3</td><td></td></tr>
<tr><td colspan="5">법정기한 내 처리건수 비율[2]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 처리건수의 합)</td></tr>
<tr><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tr>
<tr><td></td><td>50.47</td><td>53.33</td><td>60.30</td><td>70.38</td></tr>
<tr><td rowspan="2">부처 내
성과지표</td><td colspan="5">당해 업무상 질병 처리 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td></tr>
<tr><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tr>
<tr><td>-</td><td>-</td><td>17,476</td><td>19,782</td><td>17,762</td></tr>
</table>

167) 다만, 고용노동부는 부처 내 성과지표로 '당해 업무상 질병 처리 사건 중 6개월 이내 처리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재해조사 기간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6개월이 일종의 기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기관	지표유형	
근로복지 공단	경영평가 성과지표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 비율[3]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의 합 / 처리건수의 합)

1) 2022년까지 활용 2) 2023년부터 활용 3) 고용노동부 2023년·2024년 예산성과지표와 동일
4)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양업무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고,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직업성 암, 감염병, 정신질병, 소음성 난청 등 질병별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을 두고 있으나,[168] 해당 내규에서 '재해조사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장기심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별 담당자의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근로복지공단도 업무상 질병의 유형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처리기간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만,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면서도 검사방식이나 심사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어 진단·평가 소요기간이 타 질병에 비해 비교적 일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병군(群)에 대하여는 각 진단·평가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기심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임.

168)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장기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우선 검진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선 회부 등 심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 체계적인 처리실적 관리 등 실효적인 심사기간 단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임.[169][170]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건의 장기 심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수립하며, 우선 심사 등 장기심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시행할 필요가 있음.

169) 법원의 경우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라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장기미제사건을 별도로 분류(소액사건 1년, 1심 본안 2년 6개월, 항소심 1년 6개월 초과 시)하여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기록한 사건기록카드를 매년 2월, 8월 두 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법원별로 작성하는 등 장기사건 관리 지침을 두고 있음.

170) 검찰청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연사건으로 보고 있고,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장기사건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재병원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4-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재병원 지원**' 사업(1995년 ~, 출연)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산재병원 노후시설의 개·보수, 의료·재활장비 교체·보강, 재활전문센터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324억 3,100만원 중 324억 2,100만원(99.9%)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재병원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산재병원 지원**	32,431	32,431	-	32,431	32,421 [32,421]	-	10	32,762
▪ 노후시설개선	5,258	5,258	-	5,258	5,258 [5,258]	-	-	1,686
▪ 의료장비현대화	3,784	3,784	-	3,784	3,784 [3,784]	-	-	3,784
▪ 재활전문센터 지원	4,491	4,491	-	4,491	4,491 [4,491]	-	-	6,938
▪ 산재병원본부 운영지원	4,535	4,535	-	4,535	4,535 [4,535]	-	-	4,473
▪ 울산병원신축	14,363	14,363	-	14,363	14,353 [14,353]	-	10	15,681
▪ 전북권 산재병원	-	-	-	-	-	-	-	200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① 요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

후시설개선 사업, ② 내구연한 경과 의료·재활장비 교체 등을 위한 **의료장비현대화** 사업, ③ 직업재활 등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활전문센터 지원** 사업, ④ 산재병원 본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상비용을 지원하는 **산재병원 본부운영 지원** 사업, ⑤ 울산지역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울산병원 신축** 사업이 있음.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활전문센터 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집중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기 직업복귀를 지원하려는 재활전문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은 44억 9,100만원이었고 전액 집행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중 특정 상병에 대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음.

집중재활치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병일·수술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따라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집중재활치료 지원 요건]

상병명	대상
뇌혈관 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척추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견관절·고관절·슬관절	
완관절·수부질환	
족관절·족부질환, 주관절	

*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 제외,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함

**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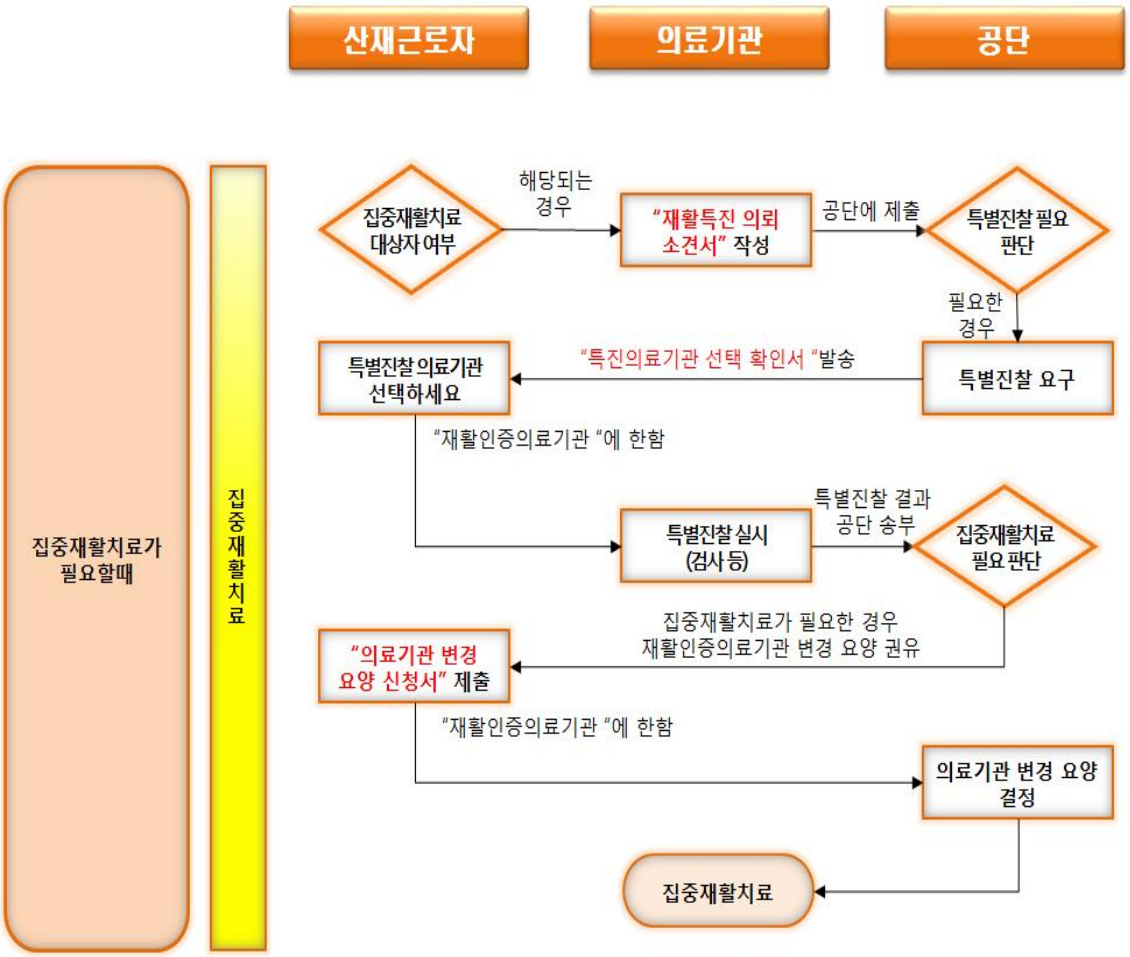
집중재활치료는 도수치료, 기구 운동과 일상생활동작에 관한 훈련, 보조기구 활용에 관한 훈련, 운전재활이나 인지재활 등 각종 기능회복에 관한 재활치료 등 상병별로 필요한 재활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171]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근로자가 집중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고 집중재활치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됨.[172]

171) 【참고】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조

172) 근로복지공단은 인력·시설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12개소(종합 7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개소)와 민간 의료기관 120개소(상급종합 14개소, 종합 25개소, 병원 66개소, 요양병원 15개소)로 총 13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인 51개소에 한정하여 특별진찰이 가능함.

[집중재활치료 실시 절차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재활치료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대상자 29,797명 중 1,951명(6.5%)에 대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2023년 대상자 38,888명 중 3,074명(7.9%)에 대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집중재활치료 실시인원은 전체 대상자 중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같은 기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진찰 건수도 2019년 1,778건에서 2023년 1,534건으로 축소되었음.

[2019년~2023년 특별진찰·집중재활치료 실적]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29,797	30,996	35,485	41,785	38,888
특별진찰	공단	1,666	1,305	1,421	1,696	1,521
	민간	112	20	63	99	13
	소계	1,778	1,325	1,484	1,795	1,534
집중재활치료	공단	1,378	1,593	1,888	1,972	2,456
	민간	573	547	713	670	618
	소계	1,951	2,140	2,601	2,642	3,074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건수는 2019년 112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축소되었고, 집중재활치료 실시인원도 573명에서 618명으로 7.8% 증가하는 것에 그쳐 민간영역에서의 특별진찰 및 집중재활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재활치료에 관한 정보가 재해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사건 담당자의 직접적인 권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재해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집중재활치료를 인지하고 이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요양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재해근로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 실적에 부진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집중재활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 수단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주치의가 직접 특별진찰의 신청을 권유하는 등 재해근로자의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특별진찰 건수나 집중재활치료 인원에 비해 민간 재활인증의료기관의 특별진찰 건수나 집중재활치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및 집중재활치료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 고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

구분	내용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치료	근에너지기법, 관절가동술, 근막이완술,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PNF) 기법, 멀리건 기법, 연부조직 기법 등의 여러 가지 술기를 이용
수부 집중재활치료	반흔관리, 탈감작·감각자극 훈련, 관절운동범위 증가 운동, 작업치료 도구 및 장비를 활용한 상지 근력강화, 미세동작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인지훈련 등 반복된 교육을 해서 정상적 기능 유도
척추 집중재활치료	근에너지기법, 관절가동술, 근막이완술, 고유수용성 감각신경근 촉진기법, 멀리건기법, 연부조직기법, 생체되먹이기기법, 관절가동범위 및 유연성 운동, 신경근 조절 운동,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정상 척추 구조 회복운동, 역동정 안정화 운동 등
하지 집중재활치료	연부조직 마사지, 수동·능동 관절운동, 보조근력훈련, 신경근조절 훈련, 관절가동술, 관절가동범위 증가, 근력강화, 신경근조절, 유연성 및 지구력 강화 등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	전반적인 신체기능 회복, 의지 착용 시 필요한 추가적인 신체기능 상태에 적합한 운동, 절단부 집중관리, 의지착용훈련, 가정운동프로그램 교육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	1:1 전담훈련치료(15분)과 작업치료 또는 일상생활동작훈련(15분)을 30분 단위로 실시, 절단부 집중관리, 의지착용준비, 집중의지훈련 등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	연부조직 마사지, 수동·능동 관절운동, 보조근력훈련, 신경근조절 훈련, 관절가동술, 관절가동범위 운동, 근력강화운동, 신경근조절훈련, 유연성·지구력 운동 또는 무중력 보행기 또는 매트를 이용한 보행훈련 실시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	1:1 전담훈련치료(10분)과 작업치료 또는 일상생활동작훈련(20분)을 30분 단위로 실시, 절단부 집중관리, 의지착용준비, 집중의지훈련 등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훈련	신경계 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휠체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구 사용 훈련
운전재활훈련	근골격계 질환 및 뇌손상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환경처럼 조작 훈련 가능한 운전시뮬레이터 장비에서 운전 적응 훈련
일상생활동작집중훈련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환자(뇌손상 및 근골격계 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제 과제를 수행할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생활훈련을 반복해서 수행 기술을 향상
일상생활동작보조도구훈련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환자(뇌손상 및 근골격계 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보조도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시행
인지재활훈련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훈련, 인지행동 훈련 등을 훈련 계획에 따라 시행

*자료: 고용노동부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1987년 ~, 융자)은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 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 혼례, 장례 등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57억 4,400만원 중 156억 1,700만원(99.2%)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5,744	15,744	-	15,744	15,617 [15,617]	-	127	14,299
▪ 생활안정자금융자	15,644	15,644	-	15,644	15,617 [15,617]	-	27	14,299
▪ 창업점포지원	100	100	-	100	- [-]	-	100	-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①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유족에게 긴급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 및 필요자금(차량구입·주택이전)을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과 ②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이 곤란

한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구축 및 다양한 직업복귀 경로 제공을 위해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하는 창업점포지원 사업[173]이 있음.

<융자 사유 확대를 통한 산재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필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5년 이내에 무담보 장기 저금리(연 1.25%)로 1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요]

대상	**(공통)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3년 4,434,816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기요양중인 장해 1~3급 예상자) - 장해 제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금리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한도액	1세대 당 2천만원(각 융자별 한도내 신청 가능)
상환기간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2년상환 중 선택)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담보여부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7% 개인 부담)

* 2023년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173) 2024년 폐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목적별 종류 및 한도를 살펴보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이외 차량구입비 및 주택이전비는 1,5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목적 및 한도]

융자종류	내 용	한 도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	1,000만원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취업안정자금	· 장해판정자(1~9급) 중 직업에 복귀한 후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제1순위자가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	1,500만원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제1순위자가 주택 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 (매매계약에 의한 주택취득 경우 제외)	1,500만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목적별 융자액을 살펴보면,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년~2023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목적별 융자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의료비	1,315	1,527	1,859	1,815	2,233
혼례비	1,285	981	1,103	1,313	1,197
장례비	189	172	227	407	259
차량구입비	5,873	5,780	7,569	7,159	7,716
주택이전비	3,870	3,853	3,481	4,016	3,419
사업자금	74	35	7	-	-
취업안정자금	645	1,287	1,235	926	793
합계	13,251	13,635	15,481	15,636	15,617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주택이전과 같이 특정한 생계 목적에 해당하거나 취업안정자금과 같이 취업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 사업이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융자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득 감소 여부를 중심으로 융자 지원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동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와 같이 사용 목적을 비교적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고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융자 목적도 폭넓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내용	한도
의 료 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 모 요 양 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 례 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혼 례 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자 녀 학 자 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자 녀 양 육 비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 계 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소 액 생 계 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목적을 다양화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2001년 ~, 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중소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기계·공정·장비 등을 개선·교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급·확산되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 계획현액 5,069억 7,400만원 중 4,582억 3,700만원(90.4%)이 집행되었고, 487억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6,974	506,974	-	-	506,974	458,237	-	48,737	471,792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119,707	119,707	-	-	119,707	108,348	-	11,359	95,707
▪ 안전투자혁신사업	319,880	319,880	-	-	319,880	296,339	-	23.541	322,000
▪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25,000	25,000	-	-	25,000	12,569	-	12,431	35,000
▪ 건강일터 조성지원	38,117	38,117	-	-	38,117	36,940	-	1,177	15,825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4,270	4,270	-	-	4,270	4,041	-	229	3,260

* 자료: 고용노동부

<준비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

내역사업인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은 2022년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을 산업재해 예방 국정과제[174]로 결정함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활용 중인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발굴하여 재해예방 효과 확인 후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175]으로 포함하고, 각 사업장(사업주)이 선정한 지원 희망 제품을 투자 계획 확인 단계에서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판단 금액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영세성과 신기술 정보습득 한계, 기존 작업방식의 관성으로 인하여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도입 및 활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소사업장에서[176]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이

---

174)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예방에 적극 활용하여 지원 강화

17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9조(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2.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3.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공단이 스마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시설·작업환경·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17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38조(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

확산되도록 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4개 사업장 총 2,890대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총 250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125억 6,9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 중 90%가 넘는 113억 2,400만원이 11월과 12월에 집중 집행되었음.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 예산의 월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000	월별	0	7	75	195	968	3,632	7,692
	누계	0	7	82	277	1,245	4,877	12,569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집행 부진 및 지연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확정 후 고시 개

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정[177]과 품목 발굴 등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개시가 지연되었고, 신청 사업장 중 제출 서류 누락 등 부적정 사업장에 대한 보완 조치 등으로 지원 결정이 지연되거나[178] 지원 결정 후 투자완료까지 3~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사업 초기 지원품목이 17종에 한정되어 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과정에서 4차례의 추가 공모를 진행하였고, 지속적으로 품목을 발굴하여 14종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추가로 등록하였음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동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의 추진 경과]

시 기	주요내용	비 고
3월	성능기준 마련 및 품목 발굴	17종 선정
4. 3~4. 2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차 공모	
5. 16~5. 3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차 공모	
6. 26~7. 2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3차 공모	
8월	품목 발굴 및 추가	12종 신규 등록(17종→29종)
8. 14~8. 3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4차 공모	
9. 15~10.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5차 공모	
12월	품목 발굴 및 추가	2종 신규 등록(29종→31종)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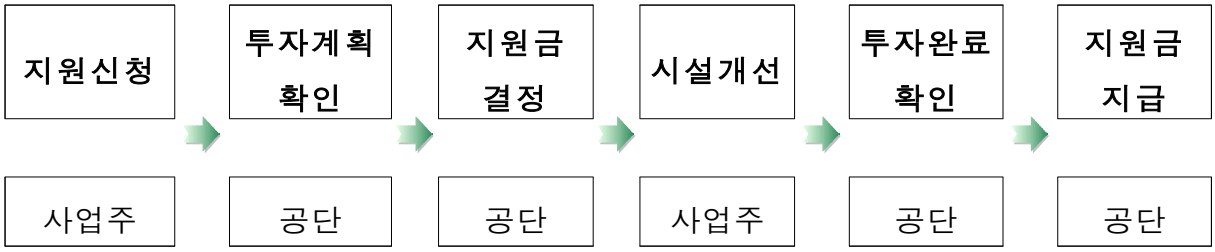
177)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20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하여 스마트안전장비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보조금 지급 한도액과 지급조건을 규정하는 제6절을 신설하였음

178) 초기 제출서류 누락 및 부적정(부실) 등이 발생하면 요건검토(10일), 서류 등 보완(30일), 자금결정(15일) 등 약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됨

다만, 동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지연은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시행 준비가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보임.

첫째, 신규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사업장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모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사업장에 따라 예산집행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179], 회계연도 시작 직후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치 및 설비의 성능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일찍 진행·완료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공모 사업 절차]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둘째, 동 사업 예산 250억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용 로봇 보유량 18,097대[180]를 기준으로 혁신확산이론[181]에 따라 지연수용층

179) 실제로 상반기까지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음.
180) 20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181) 1962년 에버랫 로저스(Everett Rogers, 1931~2004)가 자신의 저서 혁신의 확산 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대적으로 빨리 채택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혁신 성향을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범주화해 다섯 집단-혁신가(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대다수(early majority), 후기 대다수(late majority), 지연수용층(laggards)-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laggards)이 사용을 시작하는 범위인 16%를 적용한 2,890대에 스마트 안전기기 품목의 예시가 될 수 있는 3D스캐너[182]의 설치 단가 865만 원을 곱하여 산정되었음. 그런데 동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윤과 직결되기 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인 공단판단 금액의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나 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스마트 안전 장치 및 설비 품목의 종류와 단가가 매우 유동적인 점을 고려했다면 좀더 면밀하게 예산액을 추계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183]

셋째, 3차례에 걸친 품목 발굴로 총 31종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정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장에 지원된 기기는 11종[184]에 그쳐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하거나 선호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임.

[사업장별 보급된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과 수량, 지원금액[185]]

(단위: 건, 백만원)

목 록 명	지급		
	수량(건수)	금액	지원금액
총 계	1,548	12,569	8.1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631	6,620	10.5

182) 위험구역 내 근로자 존재 유무를 3차원으로 감지하는 센서
183) 2024년도 예산액은 100억원 증액된 350억원임.
184) 고정식 AI기반인체감지시스템과 이동식 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AI화재감지기를 각각 1종으로 계산함

185) 지원금액은 지원율 80%가 반영된 액수임

AI기반인체감지시스템(고정/이동식)	153	2,386	15.6
고위험기계설비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2	40	20.0
차량계 건설·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170	312	1.8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5	87	17.4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고정식/AI화재감지기)	6	52	8.7
근력보조 슈트	544	2,521	4.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보조장치	30	551	18.4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7	1	0.1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점들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스마트 안전장치 및 설비에 대한 정확한 지원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와,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된 바[186] 있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집행 부진 및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공모신청 방식을 상시 접수로 변경하여 사업이 회계연도 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결정 후 지원금액의 70%를 사업장에 우선 지급하여 예산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장의 수요 반영과 품목 지원 균형을 위해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지원품목을 선택·신청이 가능한 '자율신청품목'제도를 도입하고,[187] 사업주 부담분 20%에 대해서도 대기업(원청)이 10%를 부담

186)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251~252 페이지
187) 2024년 3월 도입

하도록 하는 원하청 상생협력모델을 마련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188]

[자율신청 품목 보조금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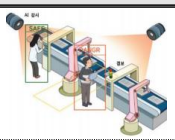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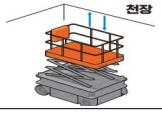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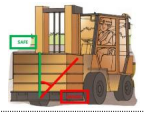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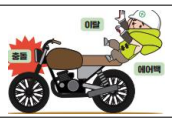
그러나 자율신청품목제도의 경우 사업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범위 확장이 자칫 '소기업 사고 사망 감축에 기여'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퇴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급품목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소요예산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 부재가 집행 부진과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의 2024년도 예산이 사업이 취지에 맞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사업장에서의 호응도를 고려하되, 안전기능에 충실한 품목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88)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스마트안전장비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별첨 1 스마트 안전장비 지정품목(31종)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고정식	인공지능(AI)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Lidar 등)을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2		이동식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ILO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4		인공지능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이동형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7	인공지능(AI)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기본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한 깔림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8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	
9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 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전도예방 장치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10		충돌방지 장치(카메라센서형)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11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무선장치 및 태크(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12		부착형 충돌방지 장치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여 접근 시 경보발생	
13	스마트 통합전도 방지시스템	이동식크레인	각 설비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1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1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16	화학 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17		이동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식 감지기, 수신반 등을 휴대 및 상시 비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18		인공지능(AI)화재 감지기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19		인공지능(AI)계측 장치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20		화학물질 누출 방지형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을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21		방폭정전기측정기 (옵션)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 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2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사고 예방장치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전력 이상: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꺼짐, 온도상승(화재) 등	
24		아크제거 장치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25	근력보조 슈트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2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27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 보호구	귀마개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28		방진 마스크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29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 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30	유해물질 통합안전예방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31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고, 무선통신으로 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장비	

별첨 2 지정품목(31종)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 부합 요약

연번	품목명		스마트 안전장비 정의 부합 요약	
			산재예방분야	주요적용기술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끼임·부딪힘, 화재 등	인공지능, 정보통신
2		이동식	끼임·부딪힘, 화재 등	인공지능, 정보통신
3	고위험 기계설비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	끼임·부딪힘	센서기술
4		인공지능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끼임·부딪힘	센서기술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끼임	센서기술
7	인공지능(AI)스마트 크레인충돌방지장치	기본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8		기본+흔들림방지장치(옵션)	끼임·부딪힘	인공지능, 정보통신
9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기계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	깔림	정보통신, 센서기술
10		충돌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1		자동·서행 및 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2		부착형 충돌방지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3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크레인	물체에 깔림·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물체에 깔림·떨어짐·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5		이삿짐운반용리프트	물체에 깔림·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1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화재·폭발	정보통센, 센서기술
17		이동식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18		인공지능(AI)화재감지기	화재·폭발	인공지능, 정보통신, 센서기술
19		인공지능(AI)계측장치	화재·폭발	인공지능, 정보통신
20		화학물질누출방지형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21		방폭정전기측정기(옵션)	화재·폭발	정보통신, 센서기술
2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넘어짐·충돌	센서기술
23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사고예방장치	전기화재·누전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24		아크제거장치	전기화재·누전	정보통신, 센서기술
25	근력보조 슈트		근골격계질환	센서기술
26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근골격계질환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27	스마트 안전보건개인보호구	귀마개	소음성난청	센서기술
28		방진마스크	호흡기질환	센서기술
29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질식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30	유해물질 통합안전예방관리시스템		유해물질 노출·폭발	센서기술
31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끼임·부딪힘	정보통신, 센서기술

(6)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1988년~, 출연)은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189]을 대상으로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기술지도를 하거나(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공단) ②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지원을 하고(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 ③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④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임.

2023년 계획현액 1,315억 3,000만원 중 1,261억 400만원(95.9%)이 집행되었고, 54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업종별 재해예방	131,530	131,530	-	-	-	131,530	126,104 [125,533]	- [571]	5,426	158,255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28,337	28,337	-	-	-	28,337	26,845 [26,845]	-	1,492	12,151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45,023	45,023	-	-	-	45,023	44,653 [44,653]	-	370	45,023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4,228	4,228	-	-	-	4,228	4,052 [4,052]	-	176	2,620
▪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53,942	53,942		-	-	53,942	50,554 [49,983]	- [571]	3,388	98,461

* 자료: 고용노동부

189)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공단):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 제조 50인 미만 사업장,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의 정확한 계획액 산출을 위한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내내역사업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①모기업(대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중소기업)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일정 항목[190]의 소요비용을 참여 모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매칭되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상생지원), ②프로그램 참여기업의 '대중소 상생협력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개선사항 파악·확인 등 2단계 기술지도를 하며(기술지원), ③참여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④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동 사업은 2012년부터 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을 토대로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상생 활동을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191]

190)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③ 안전보건교육지원, ④ 기타 지원활동(CEO 교육, 워크숍, 캠페인 등) 등

191) **[공생협력프로그램과 상생협력사업 비교]**

구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사업 대상	◦50인 이상(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모기업(건설·조선업제외), 사내·외 협력업체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모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종	◦건설·조선업 제외 전 업종	◦건설업 제외 전 업종
지원 내용	◦공생협력활동에 대한 공단 기술지도 및 활동평가 ◦매칭 재정지원 없음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공단 기술지도 및 활동평가 ◦상생협력활동 지원: 매칭 재정지원 또는 비매칭 활동(모기업 선택) <매칭 재정지원>

2023년 계획액은 상생지원을 위한 75억원과 사업 홍보 및 참여 모기업 평가 등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금액 24억 1,000만원을 합한 99억 1,000만원이고, 이 중 78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상생지원의 경우 205개의 모기업과 2,499개의 협력업체가 이룬 컨소시엄에 75억원의 계획액 중 55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약 74%에 그침.

이러한 집행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상생지원이 2023년 처음 시행됨에 따라 사업참여 대상인 모기업의 2023년 예산 확정시기가 국회의 2023년 예산의 의결 이전이라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나 안내에 한계가 있었고, 모기업의 사업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2024년에는 조기 사업공고와 홍보를 실시하여 6월 현재 매칭지원 결정액이 계획액 90억원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상생지원이 2023년 신규사업이라는 점,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기가 기업의 예산 확정 시기와 다른 점 등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

		-지원비율 : 정부(50%), 참여 모기업(50%) -지원한도 : (1유형) 컨소시엄당 2억원 (2유형) 협력업체당 3천만원, 컨소시엄당 4억원 * 1유형: 상생협력활동(컨설팅+자율안전활동+안전문화활동) 지원 / 2유형: 컨설팅지원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활동평가 + 모기업 상생협력지수 평가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등급 부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였으므로 기업의 참여 의향이나 분담재원 규모 등을 예측하고, 매칭 지원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계획액 산정에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상생지원을 위한 계획액 75억원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안전보건컨설팅 용역 1개월 평균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10개월 분 중 정부 지원 부분 1,500만원을 매칭비용으로 산출하고,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최근 3년 평균 900개소를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 기업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예상 참여 모기업의 수를 500으로 산출하였음.

그러나 상생지원의 핵심은 모기업의 재원분담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참여 의사가 공생협력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기업의 의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또한, 모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협력업체의 수와 모기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액의 상한, 재정지원의 한도에 따른 사업유형[192]의 선택 등 모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협력업체의 수

192) 상생협력은 모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컨설팅과 자율안전활동,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대하여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까지 매칭지원하는 1유형과 300인이하 모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 협력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매칭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뉨. 1유형은 규모제한 없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지원상한액이 낮고, 2유형은 규모제한이 있는 모기업의 컨설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타깃형유형으로 상대적으로 지원 상한액이 높음

와 재원의 규모,[193] 모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유형 등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3년에 실제 사업참여 모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룬 협력 업체의 수는 모기업 당 적게는 하나부터 많게는 114개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음.[194]

특히, 2023년 참여 모기업의 수가 계획액 산출내역상의 참여예상 모기업 수인 500개의 절반도 되지 않음에도 상생지원 매칭 집행액이 74%에 달한 점은 예산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으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2023년도에 실제 집행된 모기업 당 평균 지원단가와 예산산출 내역의 차이가 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195]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액 산출에 있어 기존 집행 자료 등 단순히 과거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참여 기업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의 취지 및 핵심 요소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계획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193) 모기업 별 분담재원액은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기업별 참여 의지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4) 별첨 자료 「2023년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모기업 및 재정수혜 협력업체 수」 참조
195)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316페이지

별첨 **'23년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모기업 및 재정수혜 협력업체 수**

(단위 : 개소)

순번	모기업	재정수혜 협력업체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1	한라시멘트주식회사	18	21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
2	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	5	22	주식회사에쓰씨케이	1
3	SK텔레콤(주)	10	23	주식회사 지씨에스 본사	1
4	삼양식품(주)원주공장	10	24	현대위아㈜	12
5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21	25	㈜후성	13
6	쌍용C&E㈜ 영월공장	12	26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9
7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주식회사	15	27	금호석유화학(주) 울산수지공장	9
8	강원랜드(주)	1	28	한국철강(주)	29
9	(주)아모레퍼시픽	11	29	(주)풍산울산사업장	21
10	(주)이마트 왕십리점	1	30	주식회사세아창원특수강	1
11	㈜이마트 은평점	1	31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10
12	(주)이마트 용산점	1	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창원사업장	4
13	(주)이마트 영등포점	1	33	㈜한화 창원사업장	17
14	한국남부발전㈜삼척빛드림본부	9	34	현대모비스㈜ 창원공장	8
15	(주)이마트 자양점	1	35	두산에너빌리티(주)	27
16	(주)유바이오로직스(춘천제2공장)	1	36	㈜제이엠씨	1
17	주식회사에스알	3	37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27
18	에이치디씨리조트㈜	1	38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	2
19	(주)씨제이이엔엠(이앤엠부문)	6	39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2 사업장	3
20	(주)KCC문막공장	3	40	태광산업㈜석유화학 1공장	2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41	현대제철 울산공장	4	63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울산공장	6
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창원3사업장	5	64	(주)현대미포조선	72
43	(주)모트롤	1	65	HD현대중공업주식회사	89
44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8	66	한화오션(주)	112
45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	1	67	한화솔루션㈜ 여수	27
46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28	68	현대제철순천공장	6
47	금호석유화학(주)	12	69	(주)전주페이퍼	6
48	엘지전자(주)창원1공장	15	70	(주)세아씨엠	12
49	엘지전자㈜ 창원2공장	15	71	LG이노텍(주)광주	10
50	볼보그룹코리아(주)	7	72	(주)만도익산공장	8
51	SK에너지㈜울산CLX	20	73	에스지씨에너지㈜ 군산사업본부	5
52	동국씨엠(주)부산공장	7	74	한화솔루션(주)티디아이	15
53	삼성SDI울산사업장	3	75	(주)엘지화학-나주공장	11
54	(주)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4	76	㈜휴비스 전주공장	3
55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14	77	기아(주)AutoLand광주	17
56	한국항공우주산업(주)본사	35	78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6
57	엘에스엠앤엠주식회사	11	79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	12
58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12	80	보해양조(주)장성공장	4
59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7	81	(주)포스코광양제철소	46
60	부산항만공사	3	82	한전 광주전남본부전력관리처	9
61	효성중공업(주)창원공장	8	83	매일유업(주)광주공장	2
62	(주)에이치제이중공업	32	84	엘에스엠트론(주) 전주공장	17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85	세방전지(주)	5	107	현대제철(주) 포항1공장	2
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108	에코프로BM	3
87	오비맥주(주)광주공장	3	109	한수원한울본부	14
88	(주)오리온제2공장	3	110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18
89	㈜엘지화학생명과학 익산공장	7	111	㈜세아제강포항공장	3
90	롯데케미칼(주)여수공장	10	112	동국제강(주)포항공장	8
91	㈜포스코퓨처엠 양극재광양	3	113	삼보모터스주식회사	4
92	현대삼호중공업(주)	103	114	에스엘주식회사 진량공장	4
93	대한조선(주)	31	115	에코프로이엠	4
94	한화오션에코텍주식회사	17	116	㈜포스코 포항제철소	45
95	지에스칼텍스(주) 석유제조업	6	117	(주)포스코퓨처엠	4
96	(주)LG화학용성공장	34	118	대구텍	11
97	삼성전자(주)구미제2공장	36	119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3
98	(주)평화발레오본사	16	120	코오롱인더스트리(주)김천2공장	3
99	(주)영풍석포제련소	22	121	포스코스틸리온주식회사	4
100	LG이노텍 4공장	11	122	(주)이수페타시스	2
101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21	123	동국제강㈜ 인천공장	9
102	엘에스전선(주)구미공장	21	124	한국지엠㈜	4
103	아진산업(주)/1공장	11	125	삼성바이오로직스(주)	20
104	효성티앤씨(주)구미공장	12	126	한국동서발전(주) 일산화력본부	4
105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	127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5
106	삼보모터스(주)세천공장	7	128	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발전본부	11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129	㈜대한항공 부천엔진정비공장	5	1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	16
130	(주)셀트리온	4	152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17
131	현대제철주식회사 인천공장	4	153	현대엘리베이터(주)	6
132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1	154	삼성전자㈜온양사업장	30
133	용마로지스 김포센터	3	155	한국콜마주식회사	2
134	지에스파워주식회사	1	156	동국제강(주)당진공장	4
135	주식회사컬리	2	157	SK이노베이션(주) 대덕기술원	5
136	온세미컨덕터코리아㈜	4	158	일진전기주식회사 홍성공장	4
137	한화솔루션(주) 음성제2사업장	4	159	주식회사현대엘앤씨	2
138	한화솔루션(주) 진천사업장	8	160	한화첨단소재(주) 음성제1사업장	6
139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18	161	(주)디비하이텍	6
140	성신양회(주)단양공장	13	162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증평공장	2
141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18	163	깨끗한나라(주)	3
142	한화토탈에너지스(주)	21	164	풀무원식품(주) 음성두부	1
143	동희오토(주)	17	165	한국지엠㈜보령공장	1
144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13	166	씨제이제일제당㈜ 논산공장	3
145	현대모비스(주)진천공장	11	167	㈜엘지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4
146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캠퍼스	80	168	에스케이온(주) 서산공장	4
147	매일유업(주)영동공장	3	169	서한이노빌리티㈜	10
148	삼성전기(주) 세종공장	14	170	(주)아산성우하이텍	3
149	아세아시멘트(주)제천	18	171	오비맥주 주식회사 청주공장	5
150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11	172	(주)정식품	3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순번	사업장명	재정수혜 협력업체
173	한화첨단소재(주) 세종사업장	6	190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	5
174	삼성SDI천안사업장	5	191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114
175	LG화학 대산공장	34	192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46
176	(주)동서기공 당진지점	5	193	삼성물산㈜에버랜드리조트	9
177	㈜엘지생활건강청주공장	9	194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	8
178	롯데케미칼주식회사	15	195	지에스파워주식회사 안양열병합발전소	7
179	삼성SDI(주)청주사업장	5	196	㈜파리크라상 성남공장	2
180	HD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9	197	엘지전자㈜ 평택공장	38
181	주식회사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3	198	(주)현대케피코	4
182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공장	11	199	아세아제지㈜ 시화공장	6
183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주)	3	200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1
184	삼성전자㈜기흥공장	5	201	㈜아모레퍼시픽뷰티사업장	3
185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7	202	가온전선㈜	8
186	삼성디스플레이(주) 기흥공장	6	203	대덕전자주식회사	8
187	기아(주)AutoLand광명	3	204	삼성전기㈜ 수원공장	20
188	기아㈜AutoLand화성	17	205	(주)인터플렉스	14
189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5			

(7)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1988년~, 출연)은 ①5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하면서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50인 미만 작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업무 종사 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며(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196] ②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평가·교육·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영세 취약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 확인을 지원하고,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자산업 사업장의 화학물질 노출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산업 사업장을 감

19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시(surveillance)·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며(유해작업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③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197] 및 건설현장[198]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보건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으로 2023년 계획현액 821억 7,600만원 중 804억 4,100만원(97.9%)이 집행되었고, 17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유해작업환경개선	82,176	82,176	-	-	-	82,176	80,441	-	1,735	81,276
▪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	72,525	72,525	-	-	-	72,525	71,242	-	1,283	71,625
▪ 유해작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구축	3,351	3,351	-	-	-	3,351	3,014	-	337	3,351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도(위탁)	6,300	6,300	-	-	-	6,300	6,185	-	115	6,300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사업은 2023년 계획현액 63억원 중 61억 8,500만원(98.2%)이 집행되었고, 1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197) 50인 미만 사업장
198)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1~1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위탁사업비 현실화 필요>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업은 질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다수 보유 사업장,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 등[199]에 방문하여 지도요원이 건강보호조치 지도, 교육지원 등 기술을 지도[200]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201] 작업환경측정기관,[202] 특수건강진단기관[203] 등 민

199)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보유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가 미흡한 신규 사업장, 업무상질병 발생 고위험 업종 사업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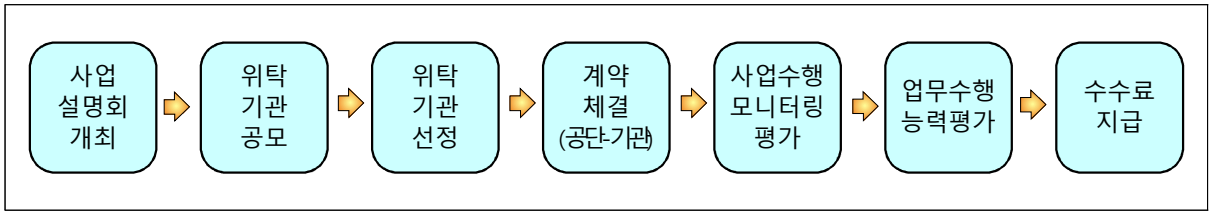
200) 별첨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지원내용(상세)」 참조

201)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02)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수행 과정]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매년 1월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을 30개 신청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사업장수, 업무상질병자수, 위탁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사업물량(계약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공고한 후 7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203)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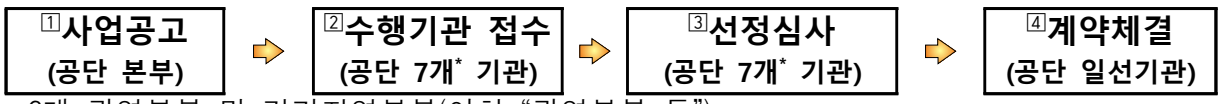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개 광역본부 등에서 해당권역 전체 지역 신청서류를 접수하고[204]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물량을 배정함.

[위탁업체 선정 업무 흐름도]



* 6개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이하 “광역본부 등”)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기관 부재에 따른 수행기관 미선정, 신청물량 부족, 선정된 기관의 참여 포기 등으로 일선기관 목표물량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예산상 계상된 목표물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 순위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잔여물량을 배분하고(추가배정), ②추가배정 후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동일 분야에 한하여 광역본부 등의 소속 일선기관 내에서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물량 배정하며(목표조정),[205] ③잔여물량 수용 희망기관이 없을 경

204) **접수기관(광역본부 등)별 신청지역**

접수·선정광역	신청지역	접수·선정광역	신청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본부, 경기북부지사, 고양파주지사, 경기중부지사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북부지사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북서부지사, 전남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경북동부지사	※ 신청지역(사업수행지역)은 별첨 2참조	

205) [예시] 강원본부 보건분야 배정물량(100회) 미신청
☞ 서울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보건분야 신청기관의 우선선정 순위(점수)에 따라

우 해당 일선기관에서 관내 및 인근지역(선정심사 단위 권역 내) 해당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추가공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하고(추가공모), ④추가 공모 후에도 일선기관 물량 달성이 불가할 경우, 일선기관에서 본부와 협의 후 사업물량 조정을 요청하여 예산상의 목표 사업물량을 달성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의 경우 ①최초 공모 선정심사 결과, 7개 일선 기관 9,200회의 미달 물량이 발생하였고,[206]

구 분	목표 물량	선정 물량	과부족 물량	비고
총 계			-9,200	
서울광역본부	3,200	2,000	-1,200	
강원동부지사	150	0	-150	
부산광역본부	5,100	3,400	-1,700	
경북동부지사	950	0	-950	
경기지역본부	5,000	3,900	-1,100	
경기서부지사	5,000	1,900	-3,100	
경기동부지사	2,600	1,600	-1,000	
충북북부지사	1,350	1,050	-300	권역내 물량조정 완료
충남지역본부	2,850	3,150	+300	
서울동부지사	3,000	2,700	-300	권역내 물량조정 완료
서울남부지사	3,000	3,300	+300	

②7개 일선기관 추가 공모 선정심사 결과, 5개 일선 기관 6,300회의 미달 물량이 발생하였으며,

강원본부 보건분야 참여 가능여부 확인 후 물량 배정
☞ 강원본부 관내 사업수행 불가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강원본부 사업물량을 서울권역 내 일선기관 직제순으로 조정 및 신청기관에 배정

206) 충북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미달 물량은 선정심사 시 동일 권역 내 일선기관 간 목표 조정

구분	잔여 물량	선정 물량	과부족 물량	비고
총 계	9,200	2,900	-6,300	
경기동부지사	1,000	0	-1,000	
강원동부지사	150	0	-150	
경기서부지사	3,100	0	-3,100	
경북동부지사	950	0	-950	
경기지역본부	1,100	0	-1,100	
서울광역본부	1,200	1,200	0	
부산광역본부	1,700	1,700	0	

③추가공모 최종 미달 물량에 대해 수행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선기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8개 일선기관 대상 재공모 실시 하였음에도,

(단위 : 회)

조정 전		조정 후	
일선기관명	잔여물량	일선기관명	조정(추가)물량
소계	6,300	소계	6,300
강원동부지사	150	부산광역본부	1,000
경북동부지사	950	경남지역본부	500
경기지역본부	1,100	경남동부지사	500
경기서부지사	3,100	대구광역본부	1,400
경기동부지사	1,000	대구서부지사	800
		경기지역본부	600(△500)
		경기서부지사	1,000(△2,100)
		경기동부지사	500(△500)

④재공모 선정심사 결과, 3개 일선 기관에서 2,100회의 미달 물량 발생하였음.

구분	잔여 물량	선정 물량	과부족 물량	비고
총 계	6,300	4,200	-2,100	
경기지역본부	600	0	-600	
경기서부지사	1,000	0	-1,000	
경기동부지사	500	0	-500	
부산광역본부	1,000	1,000	0	
경남지역본부	500	500	0	
경남동부지사	500	500	0	
대구광역본부	1,400	1,400	0	
대구서부지사	800	800	0	

⑤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공모 미달 물량을 수행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선기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3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단위 : 회)

조정 전		조정 후	
일선기관명	잔여물량	일선기관명	조정(추가)물량
소계	2,100	소계	2,100
경기지역본부	600	부산광역본부	1,300
경기서부지사	1,000	대구광역본부	400
경기동부지사	500	대구서부지사	400

다시, 부산광역본부지역에 1,300회의 미달 물량 발생하였고,

	잔여 물량	선정 물량	과부족 물량	비고
총 계	2100	800	-1,300	
대구광역본부	400	400	400	
대구서부지사	400	400	400	
부산광역본부	1300	0	-1300	

잔여 물량에 대해 전국 단위 통합 공모 실시 결과, 경남동부지사에서 수행기관이 선정됨으로써 목표 물량을 달성하였으나, 2차 추가 재공모 선정심사 결과 선정된 수행기관이 산업의학 전문의 퇴사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자격을 반납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해당 물량(1,300회)에 대한 3차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참여기관이 없어 최종 1,300회의 물량이 미달되었음.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참여 저조로 인한 미달 사태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낮은 단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현재 보건관리 기술지도 단가는 1회당 88,000원인데, 다음과 같이 지원방식과 대상, 운영체계가 동일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사업[207]의 지도 단가 150,000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208]

207)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에 290,000회를 목표로 회당 150,000만원, 총 43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15페이지 참조

208) '14~'20년까지 기술지도 1회당 62,340원이었다가 '21년도부터 8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사업의 지도 단가는 2022년부터 150,000으로 인상되었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비교]

구 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질식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수행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 위탁 업무를 재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좌동
수행인력	보건분야 기술사, 기사, 간호사 등	안전분야 기술사, 기사 등
회당 수수료	88,000원	150,000원
1일 지원횟수	3회	3회
지원내용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핵심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	좌동
	질식위험,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중독 등 위험 개선	위험기계·설비 사용으로 인한 끼임, 추락, 화재폭발 등 위험 개선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와 같은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낮은 단가는 사업수행에 있어 예산상의 목표물량 미달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첫째, 공모 미달로 인한 추가배정, 목표조정, 추가공모 및 재공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미달 지역의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이 지연되며, 특정 지역의 지원물량은 줄어들고 특정 지역의 지원물량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20년	'21년	'22~'24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62,340원	88,000원	88,000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75,029원	75,029원	150,000원

발생하는 등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 2023년의 경우 경기서부지사의 물량이 당초 계획량의 38%만 달성되었고,[209] 경북동부지사와 강원동부지사가 속한 지역 사업장은 보건관리 기술지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강원동부지사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전무함.

특히,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국가 예산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둘째, 낮은 단가로 인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 수행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210] 민간 위탁기관 지도요원의 비정규직 비율[211]이 타 위탁사업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은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양질의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보건관리 기술지도 지원 사업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추진되고, 전문성이 높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내실화 및 수행요원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209) 별첨자료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업 물량 조정 결과」 참조
210) 보건관리전문기관 수행비율이 '2021년 26.8% → 2022년 13.0% → 2023년 10.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211) (비정규직 비율) 보건분야 40%(70/176명) / 전 분야 23%(334/1,479명)

단순히 예산상의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관리 기술지도의 지역적 균형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첨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지원내용(상세)**

- (1중점지원) ①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②안전보건교육, ③안전보건제도 안내, ④방역관리 지원, ⑤위험성평가 등, ⑥사업장 실태평가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
  - ②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종 업종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지원사업장 수의 30%이상)
  -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제도 등 안내
  - ④ **(방역관리지원)** 감염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및 주요 취약원인, 평상시 조치사항, 감염병 재난 경보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안내
  - ⑤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사업주 자율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⑥ **(사업장 실태평가)**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 관리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연계지원
- (2맞춤지원) ①작업환경관리 ②작업관리 ③직업건강관리
  - ①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1/2초과사업장,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생사업장, 하절기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② **(작업관리)**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기술지원 실시
    -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전개**
  - ③ **(직업건강관리)**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취약계층 다수 보유 사업장 등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 뇌심혈관질환 관련 유소견자(D1, D2), 요관찰자(C1,C2) 발생사업장, 고령, 여성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감정노동 취약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개**

○ **(자료보급 등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및 건강장해예방 등의 자료 제작·보급(수행기관 자체 제작보급 등)

○ **(재해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현황파악 및 동종재해예방대책 제시

○ **(창의적 자체 사업-자율과업)**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계획에 따른 사업

별첨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업 물량 조정 최종 결과**

기 관(30개)	최초 물량		조정 후 최종 물량		조정물량
	목표예산	물량	목표예산	목표물량	
서울광역본부	281,600	3,200	281,600	3,200	-
강원지역본부	26,400	300	26,400	300	-
서울남부지사	264,000	3,000	290,400	3,300	↑300
서울동부지사	264,000	3,000	237,600	2,700	△300
강원동부지사	13,200	150	-	0	△150
부산광역본부	448,800	5,100	536,800	6,100	↑1,000
울산지역본부	145,200	1,650	145,200	1,650	-
경남지역본부	184,800	2,100	228,800	2,600	↑500
경남동부지사	237,600	2,700	396,000	4,500	↑1,800
광주광역본부	184,800	2,100	184,800	2,100	-
전북지역본부	176,000	2,000	176,000	2,000	-
전남지역본부	127,600	1,450	127,600	1,450	-
제주지역본부	126,720	1,440	126,720	1,440	-
전북서부지사	167,200	1,900	167,200	1,900	-
전남동부지사	127,600	1,450	127,600	1,450	-
대구광역본부	246,400	2,800	404,800	4,600	↑1,800
경북지역본부	52,800	600	52,800	600	-
대구서부지사	211,200	2,400	316,800	3,600	↑1,200
경북동부지사	83,600	950	-	0	△950
인천광역본부	440,000	5,000	440,000	5,000	-
경기지역본부	440,000	5,000	343,200	3,900	△1,100
경기북부지사	264,000	3,000	264,000	3,000	-
고양파주지사	158,400	1,800	158,400	1,800	-
경기중부지사	228,800	2,600	228,800	2,600	-
경기서부지사	440,000	5,000	167,200	1,900	△3,100
경기동부지사	228,800	2,600	140,800	1,600	△1,000
대전세종광역본부	228,800	2,600	228,800	2,600	-
충북지역본부	132,000	1,500	132,000	1,500	-
충남지역본부	250,800	2,850	277,200	3,150	↑300
충북북부지사	118,800	1,350	92,400	1,050	△300

(8)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1988년~, 출연)은 ①계층별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며(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②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법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전문교육과정 운영), ③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 달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방송·언론매체 등에 산재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며(안전보건문화 선진화), ④공모를 통하여 민간재해예방 활동을 지원(민간재해예방 활동 지원)하는 사업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 계획현액 328억 4,700만원 중 323억 5,700만원(98.5%)이 집행되었고, 4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안전보건 문화정착	32,847	32,847	-	-	-	32,847	32,357 [32,357]	-	490	32,925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9,457	19,457	-	-	-	19,457	19,133 [19,133]	-	324	20,112
▪ 전문교육 과정운영	4,090	4,090	-	-	-	4,090	4,058 [4,058]	-	32	4,313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7,000	7,000	-	-	-	7,000	6,890 [6,890]	-	110	7,000
▪ 민간재해예방활동지원	2,300	2,300	-	-	-	2,300	2,276 [2,276]	-	23	-

*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관리 강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은 ①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며, ②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지원하고, ③숏폼이나 메타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194억 5,700만원 계획액 중 191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내역사업중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은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30개 지사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실시한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면교육 387,401명과 온라인 교육 335,960명, 총 723,36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예산상의 목표인 561,000명 대비 129%의 목표달성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교육이 실시된 사업장을 보면, 특정 사업장에서 많게는 1만명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212)]

21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아닌 경우로서, 엘지화학(596명 교육이수), 인천마디병원(697명 교육이수), ㈜케이티(741명 교육이수), ㈜대한항공(474명 교육이수) 등이 있음.

[교육수료인원이 2,000명 이상인 사업장]

(단위: 명)

사업장	교육이수인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여부
부산대학교병원	13,757	해당 없음
T-way 항공	5,654	해당 없음
서울시설공단	3,021	해당 없음
(사단법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4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지회	2,150	
현대삼호중공업(주)	2,077	해당 없음

또한,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캠페인이나 교육 등 안전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사단법인)에서 많게는 수천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관련 단체의 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단체명	교육이수인원	비 고
(사단법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400	
(사단법인)대한산업안전협회	712	
(사단법인)안전지킴이운동본부	225	
(사)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124	
(사)국민안전진흥협회	6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5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4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여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예산사업의 혜택이 특정 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해당 실태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업이 2019년까지 대면교육으로만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교육을 대체할 온라인 교육을 도입·시행하였고, 2023년 엔데믹 이후 다시 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90,811	532,711	1,137,245	1,221,242	723,361
대면교육	690,811	120,434	46,795	121,022	387,401
온라인교육	-	412,277	1,090,450	1,100,220	335,960
대면 비중	100	22.6	4.1	9.9	53.6

대면교육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온라인 교육은 교육참여자가 직접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고 교육에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대기업명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고, 대기업

직원이라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3년도 교육 이수사업장 205,450개소 중 61,233개소가 교육과정을 중복이수하였고, 이 중 94.9%인 58,095개소가 동일 사업장(동일인)이 다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서 교육 이수자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안전관련 단체의 교육 이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들이 교육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조하기 위한 좋은 교육과정의 예시로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많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사업이 열악한 여건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목표가 단순 교육이수 인원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복이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